



SDG16(평화) 논의 및 이행현황 분석: 한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2019. 07

SDG16(평화) 논의 및 이행현황 분석:
한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2019. 7.

ODA 연구 · 정보센터

저자

책임연구원

권 구 순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이 대 훈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윤 지 영

- 사단법인 피스모모 정책팀장

이 대 훈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보조연구원

황 정 인

- 비영리단체 아디 팀장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서 연구 책임자인 권구순 외 공동연구원 2인(이대훈, 윤지영)과 연구보조원 1인(황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KOICA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SDG16의 세 가지 핵심의제 중 하나인 평화를 최근 UN에서 주창하고 있는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평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더불어 주요 다자기구의 평화구축전략의 고찰과 주요사업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KOICA 평화 ODA의 정책과 전략,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50년대 국제평화와 안보기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한국의 국가형성과 전후 평화구축 과정을 조명하였다. 경제재건 및 활성화분야의 성과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확립과 UN에 의한 선거제 개편과 이를 통한 제헌의회구성과 헌법제정, 사법부의 독립, 교육과 보건 등 공공행정 서비스의 점진적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반면, 고정적 이념체제의 틀 하에서 포용성이 적용되지 못했던 정치적 민주화와 거버넌스, 인권보호와 평등성, 접근성 등 실제적 법치가 정착되지 못한 점, 배타적이고 억압적 성향을 내포했던 치안안정화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KOICA가 단독으로 주최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2년간 개최한 일련의 평화 컨퍼런스와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의제와 각종 선언문 등 산출물들의 분석을 통해 평화와 개발의 접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고와 결합성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분쟁과 갈등의 종합적 인식과 포괄적인 평화구축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통해 평화의 구조적·문화적 성격을 정의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구축이 내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갈등의 맥락을 변화시키는 참여, 다양성,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는 역량의 개발이라는 평화논의의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제적으로 취약성을 갖는 지역과 국가의 현장에서 평화구축 임무를 이행하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하는 UN과 세계은행그룹의 전략과 이행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양 기관은 그동안 기능적·명시적 수준의 개발과 평화의 접점(interface)수준에서 최근 유기적인 결합(nexus)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양자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특히 분쟁 후 평화구축에서 예방적 성격의 평화의 지속화 개념으로 확대시켰고, **UN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테러리즘과 군축의제까지 평화의 지속화 패러다임**

체계에 포함시키는 변혁을 시도하였다.

셋째, KOICA의 **평화ODA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을 위한 전략으로써 평화구축의 사업분야별 주도면밀한 개입으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선 개입의 형태로서 평화구축 지원역량 개발을 통해 글로벌-지역-준지역-국가-지역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상황에 대한 포용적 분석을 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평화구축의제를 형성하여 평화구축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한다. 개입해야 할 평화구축의 프로그램 분야는 정치적 민주화와 거버넌스, 법치와 사법정의, 경제재건 및 안정화, 시민안전과 안보, 공공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분야를 아우르는 범분야로 분쟁 예방 및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개입을 사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평화구축의 경로를 형성하고 폭력과 갈등을 전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 정치-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의 원칙은 첫째, 참여, 다양성, 상호의존성, 예방을 핵심규범으로 하여 다자 간 소통과 포용적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전문 분야와 다부문 협력과 중장기적인 평화구축 프레임 구축한다. 또한 분쟁과 갈등의 온상이 되는 불평등과 배제, 집단적 고충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이 폭력화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시민역량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행을 위한 추진단계로는 평화ODA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와 수행기관 간 정책협의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평화와 개발분야를 포괄하는 이론적·실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화구축 워킹그룹(PBWG)을 신설하여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상위전략과 정책의 틀 하에서 목표와 사업을 구체화한다. 이때 PBWG은 조사와 대상국, 지역과 우선순위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다자기구를 포함한 국내 기관 및 단체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다자성 양자사업을 협의 후 약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 단계에서도 PBWG이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편, KOICA의 다자성 양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첫째 평화구축의 분야별 다자성 양자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반적인 예산도 크지 않지만, 특히 **‘법치와 사법정의 분야’와 ‘시민안전과 안보분야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UN과 세계은행그룹의 평화구축사업에도 동 분야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분야별 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자성 양자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기획과 평가의 전

프로세스에 국내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PBWG의 신설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적재적소에 컨설턴트나 UNV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의 증진이 요구된다. 셋째, KOICA가 평화구축역량을 구축하고 PBWG가 활성화되며 숙련된 민-관-군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면 단계적으로 다자성 양자사업을 대상국의 정황적 분석과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양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폭력성과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제기구 수준의 인력 보호와 안전 기제를 갖춘다면 양자형태의 사업수행도 가능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상황 하에 있는 이해당사국의 무상원조기관으로서 KOICA가 평화역량의 구축과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적 평화 의제를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환류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1. Introduction

The United Nations(UN), with its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16, initiated the discourse and agenda for peace from varying perspectives. SDG16+,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and the recent publication of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2018) prove such trajectory of the UN.

Republic of Korea achieved economic revitalization after World War II, through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during 1960 -70s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n 1980s, it implemented the democratic governance. As a country that led the recent peace process of its peninsula,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attest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Humanitarian - Development -Peace(HDP) Nexus.

In parallel with the active engagement of the agenda for peace by the governmen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has termed values of SDG16 a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n effort to support dialogues around SDG16, KOICA administered and sponsored 5 international forums and conferences in Korea including Busan Democracy Forum(Jan 22 -24, 2018) and Pyeongchang Global Peace Forum(Feb 9 -11, 2019). These were opportunities for KOICA to promote the government's will and vision of SDG16 to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recent research of KOICA - Implementation Plan and Strategy of SDG16 for KOICA(2018) - suggests following five directions for approaching SDG16: value-oriented, political-diplomatic, programmatic, regional and in solidarity with the civil society.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s on its way.

This research therefore addresses following topics. First, it will examine how the process of the postwar statebuilding might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It will also organize the outcome of five forums held by KOICA for the past two years in order to draw a referential outline for KOICA in its implementation of SDG16 in the context of Republic of Korea.

Second, it will suggest a plan of cooperation for multi-bi projects and pinpoint main aspects for KOICA to consider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and major projects by the UN and World Bank.

Third, it will lay out a road-map for KOICA's implementation of ODA projects that promote the agenda for peace through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in Korea an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research adopts a three-step implementation strategy, which starts from classification of sub-topics, analysis of implementation, and deduction of appropriate strategies. Its methodology uses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a discussion forum that the research team held with staffs 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can be found in the lack of in-depth analysis of the project strategy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was because the research team's originally-planned field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 were replaced with literature review.

2. Key Discussions on the Agenda for Peace

2-1. Implication of statebuilding and peacebuilding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While Korea gained independence after World War II, the country got separated to South and North due to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wo sides, which resulted to the Korean War(1950-3).

After the Korean War, Republic of Korea, which adopted liberal democracy as its governing ideology, became the first target where the concept of large-scale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keeping mechanism, inve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UN, were applied.

The UN, based 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adopted on July 27, 1950), interfered with North Korea's occupation of the South through military intervention.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 established agencies of relief and reconstruction to provide vital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Brady 2018).

Various types of humanitarian aid were provided to Republic of Korea by bilater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NGO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leading Republic of Korea to overcome its post-war crisis. Through socioeconomic reconstruction, Korean economy got stabilized, thereby leading to the economic development starting from 1961(Kyung-gu Lee, 2004:32).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specifically contributed to this by providing Government Aid and Relief in Occupied Areas(GARIOA) and 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s(EROA) and supporting the vice-minister of OLEC,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aftermath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Kyung-gu Lee, 2004:35-36).

The United Nations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Unit(UNKRA) wa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socio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private sector. Its full-scale activities began in

1953 after the cease fire, with 260 projects that cost USD 1.27 million the fields of industry, mining, agriculture, education, housing, and health. This contributed to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of Republic of Korea after the war. Other than UNKRA,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established five-year plans for agriculture, health and education, respectively(Kyung-gu Lee, 2004:43).

During the War, civilian aid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fundraising and directly provided the relief aid in the temporary capital Busan. They collected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e UN from July 1950, which reached USD 10.9 million(KAVA 1995).

[Table 1] Scale of projects and programs supported by major institutions(1945 -1962)

(Unit: USD in thousand)

Category	GARIORA	ECA	CRIC (UNCACK)	UNKRA	ICA	PL480 ¹	AID
Period	1945 - 1948	1949 - 1953	1950 - 1956	1951 - 1960	1953 - 1961	1956 - 1962	1962
Budget	409,394	201,867	457,378	122,084	1,743,929	269,956	165,001
Total	3,369,609						

(Source: reconstructed based on the data by Nam-won Suh 1943:33)

1. Pulpic Law 480 is a multi-purpose aid that supports the food crisis of developing countries, processes th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and expands the agricultural trade by sup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t Act.

Case Study

Credit Union Movement in Republic of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re was no public financial system in Republic of Korea. The economic system was heavily dependent on relief goods from the United States, and loans at high interests became popular.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and foreign Catholic activists began Credit Union Movement from the late 1950s. Sister Mary Gabriela of Maryknoll Sisters founded the Sacred Heart Association with members of the staff and 27 friends of Maryknoll Hospital in Busan on May 1, 1960. In June of the same year, Father Dae-ik Chang established the Central Credit Union with Catholic members.

From the early years of establishment, the Credit Union Movement adopted democratic governance - as a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of capitalism - thereby having members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and abiding by following principles of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credit Union:

- The Union belongs to and is run by its members; the union shall be managed democratically.
- Services for members provided by the union include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stability, and maximization of economic effectiveness.
- The union shall enhance members' understanding of finance in the realm of social responsibility, encourage networking, and promote the Union's responsibility for the local community and global vision.

In the 1960s, the union put importance on the education for the adult. It provide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ranging from training of union members to honorary staffs and the employee. The process was supported by the UN,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were part of the international credit unions. In the 1960s and 70s, external funds were included following agencies:

- Asian Foundation - education and organization of new unions
- United States Association of Credit Union(CUNA) - education and training
- USAID - legal assistance and support of credit businesses of the central association
- UNDP - education of agricultural leaders in Yongin County
- CUNA Mutual - Mutual aid business
- Misereor Foundation, Germany - construction of the meeting hall and training center
- Adenauer Foundation, Germany - rural development
- Rabo Bank, Netherlands - education for staffs in public relation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credit unions and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ssociations and federation, a sense of autonomy for development emerged amongst union members. Rather than depending on aids by foreign institutes, people were motivated from inside out.

From the 1970s, the movement grew, and impacted other countries in Asia. In 1971, it played a major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regime in the 1990s,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NACUFOK)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new credit unions in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carrying out a triangular forms of trade amongst the World Council Credit Union(WOCCU), the US and Canadian credit unions. Today, there are exchange programs for top leaders of the Asian Confederation, mid-level management leadership training, and consultation progra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credit unions.

As of December 31, 2017, there are 5.9 million union members, 898 associations, 82.9 trillion won in assets, and 9,190 employees, making it the 4th largest member of the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 Members.

While the reconstruc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were remarkable, the proc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in the field of law were unstable.

Before liber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defined Republic of Korea as a defeated country. While the country was subject to “divide and rule” implemented by the US and Soviet union, the US military was not prepared to govern Republic of Korea.¹⁾ As a result, the military failed to embrace the publically recognized and popular people who belonged to the stratum of the middle-way socialism to the political structure. Instead, with an aim of stabilizing the countr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military hired national traitors, thereby failing to establish a government that encompasses both the left and right. The military had little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nationalism in Korea.

With regard to justice and law, positive achievements were made including fair legal enforcement through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adverse functions such as failure to apply the law equally to all people, lack of accessibility to justice and law, and lack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Maintenance and partial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led to the so-called stable transfer, but failed to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of fundamental changes in public security by reforming the policy. Such trajectory shaped the security institute to use violence in oppressing the left-wing groups who called for national autonomy, thereby igniting the 4.3 uprising and eventually the Korean War.

This incomplete process of peacebuilding resulted in a long-term conflict between two groups, structuralizing violent rep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by the state.

From the 80s and onward, Republic of Korea achieve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through relentless movements for democracy by citizens. Afterwards, Republic of Korea made a transition from being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Today, Republic of Korea became a key donor country partaking in funding peace activities by the UN. It also contributes to stabilization of political conflicts by deploying a competent military unit to peacekeeping operations in the UN Mission. The country served as a vice-chairman of the UN Peacebuilding Commission in 2009 and 2016 and as chairman in 2017. Republic of Korea positively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1)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d been experienced in establishing plans for occupation and military plans in Germany, Japan, Austria, and the Philippines since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Army did not even set up a military plan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as only a book titled Janice, which was a guidebook to the country. (Sang-cheol Cha, 2015, 20)

3. Analysis of the debates on Korean initiatives for peace

3-1. Busan Democracy Forum(2018)

Busan Democracy Forum(January 22-24, 2018), held under the theme of ‘promotion of a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y in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was attended by 300 people around Asia. It was in spirit of continuing the legacy of democracy, originated from people’s movement of struggle for democra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fter Korea was liberated. The forum underlined the symbolic status of the recent Candlelight Civil Revolution(2016 -2017), and led discussions on democracy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implementing the SDGs.

Various actors from the civil society, academia, and government agencies in Asian countries attended, and held in-depth discussions of the SDGs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movements in Korea. For instance, one section of the forum was on the reflection of the role of the Korean civil society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 16: Global Voluntary Complementary Framework, initiated by the Standing Committee for Democratic Community(PSCD). One shared view was how SDGs we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and could inspire social movements for democracy. Various suggestions were also made during the forum including the need of civil societies in Asia to 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for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ross Asia.

Finally, we discussed the draft of national indicators for Civil Society Monitoring of the SDGs at the Country Level and the guideline for participating in voluntary national reviews (2018 -2019, VNR) of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HLPF).

3-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WHRCF), Gwangju(2018)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WHRCF) in Gwangju - a city well known for its historical legacy of achieving democracy in Korea - was held to discuss the role of ‘human rights cities ’like Gwangju in promoting the SDGs for human rights and peace. Policy leaders, researchers,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forum(October 18 -20, 2018). One section of the forum dealt with the mid to long-term goals of the human rights cities that were committed to improving issues of human rights, housing, peace,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and achievement of the SDG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forum adopted a joint action framework that included following points:

-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s not only an agenda that binds countries for solidarity but is a practical way to increase the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that connects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s necessary to realize the value of inclusiveness and peaceful coexistence in society.

- It is important to seek practical ways of promoting diversity, inclusion and peace for realizing the goal of human rights community.
- The forum supports the Gwangju Migrant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are a key factor in dismantling discriminations against minority groups and conflicts between ethnic and religious groups, and plays a critical role in engaging mutual participation in improving human rights.
- It is necessary to set agendas and agreement for action by human rights cities.

During the forum, it was declared that "The forum welcomes the partnership with KOICA and will actively support efforts of KOICA and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projects for promoting the UN SDGs, HABITAT agendas of new cities, and human rights and peace." This was a meaningful achievement in that a partnership between KOICA and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for implementing the SDGs.

3-3. 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2018)

The 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been a leading platform in which many acto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ather and share their various perspectives on the contemporary agenda. 12th 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in Seoul on September 13th, 2018 and approximately 1,000 participants from donor and partner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SOs, academia and private sectors from 78 countries. under the theme "Inclusive ODA for Global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aimed to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nexus between peace 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ODA in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by utilizing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ies in development projects. Main points of the forum were as follows:

- The recent change in the landscape of the national conflict is demanding changes in measures of responses to the conflict.
- ODA can still play a major role in implementing peace and security or statebuilding by designing long-term interventions, which the private sector cannot do. ODA can in particular mobilize resources and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eveloping countries across various sectors.
- Integration of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is one of the main strategies in dealing with long-term crises.
- Ensuring a successful nexus for peace and development requires an integrative approach in the multinational context as well as within a nation.

- The role of the ODA in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to change from “service delivery ” to “advocacy ”. This means engaging people on the street, critical media, organizing discussions and rallies. Thus, while development can lead to conflict, it can contribute to a nonviolent transformation of the civil society.
- Theoretically, development and ODA are considered as constituents of a positive feedback loop for promoting the democratic governance.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prove because they lie in different contexts, where the nature of the conflicts is different, thereby requiring a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local political system as well as the use of an effective institutional platform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working with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i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of “learning from a colleague. ”
- Achievement of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s a section and a goal of ODA.

3-4. Seoul Peace Forum(2018)

The Seoul Peace Forum was held on September 20, 2018,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37th anniversary of the UN World Peace Day. The theme of the forum was Cooperation for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DA and the role of the rights to peace. The forum discussed the implication of the right to peace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nd in reflection of the new era of peaceful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engaged discussions about the SDGs to develop a global agenda for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cooperation and developing main agenda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The main contents of the adopted declaration in the forum are as follows:
- The forum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f Right to Peace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6. The right to peace should be expanded.
- The forum support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18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2000) and 2250(2015).
- The forum supports the UN Secretary General’s 2018 Campaign to Ensure a Common Future for Humanity and reaffirms the indispensability of a full -scale disarmament for the peace of humankind.
- The forum supports the Path to Peace Report(2018), which addresses an inclusive approach to the prevention of violence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 Various actors includ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should contribute to promotion of peace, human rights,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through public diplomacy that uses ODA.
-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linked to and integrated with global citizen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Paris Climate Accord on peace and human rights.
- The UN SDGs(SDGs) should be practiced through education and promotion.
- There should be a peace forum that revitalizes the purpose of Pyeongchang Olympic.
- The forum supports the peace process stated in the North -South summit on April 27, 2019, the North Korea -United States summit on June 12, 2018, and the declaration at the North -South summit in October 2018.

3-5. Pyeongchang Peace Forum(2018)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provided an opportunity where deleg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 historically in a tense relationship - both participated, South and North entered together at the opening ceremony, and played at the ice hockey league as a United team of women, thereby adding to the meaning of peace implicated in slogan of One Passion of the Olympics. The Olympics was a pivotal moment that led to a change in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was seen in context of peace not in threat of war, and started spreading across the globe. The 2019 PyeongChang Peace Forum was held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to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1999 Hague World Peace Contest. At the forum, 115 participants from 103 countries, 49 participating countries, 220 participants from 144 national organizations, and about 100 citizens gathered to discuss the challenges and roadmap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orld peace.

Topics included peace and disarmament, poverty and SDGs, economics, ecology and sports, gender, youth and religi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Discussions included practical ways of cooperating on national and continental levels.

The forum adopted a declaration of Sustainable Future for All: end of war and guarantee of peace.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South Korea, rooted in the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and its achievement of democratization were the found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become a global inspiration for peace.
- The proces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of great significance, and its beginning is the end of the war.
- The spirit and agenda of the 1999 World Peace Conference in Hague should continue.
- Peace is an order of the mankind, as the threat to peace is an obstac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are indivisible, and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re accountable for this.
- The forum expresses concerns about the level of responsibility and actions by the five 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 countries to end the war and reduce conflicts.
- Full recognition and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peace is needed.
-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peace and security governance, women's role and rights should be more recognized in the field of peace and security.
- The important and constructive role of the youth in maintaining and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should be acknowledged.
- Transnational people power, cooperation, solidarity, mutual supplementation, civil exchange, and peace education enable grassroots peace.
-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use of space weapons should be prevented. In addition, all governments must strengthen their support and commitment to international disarmament treaties, and stop their investment in arms race,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industries.
-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itutions for peace should be strengthened and universally approved.
-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ace leads to peace and security of the world.

4. Analysis and Policy Tasks

By co-hosting and sponsoring the above mentioned forum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KOICA contributed to creation of various discour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16 in Korea and abroad. It also played a major role in reclaim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or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agendas highlighted or repeated in the statements adopted in the forums and the tasks that will need to be accepted as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genda	Tasks to be adopted in the ODA policy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a driving for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It is a practical way of supporting inter-regional cooperations. • It is a founda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 It is the basis of a governance based on diversity and inclusiveness. • It will mediate conflicts through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s. • There is a need to develop detailed agendas linked to other agendas.

Agenda	Tasks to be adopted in the ODA policy
Conflict/ dispu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a change in the landscap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 There is a change in the influences of conflict/disputes. • New measures in dealing with conflict/disputes are required
Pe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the agenda that is the most underestimated in peace agenda. •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 It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process of forming a human rights community. •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and extend the right to peace. •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peace is the main basis for peace and security. • The roles of women and youth role should be more highlighted. • There is a need for disarmament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new weapons, and space weapons. • End of war and preventive approach should be sought after. • ODA for peace, human rights,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is needed. • There is a a role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It is important to be acknowledg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There is a global implic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Comprehensive peace agendas are needed. • International peace governance failed, a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from crises. • Transnational cooperation, solidarity, civilian exchanges and peace education are the foundation of peacebuilding.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ath of development is non-linear and has a low predictability • ODA is important in the field of peace, security, reconstruction, democracy. • It supports crisis response. • It mobilizes resources in various fields. • It can have long-term goals in intervention. • Multilateral integration approach is required. • It should play a role of supporting and advocating the civil society.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reforms and cooper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combin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sector need to be treated as independent fields.

5.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Firs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global or regional contexts of conflict and disputes should be prioritized. This involves acknowledgement of tendencies, causes and structures of recent conflicts and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strategies for peacebuilding.

Second, while the forums mainly highlighted the function of the ODA, the necessary changes to supplement the ODA policy on an institutional level were not been fully addressed.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discussions on macroeconomic policy changes at the national level.

Third, while roles of women and youth in civil socie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were emphasized, concrete discussions are needed to acknowledge their specific roles and rights across va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ace, arms competition and its impact on women, arms competition and its impact on the youth.

6. KOICA's Implementation of ODA for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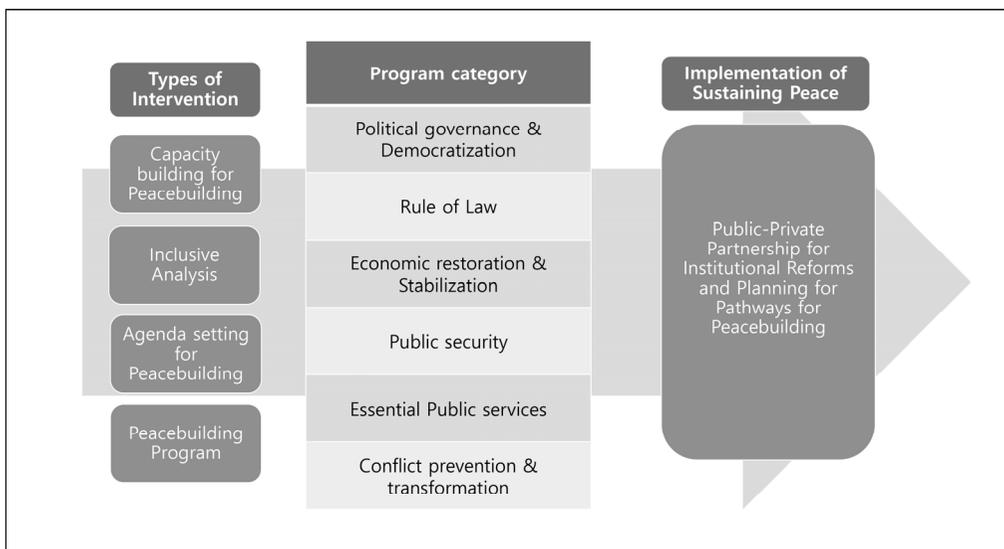
This research finds the following as key policy and program concepts from the analyses of the international peace and ODA forums, international peace agenda, and the strategies of two lea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BMZ, DFID).

	Key Policy and Program Concepts
Peace/ ODA forums	Nexus Response to Crisis, Rights-based approach, Prevention First, Spill-over of violent conflict, Impact of Climate change, Right to peace, Disarmament, Integrated peace agenda, Priority of Women and Youth in peacebuilding, Macro-policy coordination
int'l peace agenda	Peace-making-keeping-building, Sustaining peace, New strategy to new crisis, state-society building, SDG+, Governance for peace, Disarmament as humanitarian concern, Inclusive Prevention, Transformation of structure and culture of violence, Human rights to peace, Peace by peaceful means, Role of civil society, Inclusive conflict analysis, Change security paradigm, Gov-civil peacebuilding capacity, Priority of women and youth roles, Mainstream peace education, Multi-dimensional peacebuilding
WB SPF	Crisis-base approach, Evaluate resilience, Actor resilience, Crisis responding capacity, HDP nexus approach, Development approach to forced migration, Human rights approach, Security-justice sector reform, Joi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Needs-based finance
Germany BMZ	Local partnership, Partnership with multilateral agencies, Bilateral cooperation, Inter-agency cooperation and guideline,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UK DFID	Respond to causes and effects of conflict and fragility, Introduc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clusive political solution and process, Enhance key state functions, Respond to social needs

Taking lessons from the foregoing, global and local examples and deliberations, the core program categories and type of interventions that KOICA may essentially employ are as follows.

Program Category		Type of Intervention	
Political governance, democratization	Inclusive political process, Needs -based accountable institutions, Anti -corruption,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Inclusive analysis, Risk assessment (inequality, exclusion, collective grievances), Policy dialogue and research	
	Political dialogues, peace agreements, State capacity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Agenda setting for peacebuilding - Democratic inclusion - Local -National -Regional level specificity - Public awareness	
Rule of Law	Rule of law, Justice, Human rights, Empower youth	Capacity building for peace - building	Inclusive risk assessment
Economic restoration, stabilization	Peace dividend through economic vitalization		Conflict resolution, political dialogue, other interventions
Public Security	public safety, human security, prevention of violent extremism		Inclusive partnership, Partnership building capacity
			Capacity for training and education
Essential public services	health and other key services, Services for each peace agenda	Various on -site programs for peacebuilding	
Conflict Transformation	Post -conflict restoration and reintegration		
Agenda setting	Local -based agenda, agenda capacity build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for institutional reforms and planning for pathways for peacebuilding	

We recommend that KOICA strategise those programs and interventions in the way so that the grand objective of grounding peacebuilding, and therefore achievement of positive peace, can be specifically formulated into the following strategy scheme.



KOICA will be best equipped for this strategy when there is a collective expertise for peacebuilding, a Peacebuilding Working Group, which will provide professional advice and service in the following key areas.

Integrated Agenda	Governance (Diversity, Inclusion, Democracy, Human Rights Based)	Peacebuilding Capacity	Violence and Conflict	Applying Peace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Peace- Democracy- Human rights-Crisis response Nexus ● Peace- Democracy integrity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Rights Based Cooperation ● Rights Based changes (basic rights to peace and development) ● Peaceful Coexistence ● State-society building ● Inclusive prevention ● Culture of Peace ● Peace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ing women and youth capacity ● Agenda setting capacity ● Public-Private Peacebuilding Capacity ● Training and Education ● Strategizing and Planning ● Inclusive Conflict analysis and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act of Violent conflict ● Impact of Climate change ● Disarmament and Humanitarian concerns ● Conflict Prevention and Mediation ● Change in Security Paradi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ventive Diplomacy ● Peacemaking ● Peacekeeping ● Post-Conflict Peacebuilding

In summary, the PBWG will fulfill the following roles.

- Advise for KOICA's strategic objectives and planning of programs
- Review potential partners and support partnership
- Make guidelines for program implementation
- Give training, educational, and consultation to carrier organizations of each program
- Study ways to enhance investigation, planning, assessment, and supporting programs
- Advise for multilateral program agreements
- Monitor and assess key programs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are also important challenges for KOICA in carrying out its ODA for peace.

Anticipated Challenges	
inter -agency coord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nd policy coordination, legal and policy support, inter -agency response to crisis
KOICA capacity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priority decision, country -local specialization, experts pool, country crisis analysis, development of program tools, local and overseas partnership development, core strategic group, research enhancement, human resources and capacity
planning new policies for SDG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tuation assessment, setting strategic objectives, communication among partners, strategy making, human resources and capacity
program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da -integrative programming, process for conflict transformation, process for peacebuilding, strengthen civic peacebuilding capacity of fragile countries, social dialogue on dispute issues
finance and accou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ormed finance and accounting system for long -term local ownership and wide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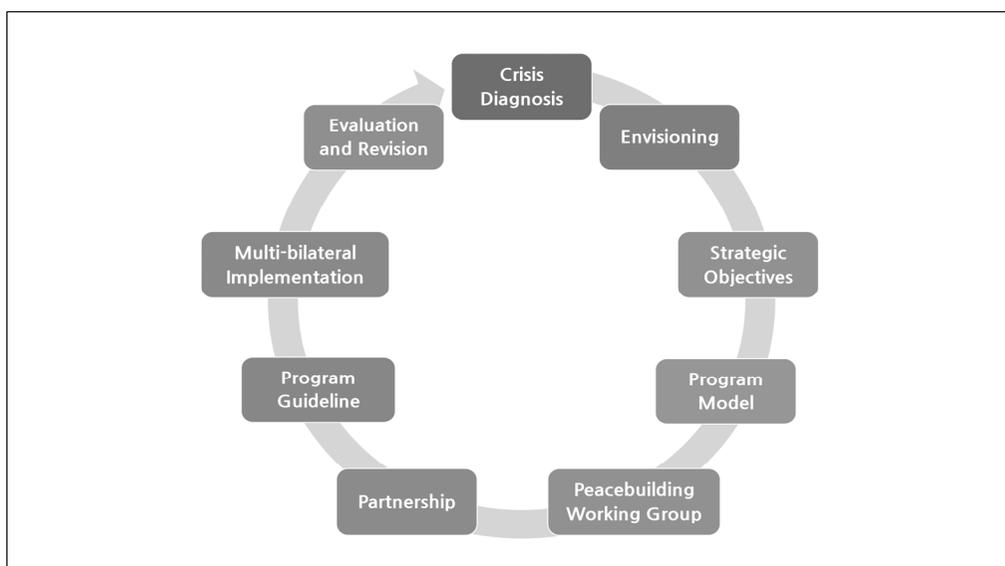
In KOICA's ODA for Peace strategy, the core part of peacebuilding will be conflict prevention and conflict transformation. The core part will be composed for four program areas.

1. Responding to root causes and trigger factors of conflict
2. Building institutions and capac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in managing conflict and providing basic services in grievance areas
3.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nd building trust among divided social groups
4. Building trust and legitimacy of the government(restoring state -society relations)

By having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transformation as the core of its peacebuilding strategy, we recommend that KOICA set the following as core program categories.

- 1) Enhance capacity for risk management: participatory assessment and strategy -planning on cases of collective grievance
- 2) Mainstreaming conflict preventive approach in development cooperation
- 3) Enhance legitimacy and inclusion in politics and governance
- 4) Enhance comprehensive safety for people
- 5) Promote legal justice
- 6) Promote economy for peace(peace dividend)
- 7) Building capacity and partnership for peacebuilding

We propose that KOICA take the following stages in implementing the strategy.



When planning each program,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trategy.

- Core norms: participation, inclusive approach, respect for diversity, inter -dependency, prevention first
- Inclusive processes with multiple -party communication
- Multi -sector cooperation and short - and long -term peacebuilding plans
- Prioritize areas of inequality, exclusion and collective grievances
- Focus on capacity building for civil society actors from the first phase of implementation

In summary, the whole process will take the following steps as basic stages of strategy implementation.

stage	key implementation
1	Adoption of Strategy for ODA for Peace
2	High -level, Inter -Ministerial Policy Coordination
3	Establishment of Peacebuilding Working Group(PBWG)
4	Setting Objectives and Programs (Investigation, Priority in Country, Locality, and Agenda)
5	Strengthening Partnership, First Phase
6	Program Planning and Program Guidelines
7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gencies
8	Program Implementation and Participation
9	Evaluation

7. Conclusion

In relation to peaceful transition, one of the three core agendas of SDGs, this study first shows the role of the aid in state-building, post-war peacebuilding, economic restoration and stabilization of ROK – ROK being a representative example of recipient country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On other note, ROK also showed insufficiency in politics, rule of law and public safety for a considerable time that result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oppressive law enforcement. It also present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tegrated peacebuilding that the country goes through people-led democratization and good governance from the 1980s.

Secondly, the study shows that substantial deliberation and integrative discourses have emerged since 2018 through a series of peace conference held or sponsored by KOICA. That holistic understanding of conflicts and disputes and discussions for comprehensive peacebuilding were rather lacking though, as the study finds, suggest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and cultural analysis for peace and how peacebuilding should be grounded to contextual conflict resolution. In this regard, anticipation, respect for diversity and 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must become guiding principles and basis for capacity building and orientation of peacebuilding work.

Thirdly,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interventions a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KOICA’s implementation of ODA for Peace, such as cross-sectoral peacebuilding in political, legal, and economic sectors as well as in public safety, and public services geared to joint

transformation of conflict parties, institutions and social structures. As one of the first steps for implementing the intervention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ment of a peacebuilding working group(PBWG) to KOICA, which participates and supports essential analysis,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KOICA's ODA for Peace, under the coordinated high -level policy coordin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expects that KOICA, standing as a grant aid agency of a stakeholder country in a geopolitical conflict situation, works on concretely identified peace agenda in order to eventually create a new foundation of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democracy -base peace process in Korea and its genuine contribution to peace -capacity -based peacebuilding in the world through multi -level partnerships.

목 차

국문요약	i
Abstract	iv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5
II. 평화 관련 주요 논의 발전	6
1. 한반도 내 평화논의 배경 및 필요성	6
2. 평화 관련 국내 주요 논의의 흐름 및 진단	16
3. 향후 평화논의의 과제와 지향점	24
III. 주요 국제기구의 평화구축을 위한 양자협력 현황	36
1. UN의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사업 운영 현황	36
2. World Bank의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사업 운영 현황	52
IV. KOICA의 평화 ODA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	75
1. 국내 주요행위자 분석	75
2. 평화논의와 정책개념	79
3. 평화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80
4. 이행플랫폼 구축방안	85
5. 도전 과제	90
6. 평화 ODA 전략 및 실행방안	92

V. 결론	100
1.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100
2. 평화구축 관련 정책 및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101
3. 현장기반의 평화구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다층적인 파트너십 형성 (Multi-layer Partnership Approach)	102
4. 평화구축워킹그룹의 조직화와 적극적인 활용	103
5. 갈등분석 및 평화역량을 갖춘 분야별 인력양성	103
참고문헌	105
부록	111

표 목차

[표 1-1] 3단계 연구수행 전략	3
[표 1-2] 면담조사 대상자 및 주요내용	4
[표 2-1] 주요기관 및 프로그램별 지원규모(1945~1962)	14
[표 2-2] 국내 평화관련 논의 핵심 주제어 범주	24
[표 2-3] 주제별 평화역량 요소	29
[표 3-1] PBF 분야 및 지원순위(2011~2016)	43
[표 3-2]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네팔	44
[표 3-3]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미얀마	45
[표 3-4]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필리핀	45
[표 3-5]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스리랑카	46
[표 3-6]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우간다	46
[표 3-7]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콜롬비아	46
[표 3-8] UNDP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평화구축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47
[표 3-9] 차드강 분지 통합지역 안정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48
[표 3-10] 남수단 지역 평화구축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49
[표 3-11] 국가역량개발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 모리타니아	49
[표 3-12] 연도별 PCF 보조금 승인 현황	62
[표 3-13] PCF 지원 주요 분야 및 비교우위	64
[표 3-14] PCF 대표 사업사례	65
[표 3-15] SPF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집중 지원 분야	68
[표 3-16] SPF 대표 사업 사례	70
[표 4-1] 평화구축 관련 국내 주요행위자 특징 SWOT 분석 개요	77
[표 4-2] 국내외 평화의제 이행전략 관련 정책 키워드	79
[표 4-3] KOICA 4P 가치에 따른 국제기구 협력 현황 맵핑	82
[표 4-4] 평화구축 관련 KOICA 국제기구협력사업	83
[표 4-5] KOICA 평화구축 사업분야 제안	87
[표 4-6] 주요 공여기관별 SDG16 대응 전략 비교	90
[표 4-7] KOICA 평화구축 이행 시 예상 도전과제	92
[표 4-8] 평화역량의 구성요소	96
[표 4-9] 평화 ODA 전략 및 실행방안: 평화ODA 추진과정	99

도표 목차

[도표 2-1] 평화역량	29
[도표 3-1] 1997년 평화구축 프레임워크의 갈등 주기 해소와 개발의 경로 재개의 연관성	53
[도표 3-2] PCF 보조금 지역별 승인 현황(1998-2007)	62
[도표 3-3] PCF 보조금 실행 기관(1998-2007)	63
[도표 3-4] PCF 공여국 현황(1998-2007)	63
[도표 3-5] SPF 공여국 지원 현황(2009-2018)	67
[도표 3-6] SPF 공여 흐름: IBRD vs 양자 공여국(2008-2019)	67
[도표 3-7] SPF 보조금 수혜기관 현황(2009-2018)	67
[도표 3-8] SPF 보조금 수혜기관별 지원 규모(2009-2018)	68
[도표 3-9] SPF 프로그램 논리	69
[도표 3-10] 2018년 SPF 집중 지원 분야별 보조금 약정 비중	69
[도표 3-11] SPF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71
[도표 4-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취약국 지원 기본 방향	81
[도표 4-2] KOICA SDG16 평화구축 전략 이행 플랫폼 단계별 구축 방안	85
[도표 4-3] KOICA 평화구축 사업 모델 수립 전략방안	87
[도표 4-4] KOICA 평화구축 워킹그룹 전문성 주요 내용	89
[도표 4-5] KOICA 평화구축 워킹그룹 역할 제안	89

글상자 목차

[글상자 2-1] 한국의 신용협동조합 운동	15
[글상자 2-2] 산티아고 평화의 인권선언 주요내용	32
[글상자 2-3]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행동 의제: GPPAC 동북아 의제	34
[글상자 3-1] 세계은행 분쟁 후 재건을 위한 개입 5단계	53
[글상자 3-2] IDA 18 Replenishment 주요 내용	58
[글상자 3-3] 세계은행그룹 FCV 전략 컨셉노트 주요 내용	59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배경

최근 UN에서는 SDG16 및 이와 연계한 다층적인 평화이슈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SDG16+, 포용적 평화예방을 비롯해 평화구축과 평화지속화(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2018)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2016년 뉴욕선언의 후속조치로서 난민과 이주관련 글로벌 컴팩트, 인류 공동의 미래안보를 위한 군축의제(2018), 다차원적 평화유지활동(PKO)에 있어 평화지속화와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평화유지 구상(Action for Peacekeeping, A4P) 등 이행 시한을 명시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 『SDGs이행점검관련 UN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SDG16과 관련한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적으로 KOICA는 10대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에서 SDG16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을 명시했고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의 보완을 위해 2018년 SDG16 달성을 위한 KOICA의 이행방안(곽재성 외, 2018) 연구를 실시한 결과, 스웨덴과 독일 등 공여국 사례와 KOICA의 유관사업 분석을 토대로 5대 접근방향(가치지향적, 정치외교적, 프로그램형, 지역중심, 시민사회와의 연대)이 제시되었다.

또한, KOICA는 부산민주주의 포럼(2018. 1.22~24)부터 평창 글로벌 평화포럼(2019. 2. 9~11)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의 국제회의 및 포럼의(공동)주관 혹은 후원을 통해 평화,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SDG16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형성(statebuilding) 과정과 국제전화?된 내전(internationalized intra-state armed conflict)을 겪은 한국의 재건복구 사례를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광의의 평화구축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소위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넥서스(HDP Nexus)’가 구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해방과 한국전 이후 평화구축이 주는 함의와 지난 2년에 걸쳐 KOICA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한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별 결과(outputs)를 수렴 및 분석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다자기구인 UN과 세계은행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KOICA의 평화관련 ODA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 목적

먼저 해방 후 국가수립과 한국전 후 국가재건 과정이 평화구축에 주는 함의와 최근 2년간 국내에서 KOICA가 참여한 평화관련 포럼에서의 담론을 통해 한국적 맥락의 SDG16 논의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UN과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이행전략과 실적, 주요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KOICA의 국내 이해관계자 간 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방안과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평화분야 ODA사업의 이행관련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9. 7월 개최되는 UN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배포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평화구축 경험과 향후 평화를 중심으로 한 SDG16 전략 및 파트너십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전략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연구수행 전략에 따라 수행된다.

[표 1-1] 3단계 연구수행 전략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세부주제별 분류	이행 현황분석	이행 전략방안 도출
[트랙 I] 평화관련 국제적 주요 논의 및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동향 조사부분 연구매트릭스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별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1회 (PCPF2019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개발된 분석틀에 근거한 연구결과 분석
[트랙 II] 평화이슈별 국제기구의 이행방향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별 연구매트릭스 작성 국제기구 사례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별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벤치마킹 방안 모색을 위한 분석 (확산) 평화이슈관련 간담회 개최(KOICA 연구실 협력)
[트랙 III] 한국의 맥락에서의 전후평화구축과 ODA로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평화구축 연구 매트릭스 작성 KOICA 조사 연구 매트릭스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구축 관련 1950~1970년대 수원현황 및 전략조사 KOICA의 SDG16 관련 사업현황 관련 문헌조사 (심층 토론회) 개발NGO 및 시민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KOICA SDG16 이행을 위한 평화 ODA 전략 분석

2-2. 연구방법

문헌조사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축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해방 후 미군정청이 수행했던 국가형성 관련 국내의 자료 및 한국전 후 주요 다자기구 및 민간단체 수원자료를 파악한다.
- 최근 2년간 KOICA가 주도하거나 후원한 평화관련 국제회의와 포럼의 결과문서에서 나온 산출물과 성과를 정리한다.
- UN의 평화구축과 관련한 전략문서와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 UN 내 평화구축과 관련한 다자신탁기금 현황자료와 평화구축사업 보고서 및 세계은행의 「Pathway for Peace」 보고서를 전략문서로 보고 각종 사업사례를 검토한다.

인터뷰는 주로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KOICA의 평화 관련 연구 및 사업 담당자 중심으로 실시한다.

[표 1-2] 면담조사 대상자 및 주요내용

구 분	면담 대상자	조사 내용
연구	• ODA정보센터 연구담당자	• HDP Nexus의 개념적 이해와 KOICA의 접목 • 연구의 산출물 활용방안
사업	• 사업전략실 • 사업담당자	• 평화 ODA의 사업방향성 • 평화 관련 다자성 양자 사업현황 • 국내 평화ODA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국내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관련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다.

○ 목적

- 최근 UN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의제화되고 있는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의 개념을 국제 개발과 평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민간단체들과 공유하고 SDG16(평화)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 플랫폼 구축과 관련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표제연구에 반영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4. 25(목), 16:00~18:00
- 장소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의실

○ 대상

- 국제개발협력관련 민간단체: 월드비전, 더프라이스, 아디
- 평화 관련 민간단체: 피스모모, 전쟁없는세상, 한국희망재단
- 협회단체: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주요 논의사항

-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의제
- SDG16(평화)에 대한 영역별 민간단체의 인식 및 이행계획
- 민(개발) - 민(평화)간 협력방안
- 민(개발-평화) - 관(KOICA) 협력방안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1. 연구의 범위

평화 관련 국내 주요논의 흐름으로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추진된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 및 한국전 이후 다자 및 양자원조가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적 재건과 정치 민주화 달성을 어떻게 견인하였는지 분석하였다.

KOICA가 최근 2년간 참여했던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 부산민주주의포럼(2018), 세계 인권도시포럼(2018), 서울ODA국제회의(2018), 서울평화포럼(2018), ⑤ 평창글로벌평화포럼(2019)의 결과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기구의 평화구축 사업 이행 현황은 UN과 세계은행의 사례를 검토했다. UN의 경우, 국제적·미국제적 무력충돌의 전후과정에서 추진된 예방외교와 중재, 다차원적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반 테러리즘, 군축의제를 통한 평화전략을 토대로 SDG16의 평화부문 이행실적을 살펴보고, 평화구축 관련 다자신탁기금으로서의 평화구축기금과 UNDP 다자성 양자 사업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세계은행은 UN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평화구축관련 전략과 이행실적 평화구축관련 기금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OICA의 평화 ODA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 방안 모색을 위해 KOICA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기타 개발협력주체 간 평화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또, UN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평화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국내·외 평화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제를 예측하고 최근 KOICA가 수립한 평화ODA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연구의 한계

UN과 세계은행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의 부재로 국제적 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한계가 있으며, 다자기구가 수행하는 평화구축 프로그램의 현장관찰 및 이해관계자 분석 미비로 정확한 성과의 분석에 제한이 있다.

II. 평화 관련 주요 논의 발전

1. 한반도 내 평화논의 배경 및 필요성

1-1. 배경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 함께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를 거쳤고 한국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한국은 미국과 UN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국제안보와 평화유지기제의 최초 적용대상이자 주요 소비국이었다. UN은 안보리 결의안 제83호(1950.6.27)를 근거로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形 군사개입을 통해 북한의 남한점령을 저지하였고, 미국은 해방 이후 탈 식민지화과정에서 과도통치기구로서 군정청을 설치하였다. 해방 이후와 한국전을 거치면서 UN은 미국과의 협력 하에 구호 및 재건 담당하는 기구들을 설립하여 주요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Brady 2018).

한국은 양자 및 다자기구들과 국제민간구호단체(INGO),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된 긴급구호 원조를 통해 해방 이후 및 전후에 직면한 인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였고 이후 단계적인 사회경제적 재건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를 도모하여 1961년도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이경구 2004: 32). 예를 들어, 해방 이후 미군정의 초등의무교육 달성을 위한 교원양성과 교사(校舍)지원(박도 2017: 250-251)은 전쟁기간 동안에도 3.4부제 수업을 통한 교육이 진행될 정도로(강준만 2004: 264-265) 한국인의 교육열 상승효과의 토대를 제공했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를 촉진했다.

한편, 해방 전 미-소 간 합의로 시행된 분할통치에서 미군정은 한국을 패전국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군정통치의 준비도 부족했다.¹⁾ 일단,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족자주 노선을 주장했던 중도사회주의계열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일제의 통치 구조를 개편하는 수준의 조기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당시 한국적 민족자주 정서를 반영하는 데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들로 구성된 친일그룹을 재등용함에 따라, 좌·우익을

1)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필리핀 등의 점령과 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국무부나 육군부 공히 점령당시조차 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Janis(제니스)'라는 한국안내서만 구비할 정도로 준비가 미약했음(차상철 2015, 20).

아우르는 정부수립에 실패하였고 이러한 정치·사회구조적 맥락의 이해부족은 장기간의 진영갈등과 폭력적 억압구조, 인권유린으로 귀결되어 결국 정치적 민주화와 거버넌스 그리고 법치분야의 평화구축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록 경제적 발전에 비해 상당 기간 국가에 의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고착화됐지만, 8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이고 성숙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다. 특히 공여국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UN평화활동에 있어 유의미한 규모의 재정을 분담하는 핵심 공여국이 되었고 분쟁 취약국에 주둔하여 평화유지를 수행하는 UN임무단에 역량있는 군부대를 파병하여 안정화에 기여했다.²⁾ 또한 2009년과 2016년에 UN평화구축위원회 (UN Peacebuilding Commission)의 부의장, 2017년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개발과 인권에 이어 국제평화와 안보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³⁾

따라서, 국가형성(statebuilding)의 맥락에서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 이후 1960년까지 미국과 UN이 주도한 대(對) 한국 구호 및 재건사업을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부문별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과와 실패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이 향후 국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의제에 있어 증거기반의 논의를 주도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1-2. 분야별 현황분석

○ 적법하고 포용적인 정치민주화와 거버넌스

미국은 연합국 간 합의이행과 점령지역의 통치에 따르는 외교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2) 한국은 2019. 1월 현재 6개 UN평화임무단에 총 644명을 파병중이고 이 중 레바논 주둔 동명부대에 327명, 남수단 주둔 한빛부대에 289명이 부대파병형식으로 임무를 수행 중임. 또한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을 비롯하여 28명(경찰 4명 포함)이 개인단위로 파견되어 활동중임.

(http://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4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속일: 2019.6.3.).

3) 2015년 평화구축위원회의 개편과 강화 이후 2017년까지 개선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개최, 안보리 회의의 연계일정을 통한 자문역할 강화 및 사회-경제적, 장기적 개발이슈에 집중, 평화임무단에서 UN국가팀으로의 이양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조명되었다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research-reports/the-peacebuilding-commission-and-the-security-council-from-cynicism-to-synergy.php?print=true>, 접속일: 2019.6.3.).

차원에서 신탁통치과정을 거쳐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공식적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한국의 정당과 민족단체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면서 미군정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후 반탁을 주장한 우익 계열과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한 좌익계열의 갈등 속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이 격돌하는 가운데 과격공산주의를 배제한 채 시도한 좌-우 협력이 실패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한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국가수립의 책임을 UN으로 이양하고 궁극적으로 중도파를 대체하는 우익중심의 남한정부 수립을 지원했다.

○ 제헌방법

헌법은 법과 관습 혹은 이를 포함하는 문서 혹은 문서들의 취합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토대가 되는 법체제라고 할 수 있고 정부의 조직과 운영, 권력과 해당 권력행사의 제한을 통해 정치활동을 규율했다(UNDP 2005). 헌법제정은 법안을 만드는 기술적 측면(constitution making)과 원리와 정신, 특히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수렴하는 과정적 측면(constitution building)⁴⁾이 있고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헌법자체가 평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지만, 민주적 평화제도의 정착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은 기술적 측면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출범한 제헌의회는 전형위원선출과 전형위원회에 의한 30명의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10명의 전문위원 위촉, 전문위원의 법안제출, 3독회에 걸친 헌법기초위원회의 법안검토, 본 회의 상정 및 의결, 1948년 7월 17일 공포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김수용 2018, 23-34). 한편, 과정적 측면에서 해방 후 일제청산·평등·인간다운 삶이 구현되길 희망한 민중의 열망이 제헌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평등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안전한 공동체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영향 하에서 본회의 검토과정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정세론을 구실로 간과되고 위원들 중 상당수가 친일파 논쟁을 초래하며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선호했던 민중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김수용 2018, 36).

4) Peacebuilding Initiative,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e2f4.html?pageId=1836>
(접속일 2019. 6. 3).

○ 선거절차와 정당

공정한 선거절차와 대의민주주의의 주요행위자인 정당의 활성화는 지속적 평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 과정에 필수적이고 궁극적으로 민주화와 거버넌스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절차는 선거과정에서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과업들을 망라하는데 평화구축 활동에 있어 선거시스템 구축, 선거지원, 선거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Holsti 1996).

3년간의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자문기구인 ‘입법의원’ 선거와 ‘제한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전자는 관선과 민선이 함께 이뤄진 방식으로서 국무부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 선출 및 보통선거 지침을 군정청에 하달했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지방선거대로 세대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행정구역 단위별로 4단계 절차로 진행되는 간선방식을 준용한 데 대한 좌익계열의 반발과 선거불참으로 주로 고소득 유산층의 피선거 및 선거권 행사로 왜곡되었다(서복경 2013, 11-12). 반면 제한의회선거는 1947년 10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로 정부수립이 UN에 이양됨에 따라, UN은 이전에 좌익지지성향의 대중의 참여를 일정부분 배제하도록 제정된 ‘입법의원 선거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정당의 경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이 해방 후, 국가건설노선의 형성과 미군정과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당시, UN은 선거권 연령을 23세에서 21세로 낮추고, 선거등록을 날인방식으로 바꾸며 투표방법은 기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투표권의 제한요소를 개선하였다. 특히, 우익성향이 강한 월남북한주민들에게 특별선거구를 부여했던 이전 법과 달리 이를 폐지(서복경, 2013, 14)하는 등 선거제도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였다. 해방 이후 좌익-중도-우익성향의 정당들이 설립되었고 남한 단독선거 시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과 사회단체가 다수였다는 점은 정당의 설립이 폭넓게 허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제한의회선거 입후보자의 약 50%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당지지 기반이 약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군정이 좌익계열 정당과 사회단체를 탄압하여 사회주의노선이 붕괴됨으로써 포용적 민주화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

○ 공공행정

공공행정은 공적 권한에 대한 일련의 실행체계로서 ‘조직구조, 시스템, 기능, 제도적 구축,

절차'로 개념화되고(Musoni 2003) 공공정책과 민원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절차인데 분쟁 후 재건과정에서는 모든 요소를 단기간 내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했다.

해방 후, 공공행정과 관련, 한국의 지도자와 대중은 일본총독부 체제로부터 정치적·문화적 독립을 추구했다. 제헌의회의 설립과 사법부의 분리로 3부 체제를 갖추면서 제도의 틀을 갖췄고 행정부 내 공보, 공중보건, 교통, 노동, 식량관리 등의 부처 및 부서들로 확장했다. 또한 미군정은 자국의 공공조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참모조직(staff agency)제도를 도입하였고 위원회운동과 직급제도 등을 소개하였으나 미군정 하에서 정부조직은 기존제도 유지의 기초 하에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편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⁵⁾

한국전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약 100여 명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실시되면서 제도적 변화의 인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재건부(Ministry of Reconstruction)가 설립됨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국내에도 공공행정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공공제도개편의 지속성을 제고하였고 한시적이지만, 유연한 과업중심의 정부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 정의와 법치

법치는 다분히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민의 동등한 보호와 비차별, 법에 대한 접근성, 적법한 절차, 치안기관의 책무성, 사법적 독립을 포괄한다(Pouligny 2003: 359). 법치는 개념적으로 절차성(procedural)과 실체성(substantive)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전자는 법의 내용과 무관하게 예측성과 참여적 요소로 체계화된 소위 최소주의적 접근이고 후자는 인권과 기반한 규범적 내용을 법이 포함해야 한다는 최대주의적 접근이다.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전자는 소극적 평화, 그리고 후자는 적극적 평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남한의 미군정청은 사법권의 독립과 법률가 수호주의에 의거, 조선총독부 내 사법부 산하의 법원조직을 독립적인 사법부로 분리·승격시켰고 검찰조직 역시 형사절차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으로 재편했다(문준영 2010). 따라서 일제강점기 법조계의

5) 남한정부수립 이후, 참모조직제도 직급체계는 곧 폐지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법조인들이 정부조직개편관련 법률입안 시 생소했던 미국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은데 기인하고 공무원제도를 비롯하여 재정, 정부기록관리 등 대부분의 공공행정을 조선총독부 체제를 차용함(Cho 1969, 289).

비주류였던 한국 법조인들이 대거 판검사로 등용되면서 공백기에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체제에서 사법 권력을 독점하였고(이국운 2005: 135-175) 좌우대립과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관료적 법원조직과 검찰형사사법주의를 견고히 형성하여 민에 대한 관의 철저한 우위를 점하는 접근방식을 유지했다(이국운 2005: 177-178). 특히 검찰권력의 비대화는 친일계가 장악한 경찰력의 급격한 성장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찰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기구를 검찰에 직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탈 군국주의기반의 국가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일본 군정정책과 달리 남한의 군정은 통치기구의 재건과 질서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고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와 인력의 청산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법치체계 하의 법원과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물론 사법권의 독립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법적 집행의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소위 실체성 측면에서 국민의 동등한 법 적용, 접근성, 인권의 측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역기능도 함께 나타났다.

○ 안보와 치안안정화

전통적 개념의 안보는 외부 군사적 위협에 대해 영토방위와 국가로서의 추구하는 근원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안보는 전쟁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유이고 발발하더라도 결과로서 패배는 없다는 높은 기대와 연계된다(Bellany 1981, 102). 반면, 냉전종식 후 안보의 본질과 함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제, 개발, 환경, 인권, 이주 등의 주제로 확장되었고 대상도 개인단위에서 글로벌 단위로 그리고 지역과 사회단위가 중단위로 이전된다.

치안안정화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평화롭고 안정된 기능을 보장하는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공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가의 관점에서 법적·경제적·사회적 단위에서 실현돼야 하는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배타적인 물리적, 즉 독점적 폭력을 동원하게 된다.

미군정기간 안보-치안영역 재편(Security Sector Reform, SSR)과정에서 우선 안보행위자인 국방경비대 창군과정을 보면, 해방 후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띤 자발적인 군사단체가 설립되어 창군활동을 하였다. 미군정은 이들 단체들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국방경비대'로 통합하는 절차를 단행했고, 군사영어학교 운영을 통해 장교를 양성하였다. 초기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후 광복군과 좌익계열인 '조선국군준비대'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 정당과 이념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우선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이강수 2013).

해방 후 여운형이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의 자발적 치안기구를 조직화하여 전국 162곳의 치안대가 혼란기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대안적 기능을 담당했지만, 미군정의 자체치안조직의 해산과 기존 총독기구의 온존 및 치안활동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상향적 치안조직의 제도화가 무력화 되었다(안진 2004).

안보와 치안안정화와 관련한 안보-치안영역 재편에 있어 미군정의 정책은 대중의 요구였던 근원적 변화보다는 소위 안정적 이양을 목표로 하는 일제강점기 친일인사의 등용을 통해 기존체제의 유지 및 일부 개선을 통한 연착륙을 채택했다. 따라서 미군정기 치안기관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민족자주와 좌익성향의 조직을 탄압하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한국전이 발발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귀결되었다.

○ 경제재건을 통한 자립적 경제도대의 구축

경제재건은 소위 분쟁 후 재건의 환경에서 구호와 개발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 전제는 처한 문제점이 각각 상이하다는 것과 침체기에 있는 보통국가의 경제와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Ohiorhenuan and Kumar 2005). 물론 경제 분야의 재건이 단순히 무력충돌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 정의이고 오히려 전후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제도화하여 자립적 경제를 확립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수원시대 중 해방기부터 개발연대기인 1961년 이전까지는 구호와 재건의 시기로 해방 후 구제사업기(1945~1948), 남한정부 수립 이후 경제원조기(1948~1950), 전후 구호 및 조기복구기(1950~1953), 경제재건 및 안정화 지원기(1953~1960)로 구분될 수 있다(서남원 1963: 132).

주요 공여기관 및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한 미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은 점령지역 구호를 위한 정부지출(GARIOA) 형태의 구호성 원조와 경제부흥 원조 성격의 점령지역 경제복구(EROA), 그리고 군정후기에 시행된 대외청산위원회(OLEC)의 차관을 지원하였다(이경구 2004: 35~36).

주한 미국경제협력처 관리사절단(ECAMIK)은 1948년 제정된 해외원조법에 의거 유럽재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협력청(ECA)을 동년 12월에 체결된 한-미 간 원조협약의 후속조치로 ECAMIK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GARIOA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추가로 경제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ECA의 원조는 기초적 국가방위역량과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한국정부의 국무총리 및 임시외자총국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한국은행 1954; 서남원 1963: 37 재인용). 지원물자는 식량과 비료위주의 소비재와 자동차 운송용품과 산업원자재로 구성된 투자재가 절반씩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원조물자 및 기자재는 국내에서 재판매되었고 판매수익은 한국은행의 대충자금계정에 예치되어 한-미 외자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였다(이경구 2004: 40~41). ECA는 단계적으로 1953년 해외사업청(FOA), 1955년 국제협력청(ICA), 1961년에 국제개발청(USAID)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주한 UN민사처(UNCACK)⁶⁾는 한국전 발발 당시 UN이군 사령부의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었고 군의 지휘통제 하에 운영됐으나 구성상 21개국에서 파견된 민간전문가들과 군이 참여하는 민군통합형 조직으로 진화하였고 인원도 초기 63명에서 수요에 따라 투입되는 비상주 전문가들을 포함, 700명까지 증원되었다. 초기 설립목적은 ‘질병과 기아, 민간소요를 방지하는 것’으로 공중보건 분야에 집중하였으나 1951년 ECA 기능을 인수하면서 경제, 농업, 산업, 통상, 천연자원, 금융, 정보, 교육 등 분야에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투입하였다. 한국전 초기 정부가 위치한 부산에 본부를 두고 정부관계부처와 구호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별로 지역팀(provincial team)이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주로 해당 도청관계자와의 협력 하에 음식과 의복을 포함, 다양한 원조물품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긴급의료지원과 공중보건 서비스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주한 UN민사처는 1953년 7월, 미군 극동사령부의 예하부대로 설립된 주한 민사처(KCAC)가 인계받았다.

6) UNCACK: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에 식량, 물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연합된 노력이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국가들이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현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

Korean War Educator,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bradley_roger/index.htm

UN한국재건단(UNKRA)은 1950년 12월, UN총회의 결정(410/V)을 근거로 설립된 ‘한국의 구호와 재건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기구’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와 같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설립되었다(Lyons 1958, 181). 주한 UN민사처가 군 조직으로서 구호와 보건 등 인도적 지원이 주요임무였다면, UN한국재건단은 민간주도의 사회경제적 재건을 주로 담당했고 본격적인 활동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공업, 광업, 농업, 교육, 주거, 보건’ 분야에 총 260개 사업에 127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전후 한국의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하였다.⁷⁾ UNKRA 이외에도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분야별로 농업·보건·교육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이경구 2004: 43).

해외민간원조단체는 한국전 발발 이후,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단체를 포함한 임시수도 부산을 근거지로 모국에서의 성금 모금과 한국에서의 직접구호활동에 참여했고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부터 한국전 동안 개인과 단체들이 UN을 통해 낸 성금은 10.9백만 달러에 달했다(KAVA 1995). 민간원조단체들은 한국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성금과 물자를 국제기구 혹은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의 전문직그룹인 의사와 간호사, 교사, 사회사업가, 교수의 유학교육을 지원하였다. 직접지원으로는 병원, 학교,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거나 시설들을 대상으로 기자재와 의약품 등 물자 및 재원을 지원하고 전제민에 대한 주거시설과 일본과 북한에서 귀환한 정착민 지원, 보건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전후 안정화 과정에서 민간원조단체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차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구호활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수요는 있지만, 서비스가 누락되는 한편, 중복지원이 생기다보니 체계적 지원과 조정을 위해 1954년 5월, 33개 단체가 주한 해외민간원조단체연합회(KAVA)를 설립하였다.

[표 2-1] 주요기관 및 프로그램 별 지원규모(1945~1962)

(단위: USD in thousand)

구 분	GARIORA	ECA	CRIC (UNCACK)	UNKRA	ICA	PL480 ¹	AID
기 간	1945~1948	1949~1953	1950~1956	1951~1960	1953~1961	1956~1962	1962
금 액	409,394	201,867	457,378	122,084	1,743,929	269,956	165,001
합 계	3,369,609						

(출처: 서남원, 1963 p33을 토대로 재구성)

1. 미공법 480(Public Law 480)은 농업교역개발원조법에 근거한 농산물 지원으로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와 농업교역확대와 더불어 개도국의 식량위기를 지원하는 다중목적의 지원법.

7)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https://UNarchives.wordpress.com/about-UNKra/>

한국은 해방 후부터 한국전까지 긴급 인도적 지원 중심의 원조를 통해 기본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한국전 이후 재건복구를 위한 양자와 다자원조의 수원을 기반으로 경제재건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구호와 개발의 연계(Relief to Development)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체제하에서 동북아 내 공산권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자유 진영의 전략적 목표가 한국의 개발수요와 일치되면서 공여국의 지원의지와 원조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한국도 수원국으로서의 주인의식과 강한 자립의지를 견지하였다.

[글상자 2-1] 한국의 신용협동조합 운동

한국전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는 전후경제체제 하에서 서민금융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주요대안으로 고리대가 성행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당시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국내·외 천주교계 활동가들에 의해 1950년대 말부터 신용협동조합운동 (이하 '신협운동')이 시작됨. 메리놀 수녀회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1960 5월 1일 부산 메리놀 병원의 직원과 교우 27명을 조합원으로 성가신협을 설립하였고 동년 6월, 장대의 신부는 서울에서 천주교 교인들을 조합원으로 한 중앙신협을 각각 설립함.

자본주의의 대안경제로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체제를 거버넌스로 채택하는 신협운동은 설립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국제신협운영원칙을 준수하였음:

- 협동조합구조에 있어 조합원 소유, 조합원에 의한 관리, 민주적 관리
- 對조합원 서비스에 있어 금융 포용성, 재무적 안정성, 조합원의 경제적 효용극대화
- 사회적 책임에 있어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세계적 비전

1960년대 신협운동 성장의 원동력은 첫째,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조합원 교육과 무보수 명예직인 임원대상 교육, 그리고 직원직무연수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UN과 공여국, 신협계열의 국제민간단체와 민간재단 등의 다양한 원조가 뒷받침되었음. 1960~70년대 외원기관의 원조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재단: 교도사업비, 신규조합 조직비 지원
- 미국신협연합회(CUNA): 교도사업비, 강습비 지원
- USAID: 신협법 입법관련 전문가 파견, 중앙회 신용사업 자금 지원
- UNDP: 용인군 일대 농업지도자 신협교육비 지원
- 미국신협공제(CUNA Mutual): 공제사업자금 지원
- 독일 미제레오 재단: 연합회 회관, 연수원 건립비 지원
- 독일 아테나워 재단: 농촌신협조직 지원
- 네덜란드 라보은행(Rabo Bank): 홍보전담직원 교육비 지원

마지막으로 단위조합에서 연합회를 설립하고 조직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원조보다 주인의식에 근거한 자발적 발전의지를 제고하여 자립화를 실현한 것임. 또한 한국의 신협운동은 1970년대부터 아시아지역 신협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71년 아시아신협연합회(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의 설립을 주도함. 1990년대 체제전환기에 중국 동북 3성에 신용호조회 설립을 지원하면서 세계신협협의회(WOCCU)와 미국 및 캐나다신협과의 공조를 통한 삼각 협력방식의 사업을 수행함. 현재까지도 아시아신협의 최고지도자 교류, 중간관리자 리더십 직무연수, 개도국 신협의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자문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신협은 2017.12.31. 현재 조합원수 5백 9십만 명, 조합 수 898개, 자산 82.9조 원, 임직원 수 9,190명으로 세계신협 협의회 회원조합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신협중앙회, 2011.

2. 평화 관련 국내 주요 논의의 흐름 및 진단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움직임과 함께 국내 개발협력 커뮤니티 내에서도 평화 의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KOICA는 한국국제개발협력의 평화 의제 실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거나 후원 등으로 기여해왔다. KOICA가 참여해온 포럼과 더불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해온 평화관련 주요 논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2-1. 부산민주주의포럼(2018)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포용적 사회 증진’을 주제로 하고, 민주-인권-개발 우수사례 발굴, 무상원조의 역할 공유, 인적 네트워크 강화, 활동가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열린 2018부산 민주주의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논지가 전개되었다. 단, 포럼의 취약한 토론 및 합의과정 기록으로부터 추정할 때, 포럼에서 협의의 목표로 했던 우수사례 발굴, 무상원조 역할,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식 공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 SDGs 이해를 통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개발 증진 방안
- SDGs 이행 모니터링 제도인 고위급정치포럼(HLPF)와 자발적국별보고(VNR)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다양한 국제협력 강화
- 우리나라 국내·외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통해 SDGs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 핵심적인 실천방식

2-2. 세계인권도시포럼(2018)

포럼 선언문인 광주선언문 내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 국가 간 연대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지역·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방식
- 도시 안에서 포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수립 필요
- 인권공동체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성·포용·평화 실천방법 모색
- 광주 이주민 인권선언문 지지
- 인권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토대이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민족·종교 간 갈등과 분쟁을 이겨내고 상호 간 포용으로 나아가는 열쇠
- 인권도시의 세부 의제를 개발하고 합의 필요

2-3. 서울 ODA 국제회의(2018)

서울 ODA국제회의에서는 최종 합의가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기초연설과 주제 발표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분쟁의 양상과 파급효과에 큰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에 대응방안도 변화해야 함.
- 평화와 안보 혹은 국가수립이라는 맥락에서 ODA는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과 다르게 ODA는 장기적 개입의 관점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취약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원을 동원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음.

- 인도주의 원조와 개발을 통합하는 것은 장기적인 위기 지역에 대한 주요 접근 방법 중 하나임.
- 성공적인 평화-개발 넥서스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첫 번째는 한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체제 내에서도 통합된 접근을 구사해야 함
- ODA가 지원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에서 “옹호(advocacy)”로 변화해야 함. 거리의 사람들, 비판적인 언론, 토론, 집회 등은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임. 개발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시민사회가 이를 비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음.
- 민주적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ODA의 역할: 개발은 이론적으로 선형적인 순환 고리로 설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혼재된 양상임. 서로 다른 맥락에서는 갈등 양상도 다르고, 현지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적응력 있게 대응해야 하며, 효과적인 제도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즉, 다자간 협력의 “동료에게서 배우는 것”임.
- 인권실현과 성평등 달성은 ODA의 범 분야이자 독자적 목표임.

2-4. 서울평화포럼(2018)

2018 서울평화포럼의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6년 UN총회의 ‘평화권 선언’ 채택을 환영함. 평화권은 더욱 확장되어야 함.
- UN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 결의안 2282(2018),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2000년)와 2250(2015년)을 지지함.
- UN 사무총장의 인류공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군축의제(2018)를 지지함. 인류의 평화에 전면적 군축은 필수불가결함.
- UN과 세계은행의 폭력적 갈등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 - 평화를 위한 경로 보고서(2018)을 지지함.
- 지방정부/지자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해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함.
- 평화와 인권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환경교육과 연계 및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함.

-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Accord)이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더욱 교육, 홍보, 실천되어야 함.
- 평창올림픽 기념, 스포츠의 날 기념 등 계기를 살리는 평화의 포럼을 추진해야 함.
- 2019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10월에 채택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담긴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함.

2-5. 평창평화포럼(2019)

2019년 평창평화포럼의 선언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전쟁 종식과 평화보장”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시민사회의 활성화로부터 출발한 한국의 촛불혁명과 민주화 성취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토대이며, 이는 세계적 영감이 되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큰 의미를 가지며 그 출발은 전쟁의 종식임.
- 1999년 헤이그세계평화회의의 정신과 의제는 지속되어야 함.
- 평화에 대한 위협이 곧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물이므로, 평화는 인류의 명령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평화의제 실현은 불가분함.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책무성을 가짐.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전쟁 종식과 분쟁 축소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평화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인정과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함.
- 평화안보 거버넌스는 진보하고 있음.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더욱 인정되어야 함.
- 평화와 안보를 유지, 증진하는 데 청년이 갖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이 인정되어야 함.
- 초국경적 민의 힘, 협력, 연대, 상호보완, 민간교류, 평화교육이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함.
-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우주무기화를 예방해야 함. 모든 정부가 국제군축 협약에 대한 지지와 이행의지를 강화해야 함. 군비경쟁, 핵무기산업 및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함.

- 평화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제도가 강화되고 보편적으로 인준되어야 함.
- 평화를 위한 자결권 실현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로 이어질 것임.

2-6. 시민사회의 평화 의제

한국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중요한 평화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대인지뢰의 불법성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두면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대인지뢰금지 국제법이 체결되는 성과에까지 기여하였다. 이어 유사한 불법 무기인 집속탄(확산탄)에 대한 금지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아울러 특정무기거래에 대한 대응으로서 고가 무기구매의 비리 문제제기, 공격형 무기 도입 비판,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편입 반대, MD 무기 구입 반대 등이 활성화 되어왔다. 군축운동은 해마다 여러 단체 공동으로 평화군축 박람회를 개최하여, ‘몹쓸 나쁜 무기 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전’ 등을 개최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외국 군사기지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연대가 돋보인다. 군사기지와 관련된 의제로는 주한미군 범죄근절, 매향리 사격장 피해보상 및 반환,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에 의한 집단학살 진상규명,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이 있다. 군사기지와 관련된 평화단체의 활동은 좁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여성운동, 주민자치, 과거사 청산, 주민 평화권 제기 등의 복합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은 군사기지 관련 국제적 평화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90년대 말부터 군사기지의 피해와 관련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혁하려는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1999), 일방적인 미사일방어망 도입 저지 운동(1999), F-15기 도입반대 국민행동(2002),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2002) 등이 있었다.

여기서 나아가 군인 인권문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개선, 예비군제 폐지, 모병제 도입, 군사주의 문화 극복 등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안보교육을 대체하는 관용 훈련, 갈등분쟁 해결,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의 커리큘럼들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 ‘전쟁과 학살의 흔적들에 대한 발굴’, ‘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반성, 전쟁기념관에 대항하는 평화박물관 건립 등이 평화운동으로 표현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1987년 원자력발전예 따른 전남 영광주민들의 어업피해 보상투쟁에서 시작하여, 발전소의 중수 누출, 핵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고, 원전 노동자와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충격과 함께 핵폐기장 건립에 대한 반대 의제가 부상되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환경-평화운동은 핵폐기장 문제만 아니라 일본의 고속증식로 건설과 플루토늄 수송문제, 러시아와 일본의 동해 핵투기 문제, 핵강대국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와 관련 국가들의 핵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반핵 의제를 전개하고 있다.

2-7. 동북아 무력갈등분쟁 대응 국제협력

무력갈등분쟁 국제연대(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에서 평화단체 간의 국제적 소통과 논의가 심화된 계기는, 2001년 6월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분쟁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NGO들이 분쟁예방을 위한 그들의 역할 및 이 분야에서의 UN과의 협력을 위해 지역별로 나라별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NGO들을 조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2002년 유럽갈등예방센터(ECCP)가 2005년 전 세계적에 걸친 평화 NGO 들의 논의와 의제설정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 목표는 분쟁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지역적 지구적 강령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평화 NGO들의 참여와 역할이 가장 적극적이며 지구적으로 제기되었던 사례이다.

한·중·일, 러시아, 몽고, 타이완, 홍콩, 필리핀 등의 동북아 평화단체들은 2003년 10월에 필리핀 다바오에서 열린 동남/동아시아 회의에서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라는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4년 2월에 1차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일본의 피스보트, 아시아평화연대에 조정 역할이 부여되었다. 북한도 참여의사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역 기반 노력이 국제적으로 결실을 맺어 2005년 갈등분쟁예방 국제회의가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 세계행동의제(Global Action Agenda)를 채택하고 이를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는 1) 신뢰형성의 메커니즘 으로서의 평화헌법(일본의 평화헌법 9조), 2) 평화교육과 역사적 화해, 3) 동북아에서 핵 대결 예방, 4)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전시 성폭력의 예방 등을 별도 세션으로 다루어 부각시켰다.

GPPAC 동북아위원회의 경험은 그 평화의제 설정의 수준과 범위, 참여의 범위 등 여러 면에서 전례없이 체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동북아에서 평화 형성과 대안 안보에 관련하여 국제연대와 민간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GPPAC 동북아위원회는 활동을 결산하면서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10개 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각 원칙에 해당하는 행동강령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는 동북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세부적인 평화의제였으며, 향후 평화운동과 평화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거의 유일한 지역적 정책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에 도달한 10개의 평화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와 예방적 외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나.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비군사화를 통한 협력적 안보 체계의 형성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황은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원칙에 근거해 비무장 행동을 통한 협력적 안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 공동체의 주권과 인간 안보를 담보하는 평화적인 지역구도 형성

이 부분에 있어 수차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와 관련 북한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논의를 시도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부터 동북아시아 행동 의제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안보 정책의 결정은 해당 공동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라. 분쟁과 잠재적 갈등 지역에 대한 평화적 개입의 촉진

갈등을 심화시키는 식민주의적, 군사적 개입을 대체할 비폭력적, 평화적 개입을 촉진해야 한다.

마. 갈등 예방과 성평등

무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별히 주목하고 지역 내 갈등 예방 구조 형성에 성평등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바. 정의, 인권,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갈등 예방 기구의 설립

정의에 기초해 과거를 극복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사. 평화문화와 예방문화의 촉진

평화 교육과 평화 언론을 발전시켜 대중문화의 군사주의와 협소한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건설

빈곤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현 경제 제도를 변화시키고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경제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자.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정부, 지역 기구, UN 사이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촉진

갈등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갈등 예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능력 배양

동북아시아의 강화된 시민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2-8. 진단

다양한 관심을 가진 많은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적 포럼이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종 선언문과 주요 발표문에 주요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KOICA가 공동주관한 최근 5개의 국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서 강조되거나 반복된 것을 요약하면 의미 있는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제어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2] 국내 평화관련 논의 핵심 주제어 범주

의제	ODA 정책 수용 과제/방향
인권	• 국가 간 협력의 원동력, 지역 간 협력의 주요 실천방식, 평화적 공존의 토대, 다양성과 포용의 거버넌스에 기초, 차별방지를 통해 갈등조정, 타 의제와 연계된 세부 의제 개발 필요
갈등/분쟁	• 분쟁 양상의 변화, 파급 효과에 변화, 새로운 대응 방안 필요
평화	• 평화 의제에서 경시된 최고의제,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불가분 관계, 인권공동체 형성의 과정에 필수, 평화권 인정-확장 필요, 평화에 대한 민의 자결권이 평화안보의 토대, 여성-청년 역할 부각되어야, 핵무기 신무기 우주무기화 금지를 포함하는 군축 필요, 전쟁 종식 우선, 예방적 접근 우선, 평화-인권-민주-성평등 ODA 필요, 시민성교육 역할, 기후변화 임팩트 예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글로벌 의미, 복합적 평화 의제 필요, 국제 평화거버넌스 실패 또는 위기 - 강화되어야, 초국경적 협력과 연대 및 민간교류와 평화교육이 평화구축의 토대
ODA	• 개발의 경로는 비선형적-예측성 낮아, 평화-안보-재건-민주에서도 중요한 역할, 위기 대응의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 동원, 장기적 역할, 다자주의 통합적 접근 필요, 시민사회 지원과 옹호활동 지원에 역할 해야, 제도개혁-시민사회-협력의 효과가 결합해야, 인권-성평등 범 분야이자 독자적 분야로 기능

이상에서 논의의 취약 분야로 확인되는 점은, 우선 갈등과 분쟁에 대한 세계적 또는 지역적 판단이 적다는 것이다. 최근 분쟁의 특징, 경향, 원인,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세부적 인식과 분쟁의 전개과정에 따른 다변화된 평화구축 전략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 ODA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포럼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데, ODA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거시적 정책 변화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도 몇 가지 결여점을 찾을 수 있다. 여성과 청년의 역할이 부각되었지만 이 역할과 평화의 권리 보장, 군비경쟁과 여성, 군비경쟁과 청년 등 세분화된 임팩트 인식이나 세분화된 역할과 권한을 찾아보기 힘들다.

3. 향후 평화논의의 과제와 지향점

3-1. 평화의 구조적 문화적 성격

평화의 구조적 문화적 성격은 평화 의제가 포함하고 있는 폭력, 갈등, 평화구축의 구조적

문화적 성격을 의미한다. 전통적 평화 담론이 추상적이고 도덕윤리적인 측면이 강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화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하는 일은 일단 쉽지 않다. UN은 평화의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사회가 ‘평화의 문화(상태)’에 합의하도록 추진했다. 그렇게 합의한 평화의 문화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평화의 문화는 다음에 원칙에 기초한 일련의 가치와 태도, 행동 양식과 전통 및 삶의 방식을 말한다:

- 생명 존중, 폭력 종식, 교육과 대화 및 협력을 통한 비폭력 실천과 증진
-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및 자주성 원리의 존중과 UN 헌장과 국제법의 의거한 각국의 국내 관할 사항에 대한 불간섭 원리의 존중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 갈등의 평화적 해결
-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발전 및 환경에 대한 요구 충족
- 발전의 권리 존중 및 증진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의 보장 및 증진
-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권리

평화를 이행하는 데 가능한 일국적,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각 사회 모든 수준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와 협력,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 대화와 이해의 원리 준수”⁸⁾

이러한 평화 목표를 더 세부적으로 정책화, 전략화하기 위해서는 평화 의제에 많은 세부적인 2차 개념을 더해야 한다. 정책 언어가 정교해지기 위해 필수이다. 즉 세부적인 개념들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선별된 2차 개념들은 평화, 폭력, 갈등이다.

3-2. 평화구축의 중요성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조사와 분석에서 시작한다. 평화 의제의 일차적 조사, 분석 대상은 갈등이다.

8) (출처: UN 총회 결의안 “평화의 문화 선언”, 1999년, A/Res/53/243.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

가. 갈등(conflict)

갈등은 한 사람 안에서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립적인 생각 또는 대립적인 이익의 충돌이다. 사회 현상 일반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보통 복잡한 특성을 보이며, 매번 나타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갈등 당사자들이 각각의 이익추구의 정당성과 모든 행위자들의 요구를 인정하게 되면, 갈등은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전투는 선택이다.

나.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해결(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resolution)

갈등은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도 하고 인간 존재의 일부이지만, 폭력적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갈등예방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단기적 중기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1)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 파악, (2)드러난 긴장의 완화, (3)기존 긴장의 상승 예방, (4)폭력 발생 이전에 위협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관리는 이미 발생한 갈등의 통제와 약화, 그리고 갈등 상승 시에 발생할 잠재적 피해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갈등 해결은 갈등의 근본 원인에 집중하여, 갈등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동과 태도상의 변화 및 그들을 둘러싼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탐구, 분석, 질문, 재구성하는 변화를 추구한다. 갈등 해결은 종종 갈등 예방과 갈등 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다.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 전환은 폭력과 불의를 야기한 그 체제와 구조 및 구성원들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갈등 전환은 폭력유발적인 갈등 상황에서 관계와 태도, 행동과 이익 및 담론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복합적 과정을 의미한다. 갈등 전환은 잠재적 갈등 또는 명백한 갈등을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평화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차원적으로, 여러 갈래로, 비결정적인 경로를 따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라. 갈등 분석(conflict analysis)

갈등 분석은 갈등의 (1)맥락과 배경, (2)원인, (3)행위자, (4)역동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한다. 갈등 전환과 평화 구축의 첫 단계는 갈등 분석이다. 갈등 전환의 로드맵을 얻기 위해서는 갈등의 잠재적 경로에 대해 면밀히 탐구해야 한다. (Berghof Glossary on Conflict Transformation, Berghof FoUNDation, 2012)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낸 가장 종합적인 전략을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 부른다. 평화구축은 평화조성 및 평화유지와 구분되는 중요한 평화 개념이다. 즉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평화조성(peacemaking)과, 충돌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평화유지(peacekeeping)와 달리, 평화구축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변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중장기 정책 개념이다.

배경으로는, 1992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UN 사무총장은 「평화의 의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질서 형성에 ‘평화구축’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평화조성을 우선, “갈등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평화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구조들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이 보고서에 대한 후속 논의와 후속 보고서를 통해서 평화구축은 이렇게 개념화되었다.

“갈등의 개시 또는 갈등으로의 회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일련의 조치들로서, 해당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형성이 중심이다. 평화구축 전략은, 해당 국가가 정책 주도성을 갖도록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평화구축 전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설정된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에 따라 집중된 조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UN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보고서, 2007)

이에 따라, 분쟁 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사람들의 기본 안전 지원, (2)정치적 절차 지원, (3)기본 서비스 제공, (4)핵심 정부 기능의 회복, (5)경제 활성화

2010년 젠더 기반 평화구축에 관한 후속 보고서에서는, 분쟁 해결, 분쟁 후 계획 수립, 분쟁 후 재정, 젠더 기반 시민 역량, 분쟁 후 거버넌스에서 여성의 대표성, 법치, 경제 회복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Secretary-General's Seven-Point Action Plan on Gender-Responsive Peacebuilding).

국제사회에서 축적된 이와 같은 논의는, 평화구축을 통해 추구하는 종합적 사회변화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의 사회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 분쟁/갈등의 근본 원인과 추동 요인에 대응한다.(예, 사회 구성 집단 간의 불평등)
- 분쟁/갈등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축과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예, 정치, 안보, 사법, 사회복지 행정 분야 등)
-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하고 사회 집단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 (예, 화해 과정)
- 정부에 대한 신뢰(국가-사회 관계)와 정당성을 세운다. (예, 사회적 대화)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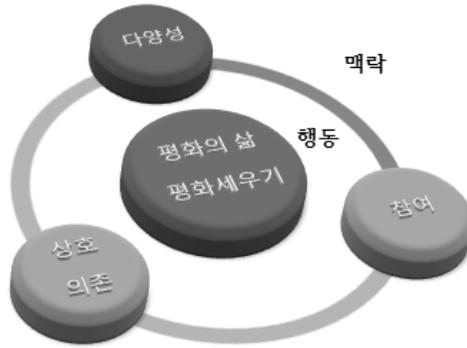
3-3. 평화 역량의 중요성

개인과 관계, 구조와 문화, 국내와 국제에서의 동시진행 평화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최근 국제적으로 ‘평화구축’ 또는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많은 지식이나 자료 보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은 단위화 될 수 있는 변화적 실천의 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평화교육계¹⁰⁾에서는 평화역량을 두 범주로 나누어 그 결합으로 구상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평화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맥락 변화 역량]과 자신과 주변 관계를 평화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행동 역량]이다.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9) “2. What is Peacebuilding?”, UN평화구축기금 UN Peacebuilding FUNd, <http://www.UNpbf.org/application-guidelines/what-is-peacebuilding/>

10) Max Fras and Sebastian Schweitzer eds, Designing Learning for Peace: Peace Education Competence Framework and Educational Guidelines, Erasmus+ (European Commission), 2016

[도표 2-1] 평화역량



출처: Designing Learning for Peace: Peace Education Competence Framework and Educational Guidelines, Max Frasn and Sebastian Schweitzer eds., Erasmus+ (European Commission), 2016

평화구축은 평화가 세워질 인적 생태적 맥락 배경의 변화와 관련된 역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 살기(평화의 삶)은 갈등 전환과 평화의 지속화에 기여하는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역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을 변화시키는 방향은 참여, 다양성, 상호의존성이다. 이는 힘의 논리, 힘의 국제정치론에 대항하는 이론적 구성을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을 겪고 난 이후 평화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사회에서는 관에서나 민에서나 평화역량을 함양하여 지속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화로 가는 길(pathways for peace)이 선택,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평화역량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종종 거론된다.

[표 2-3] 주제별 평화역량 요소

주제	역량
비폭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폭력 대화 2. '평화 감수성':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관찰과 인지 3. 비폭력적 라이프스타일 4. 긍정적 사고 5. '관계의 감수성': 관계속에서 폭력 알아차리기 6. 폭력 자기조절 능력
일상적 갈등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과 친구되기(갈등 속에서 희망/낙관 유지) 2. 갈등에서 당사자의 요구와 이슈 알아차리기 3. 자신과 타 존재와의 공감 empathy 4. 갈등 전환의 구조와 과정 이해 5. 갈등전환 일상에서 실제 적용

주제	역량
평화프로세스 세부기획	1. 기존 갈등-맥락 분석 2. 변화추진 능력 진단 3. 평화로운 변화 경로 기획 4. 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기획력, 평가역량 5. 평가와 계획의 선순환 프로세스 기획
사회적 갈등 전환	1. 구체적 갈등의 평화적 전환 구상 2. 불의와 억압에 관한 인식 3. 포용적 참여적 상생적 모임의 기획과 운영 4.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
지속적 평화의 제도화	1. 사건, 현상에서 폭력의 수준 모니터링 2. 폭력에 대한 조기경보와 대응 방법 3. 지속적 평화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시도를 지원, 강화 4.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공식/비공식 제도 만들기 5. 평화시민성: 평화의 가치에 관한 공공인식 증진

3-4. 갈등 예방의 중요성

역량 중심의 평화 실천이 강조되는 이유는 분쟁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과 UN이 공동으로 펴낸 [평화로의 길 Pathways for Peace](2018) 연구보고서가 이를 최근 설득력 있게 논증하면서 종합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분쟁예방을 국제협력의 핵심에 놓아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8가지로 제시되었다.

- 폭력적 분쟁 재증가, 초국경적 위협도와 복잡성 증대, 종합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한 대응 필요
- 분쟁 비용 급증 - 관련자 모두의 대응 필요. SDG가 핵심적 접근법, 개발 노력에 통합된 예방이 가장 효율적
- 포용적이고 지속적 개발을 통한 회복력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 불평등과 소외 해소 및 포용적 제도화 그리고 리스크 감안 개발 전략이 예방의 핵심
- 예방 조치는 국가 책임. 국가 책임은 국가 정책과 다자시스템의 거버넌스를 통해 성취됨. 일국 대응보다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폭력적 분쟁으로의 비화는 권력, 기회, 서비스, 안전에 대한 접근성에서 소외가 발생하여 집단의 불만으로 될 때 발생함. 국가 역량 또는 정통성 약화와 인권 유린이 더욱 그렇게 함. 포용적 정책 노력을 통한 방지의 방법 가능함.

- 성장과 빈곤 완화는 평화유지에 충분치 않음. 폭력 예방에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낮춰야 함. 해결책을 대화, 거시경제의 조정, 국가 중심 제도의 개혁, 재분배 정책에서 찾아야 함.
- 포용적 의사결정이 평화유지(합의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기본적 요소.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와 대표, 조직, 운동, 네트워크화 필수.
- 폭력 발생시 제도적 억제 역량과 더불어 평화-협력적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더 효율적인 예방이 됨. 특히 외교, 중재, 안보, 개발 문제에서 다양한 예방 도구와 수단들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함.

대안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은 이러한 정당성을 갖는다.

- 폭력적 분쟁 감소에 예방이 가장 효과 및 비용 효율성이 있음.
- 분쟁의 급증과 범위 및 성격 변화.
- 지구적 문제, 분쟁예방이 개발 성과에 기여함.
- 예방 조치의 혜택은 자명함.
- 전후 평화 목표(전쟁의 상처로부터 미리 세대를 구함)의 한계 - 오늘날 분쟁의 범위와 성격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 문제로 발생.

즉, 평화로의 길이란, 예방, 포용, 전쟁 이해, 시스템 위기, 경로의존성, 평화개발프레임워크, 신택트너십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구조적 문제 포괄적 해결, 제도 강화, 행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광범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 리스크를 높이는 소외와 제도적 취약점을 유형별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응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전략에는 반드시, 분쟁 리스크 모니터링, 다양한 차원의 리스크 해결: 평화개발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평화, 안보, 개발을 예방에 맞추어 조정, 예방 협력에 대한 장애물 극복: 평가 공유, 공동 메커니즘, 우선순위, 지역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등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개발과 예방전략을 결합시킨 유용한 정책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3-5. 평화권의 중요성

세계시민사회의 평화권 수립 노력은, 평화의 전략이 기존 국제인권제도의 기반위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특히 개인의 법적 권리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거버넌스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권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내용과 가장 글로벌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2010년 12월 9-10일,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스페인 인권국제법협회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등이 주관하여 평화교육에 관한 세계사회포럼에서였다. 여기에서 그 이전 10년간 세계 약 1,000여 개 인권 평화단체들이 의견을 수렴한 평화권 국제협약 기초안을 최종 검토하여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산티아고 평화의 인권 선언]이라고 한다. 평화의 인권은 줄여서 평화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차 결과로 2016년도 UN에서 평화의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6년 UN 평화권 결의안은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세계시민사회의 제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채택되었다. 시민사회의 평화권 국제협약 제안은 미완의 과제로 또 향후 평화권국제협약의 기준으로 남아있다.

산티아고 평화의 인권 선언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UN헌장과 국제협력의 전통 및 국제인권법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평화거버넌스 구축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상자 2-2] 산티아고 평화의 인권선언 주요내용

UN 헌장의 정신에 기초할 때 평화는 보편적 가치이며 UN의 존재 이유이며, 평화의 적극적 개념을 취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 모든 형태의 폭력의 제거, 인권의 온전한 보장의 조건으로 평화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법의 원리와 규칙이 그 근거이며, 국제법은 평화의 성취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와 모든 사람, 단체의 의무이며, UN 헌장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평화와 평화권과 관련된 기존 UN 총회의 결의와 선언을 상기하며,

1부. 평화의 인권 구성 요소

A. 권리

제1조 (권리의 주체). 개인과 집단 및 사람들(peoples)은 평화의 권리를 가진다.

제2조 (교육권). 모든 사람은 인권과 평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인간안보권). 모든 사람은 인간안보의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 a)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도구와 수단 및 자원을 가질 권리와
- b) 고용, 노동조합 참여 및 사회보장에서 공정한 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포함된다.

제4조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권리) 모든 사람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할 권리와 그 장애물을 제거할 권리, 지속가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그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불복종 및 양심적 병역거부권) 모든 사람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시민불복종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억압에 대한 저항권) 모든 사람과 인민들은 국제법의 기준에서 심각하거나 집단적인 또는 체계적인 인권 침해 또는 인민의 자결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와 나아가 항거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군축권) 모든 사람은

- a) 어떤 국가로부터도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b) 모든 국가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투명한 군축을 하도록 할 권리,
- c) 군축으로부터 얻어진 자원을 부의 재분배와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에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양심과 사상 및 종교를 가지고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난민지위권)

- a) 평화 지원, 전쟁 반대, 인권 증진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경우,
- b)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정치적 이유 또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기초하여 국가 또는 비국가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두려움을 가진 경우, 그리고
- c) 무장 분쟁이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강제적 이주의 희생자가 될 경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도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이주와 참여권)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평화롭게 정착하고 정착지의 공공 사안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피해자의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되고, 보호되고,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취약집단의 권리) 취약한 상황에 처한 집단과 그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권리와 인정과 향유에 미치는 특수한 조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B. 의무

제13조 (평화권 실현의 의무)

- a) 평화권 실현의 의무는 각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인민, 개인, 기업 및 각 사회와 국제사회의 기타 구성원들에게 해당된다.
- b)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의 가장 근본적 의무는 각국과 UN 기구들에 있다.

- c) UN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를 적절하고 대표하고 투명한 활동 방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d) UN은 무장 분쟁을 겪은 나라에 안정적인 재정 자원과 효과적 조정을 포함하는 재건과정에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3-6. 동북아 지역적 의제

2001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보고서 [무장갈등의 예방]을 계기로 전 세계 민간단체들이 무장 갈등을 예방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UN과의 협력 과제를 지역별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행동 의제: GPPAC 동북아 의제]와 같은 지역별 평화의제가, 세계 각 지역 다수의 평화단체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3-5회의 회의를 한 끝에 만들어졌다. 협력관계는 현재까지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GPPAC]이라는 중요한 평화네트워크로 유지되고 있다.

[글상자 2-3]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행동 의제: GPPAC 동북아 의제

- 기본 원칙
 - 주제: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 군축과 비무장을 통한 평화적 공존의 지역 제도 설립
 - 1-1: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 1-2: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와 동북아시아의 신뢰 구축
 - 1-3: 군축 촉진과 동북아시아의 비무장
 - 1-4: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 주제: 평화적 개입(Peaceful Engagement):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촉진
 - 2-1: 갈등을 심화시키는 제3국 개입의 예방
 - 2-2: 갈등 예방을 위한 비군사적, 비폭력적 개입
 - 2-3: 인도적 개발 지원의 촉진
 - 주제: 평화 문화(Culture of Peace): 정의, 인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건설
 - 3-1: 과거 극복을 위한 노력
 - 3-2: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
 - 3-3: 평화교육을 통한 예방 문화의 촉진
 - 주제: 평화 경제(Economy of Peace): 지속가능한 경제와 경제 정의의 실현
 - 4-1: 가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현 경제 제도의 전환
 - 4-2: 인간중심의 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도

3-7. 평화 의제가 평화구축 사업에 주는 시사점

이상 간략한 평화의제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로부터 평화구축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평화구축 사업을 심화하기 위한 필수 검토과제 목록이기도 하다.

- 평화와 폭력의 구조성(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분석에 기초한 평화문화 형성의 방향
- 갈등예방에 중점을 둔 평화구축 전략화
- 평화구축 과정에서 평화권 인식 증대와 평화권 증진을 위한 역량 형성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구축, 이를 통해 주류 이념인 힘의 정치론(현실주의 정치론)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역량 형성
-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의 다양성
- 갈등 분석 및 예방과 관리, 조정과 전환을 위한 실질적 훈련
- 안보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식 변화와 의제 설정: 다변화, 통합적 안보론, 인간안보론 등
- 정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적 역량 형성의 중요성
- 젠더와 평화: 젠더 주류화와 연계
- 청년과 평화: 청년의 평화안보 주체화
- 평화교육의 주류화
- 작은 지방별 local, 대 지역별 regional 평화의제 개발과 공론화
- 평화구축의 전략화: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여러 부문 전략의 필요

III. 주요 국제기구의 평화구축을 위한 양자협력 현황

1. UN의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사업 운영 현황

1-1. UN의 SDG16(평화)의 이행전략 및 실적

UN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 국제적인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1948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UN정전감시단(UNTCO)을 설치한 이래, 외교적 교섭을 통한 분쟁의 예방, 분쟁당사자 간 중재활동을 매개로 한 평화의 조성, 민-군-경찰력 동원으로 분쟁당사자 감시와 평화유지를 통해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냉전 후 일어난 무력충돌의 본질적 변화, 즉 국가 간 무력충돌에서 국가 내 정치경제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무력충돌이 급속히 증가했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종전이 성사되더라도 분쟁당사자들이 단일 관할권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도전적 환경에 직면했다. (Ryan 2013, 26). 기존의 평화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거시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강화함으로써 무력충돌로의 회귀를 방지하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한편, 1960년대 개발의 부재는 안보의 부재로 귀결된다는 안보와 개발의 연계성(McNamara 1963)의 주장이 국가 간, 지역사회 간 상호연결성과 상호침투성이 가속화되는 글로벌화로 보다 현실화되면서 1990년대 말, 안보의 대상이 개인단위에서 글로벌단위로 다양화되고 범위도 경제, 개발, 환경, 인권 등으로 확장되는 양태가 나타났다. 이에 UN은 기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질서의 유지에서 개인에 대한 위협과 욕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간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첩된 임무가 부여되었다. (Caldwell and Williams 2006, 6).

평화와 안보, 개발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추진과정에서 분쟁취약국에서의 낮은 성과를 통해 도출된 교훈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6번 목표와 함께 연계목표 간 안보화(securitization)에 영향을 주었고(Bergenas and Knight 2014)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주체와 더불어 전통적 안보행위자와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 이행전략

○ 예방과 중재, 평화조성

UN의 예방과 중재 평화조성활동은 주로 외교적 기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지거나 기 발생한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특사를 파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이며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 기타 유력 안보행위자들이 무력사용을 단념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한다.

SDGs의 출범이후, 상기 활동의 전략적 변화는 특사파견이라는 외교적 기제를 활용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UN 내 평화와 안보관련 기구의 구조조정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UN 시스템 내 개발기구에게 분쟁예방과 지속적 평화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먼저 UN은 평화와 안보관련 기구 중 평화구축지원실(PBSO)을 분쟁예방, 교섭, 평화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국(DPA)으로 이전시키고 정무국과 평화활동유지국(DPKO)에 양립되어 있던 지역관련 부서를 단일조직화하여 정무평화구축국(DPPA)으로 개편함으로써 분쟁예방과 관련 일관성 있는 정세분석과 전략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보고서(2018a)」에서 일각의 ‘개발의 안보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부터 고수해 온 개발과 안보기제의 균형원칙에서 탈피하여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UN의 개발 프로그램, 기금, 산하기구 등의 조직을 이런 기초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보다 포괄적인 이니셔티브인 Pathway for Peace를 통해 분쟁의 예방에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Ponzio 2018).

○ 평화유지

UN의 평화유지활동은 분쟁당사국이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로 과거 분쟁당사자를 감시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에서 냉전이후 다차원적인 활동으로 전개됨으로써 정치적 절차지원, 민간인 보호, 무장 전투원의 비무장·소개·재통합, 헌법제정과 선거제도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 법치회복, 적법한 정부의 권한의 지역 확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평화유지는 SDGs의 출범에 맞춰 UN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4년 평화활동에 대한 고위급 독립패널(HIPPO)을 구성하고 4개의 권고안을 보고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군사적·기술적 개입에 앞선 정치적 해결우선, 분쟁지역 상황에 부합한 대응, 글로벌·지역안보기구와의 굳건한 파트너십, 현장과 현지인 중심의 임무단을 구성하는 것이다(UN 2015a). 이를 반영하여 평화유지활동은 기존의 지연대응과 불요한 확대대응의 사이클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과 중재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고, 반응적이며 당사국과 시민들에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계획과 활동방식으로 전환하며, UN과 아프리카 연합과의 협력강화와 같이 글로벌-지역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다.(UN 2015b).

또한 UN은 최근 정치와 안보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3월 안보리 공개토론을 가졌다. 9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평화유지구상 보고서(A4P)은 ‘정치적 의지, 민간인보호, 지속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Gowan 2018).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20개의 정치적 공약사항들을 7가지 주제로 재분류하면 정치적 해결의 진전, 더욱 강력한 민간인보호체계, UN요원들의 안전조치 마련,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효과성 제고, 지속적 평화에 기여, 파트너십 강화, UN요원들의 불법행위 근절이다(UN 2018c).

○ 평화구축

UN은 1992년 평화를 위한 의제(Agenda for Peace)를 통해 학계의 담론이었던 평화구축 개념을 제도권으로 도입시킨 주체였으나, 5개의 단락에서 제시된 내용은 분쟁당사국이 무력 충돌로의 회귀할 만한 위험요소들을 경감시키는 소극적 대응이었다(Ryan 2013, 27). 그러나 개발을 위한 의제(Agenda for Development, 1994)에서 평화구축은 ‘사회·정치·사법 분야의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여 개발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평화를 위한 의제 부속서(UN, 1995)를 통해 평화구축에 있어 안보, 개발, 민주화, 인권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한 평화유지관련 주요 보고서 중 하나인 브라히미 보고서(UN, 2000)는 ‘UN이 보다 강력한 평화구축기능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평화구축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UN내 평화구축 시스템화가 이뤄졌는데 평화구축위원회(PBC)와

평화구축기금(PBF), 그리고 평화구축위원회(PBC)를 지원하고 평화구축기금(PBF)을 관리하는 평화구축지원실(PBSO)로 구성되었다. PBC의 주요임무는 모범사례의 전파, 평화구축행위자 간 조정, 평화구축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문,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구축에 대한 환기 및 재원 조성이다. PBSO는 PBC에 전략적 자문과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PBC와 함께 UN기구들의 평화구축노력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UN 평화구축 시스템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출범해야 하는 점에서 평화구축에 미온적인 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래 제시됐던 설립안에 비해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였다. 구체적으로 31개나 되는 회원국에 비해 소규모의 직원으로 역량이 부족했고 (Berdal 2009; Miall 2007; Murthy 2007) PBF조성에 있어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에 대한 의존도가 컸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도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Lombourne and Herro 2008).

평화구축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은 1차적으로 UN 평화구축구조에 대한 검토보고서(UN, 2010)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대상국의 주인의식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UN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 개선, 유연성 증대, 지역차원의 개발 강화, 강한 현장중심의 정체성, 위원회의 의욕제고, 지위향상, 성과개선, 권한강화, PBSO의 강화였고 소위 위원회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015년에 실시된 2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면서 SDGs와 맥락을 같이한 2016년 안보리결의(S/RES/2282)와 총회결의(A/RES/70/262)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무엇보다 평화구축과 함께 ‘평화의 지속화’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예방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평화의 지속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폭력적 갈등의 발생, 지속, 증대, 재발을 예방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조정가운데 일관성 있는 접근을 요하는데 구체적으로 선거, 포용적 대화, 화해, 국가와 지방차원의 갈등관리역량을 포함한 정치적 절차, 지뢰활동, 전(前) 전투원 비무장-소개-재통합, 치안영역재편에 있어서의 안전과 치안확보, 사법제도의 접근과 전환기 정의, 성 평등,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법치와 인권제도화 및 보호, 폭력피해자, 실향민, 난민과 같은 취약그룹 대상의 식수위생, 보건,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투명성, 책무성, 반 부패적 공공행정 및 공공재정을 포함 핵심적인 정부기능, 고용, 생계, 사회기반 시설을 포함한 경제의 재활성화이다.

이러한 일련의 평화구축 구조의 획기적 변화에 이어 UN시스템이 회원국과 시민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비전과 새로운 기제와 접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보고서(2018a)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지역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UN과 세계은행, EU등 공동조사와 기획 프로그램화를 강조하고, 분쟁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재원조성 컴팩트(Funding Compact)를 통해 민간주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재원의 조성이 중요하고, 전술했던 UN개발시스템이 분쟁예방과 지속적 평화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

○ 반테러리즘

UN은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대하여 18가지의 보편적 대응기제를 특정 테러별로 UN시스템의 체계 안에서 보완해왔으며 2006년 9월에는 최초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의 전략과 운영 체계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한 결과, UN 글로벌 테러리즘 전략(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이 채택되었다.

동 전략은 4가지 주제로 구분되는데 테러의 확산을 조성하는 조건에 대한 환기, 테러의 방지와 테러의 퇴치 대책, 국가별 테러방지와 퇴치역량구축 및 UN의 역할강화 대책, 테러퇴치관련 법치주의와 인권존중보장 대책의 마련으로 총회에서는 매 2년마다 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총회결의안(A/71/291)의 채택으로 2017년 6월에 UN에 ‘반테러지원실(Office for Counter-Terrorism)’이 설치되었고 회원국의 UN 글로벌 테러리즘 전략이행을 위한 UN의 지원역량, 결의안(A/71/858)에서 사무총장이 제안한대로 정부국에 설치했던 ‘반테러 이행 테스크포스’와 ‘반테러 센터’를 ‘반테러 지원실’로 이전 조치했다.

○ 군축

UN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차원에서 총회와 기타기구는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유관 활동은 군축실(Office of Disarmament Affairs)이 보좌한다.

UN은 그동안 회원국들의 첨예한 입장에 따라 표류했던 군축의제를 인도주의에 기반하고

군축과 개발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평화구축을 비롯한 연관된 주제들을 결부시킨 새로운 접근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안보: 군축의제(Securing Our Common Future: An Agenda for Disarmament)를 2018년 5월에 제시했다.

동 의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인류애를 살리는 군축, 생명을 살리는 군축, 미래세대를 위한 군축이고 부문별 이행방안에서 도출되는 주제는 과거의 군축의제의 연속성 차원에서 핵무기와 화생방무기, 재래식 무기를 포괄하는 군축을 제시하고, 국제안보환경의 악화로 묘사된 ‘신냉전의 도래’, ‘공공연한 내정간섭’, ‘점증하는 무력사용’과 같은 정황제시를 통해 군축교섭에 있어 다자주의 퇴조와 現 핵 위기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핵무기금지 규약을 재확인하고, 군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UN이 직면한 한계에 대해 총회의 제1위원회(군축·안보), 군축회의, 군축실의 연계성을 권고하고, 인도주의와 안보적 고려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군축의 다원적인 면을 제시했다.

나. 이행실적

○ 2016년

인구 십만 명당 의도적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2008년 6.8명에서 4.6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선진국대비 개도국의 발생비율이 두 배가 높고 최빈개도국에서는 오히려 증가추세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무력충돌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했고 이는 대규모 이주와 인도적 지원 수요를 초래했다.

신체 및 정신적 차별을 포함한 아동대상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고 2005년부터 2015년간 조사가 가용한 국가는 73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한데 1세부터 14세 사이 아동의 절반은 가정에서 일종의 신체적·정신적 차별을 받았고 북아프리카의 경우, 90%의 아동이 이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에 있어 여아와 남아의 비율은 2011년 21%와 13%로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 18%와 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4년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상황이다.

성폭력은 가장 해결이 요원한 아동인권침해 요인 중 하나임에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반적인 문제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비교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31개국의 저·중소득

국가의 데이터들을 보면, 18세 이전 최초 성폭력피해를 당한 18~29세 여성비율은 0~12%까지 다양한 반면, 남성에 대한 동일 데이터는 5개국에 불과하고 동일 국가 내 여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경찰에 신고된 강도피해는 데이터가 가용한 27개국에서 25%에서 50% 사이인데 이는 치안당국의 접근성과 신뢰도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도사건 발생률에 대한 공식데이터가 제한되더라도 불구하고 뇌물수수비율에 대한 19개국의 수치가 치안당국에 접촉한 접촉시민 비율 중 50%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일부지역은 최근 10여년 간 평화와 안보의 수준이 증대되고 안정된 데 반해 많은 국가들이 만성화된 무력충돌과 폭력에 직면해 있고 취약한 제도와 법, 정보 및 기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2017년

2015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살인사건 피해자수는 5.2명~6.7명 수준으로 살인사건비율은 감소추세이나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는 증가세에 있다.

76개국에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1~14세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체벌 등 정기적으로 폭력을 당한 아동은 10명 중 8명으로 보고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견조한 진전이 있는 건 긍정적 신호이고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2004년 84%에서 2014년 71%로 약간의 감소세가 있었고 성 착취 피해자비율도 약간 줄어들었으나, 강제노동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에 조사된 피해자의 28%는 아동이었고 여아와 남아의 비율은 각각 20%와 8%이다.

성폭력의 경우, 35개의 저·중소득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18세 이전 최초 성폭력피해를 당한 18~29세 여성비율은 0~16%로 보고된다.

전반적으로 살인사건이 점차 감소세에 있고 법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폭력적 갈등은 최근 증가세에 있고 일부 과격한 무력충돌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효과적이고 책무성을 갖춘 포용적 제고와 함께 평화와 안보촉진의 경과는 여전히 지역에 걸쳐 불균등한 상황이다.

○ 2018년

2005~2017년 간 데이터에 의하면, 81개국의 개도국에서 1~14세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신체적·정신적 체벌을 당했고 이들 국가 중 7개국에서는 아동의 반 이상이 폭력적 형태의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2014년 간 570건의 인신매매가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의 이동이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력충돌의 결과지만 밝힐 수 없는 공포 혹은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 주요사업 소개

가. UN평화구축기금 사업

UN평화구축기금(PBF)은 UN 평화구축체계의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총회, 안보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거 설치되었고 2017년 현재 27개국 내 200여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PBF는 긴급대응형 사업(Immediate Response Facility)과 평화구축 복구형 사업(Peacebuilding Recovery)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 분야는 크게 4가지로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는 평화프로세스와 이니셔티브에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을 증진하는 국가역량을 구축 및 강화하고, 경제의 재활성화가 일반적인 평화의 배당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재건하는 것이다.

[표 3-1] PBF 분야 및 지원순위(2011~2016)

우선순위분야	사업분야	2011-2016 지원순위
1.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 안보치안영역 재편	③
	• 법치	②
	• 비무장-소개-재통합	⑪
	• 정치적 대화	④
2.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및 공존 증진	• 화해	①
	• 민주적 거버넌스	⑧
	• 분쟁예방 및 관리	⑦

우선순위분야	사업분야	2011-2016 지원순위
3. 경제 활성화 및 즉각적 평화 배당 창출	• 고용	⑥
	• 사회적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제고	⑤
4. 필수적 공공 서비스 제공	• 필수 국가역량 강화	⑫
	• 중앙정부 권한/지역 거버넌스의 확산	⑩
	• 평화구축 거버넌스(JSC/PBF사무국)	⑨

출처: <http://www.unpbf.org/what-we-fund/>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중점 협력국별 사업사례¹¹⁾

[표 3-2]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네팔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네팔 평화구축: 참여적·안전 기반 전환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의 복합적인 분쟁 후 전환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범위의 지도자 간 포용적 협조 강화 • 전국 및 지역단위 정부, 정당, 시민사회 섹터의 협력적 리더십과 대화를 이끄는 정부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개선 • 젠더기반 폭력 경감 	2013. 3 ~ 2015.12	\$2,558,368	UNDP 및 UN Women
법치 및 인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서비스관련 여성 및 취약그룹의 낮은 신뢰도 문제해결 • 법률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 공식 및 비공식 사법체계 간 상호보완성 마련 • 법률 직종 내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진출 지원 • 분쟁피해자문제의 환기 차원에서 형법 시스템 역량 강화 	2013.04 ~ 2015.12	\$2,477,455	UNDP 및 UN Women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재통합 및 재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정부의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재통합 및 재활계획의 이행관련 유관정부부처와 비정부기구 역량구축 지원 	2013.03 ~ 2015.12	\$1,500,000	UNICEF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한강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토지접근성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팔의 현행 토지개혁에 대한 정책대화에서 여성의 관점의 포용 및 성 평등 제고 	2014.12 ~ 2015.12	\$1,000,000	UNDP UNHabitat IOM

11) <http://mptf.undp.org/factsheet/fund/PB000> 토대로 재구성. (접속일: 2019.05.08.)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중앙 Teria 區 내 여성의 평화와 안보의제 현지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개선 및 향상 • 지역 내 국가이행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지원 • 마을개발위원회에 여성참여 • 궁극적으로 중앙 Teria 구 젠더민감성이 반영된 평화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제도적 기반 지원 	2014.12 ~ 2016.07	\$576,602	UN Women UNDP

[표 3-3]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미얀마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몽주와 카린주 내 평화의 배당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역량 구축 • 분쟁발생 지역사회 내 평화적 공존 강화 • 여성과 아동, 미디어 등 평화의 주요행위자 참여촉진 	2013.11 ~ 2015.12	\$1,500,000	UNICEF IOM UNDP UN Women UNHCR UNESCO
미얀마 다양성과 조화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개발, 인권, 법치, 민주화, 협력적 치안이 적절히 구현되고 사회적 폭력과 예방을 위한 논의를 장려하는 센터건립 지원 • 센터구축을 위한 직원채용, 물자구매, 운영재원 지원, 진행 및 모니터링 	2015.02 ~ 2016.07	\$2,500,000	UNOPS
군대 및 무장그룹 소년 징집 근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군(Tatmadaw)의 소년병 징집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합동 이행계획의 추진 지원 • 기 징집 소년병 확인 및 해제, 사회 재통합 지원 	2015.10 ~ 2017.03	\$1,500,000	UNDP ILO UNICEF

[표 3-4]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필리핀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Bangsamoro 평화조약의 이행지원을 위한 신뢰 및 참여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발전을 위한 정당 설립 및 정치지도자 참여 증진 홍보 • 분쟁지역과 소외지역 내 실향민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권을 보호 	2014.11 ~ 2016.05	\$3,000,000	UNDP UN Women FAO ILO UNHCR UNICEF

[표 3-5]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스리랑카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실향민 정주지마련을 통한 화해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Jaffna)와 동부(Tricomalee) 내 최고 치안경계지역 토지제공을 통한 실향민 정착지원 소수 및 취약그룹의 고충문제의 반영 	2015.06 ~ 2016.12	\$1,200,000	UNHCR UNICEF

[표 3-6]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우간다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UN 평화구축 및 복구지원 사업 (UNPR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및 아동대상 분쟁 후 겪는 특정한 문제(심리적 경제적 안보, 정치참여 등)의 극복을 위한 권한강화 젠더기반 폭력과 차별 종식 	2010 ~ 2014	\$2,500,000	UNICEF UNF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5,000,000	UNCDF FAO IOM WFP 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치와 인권보호를 통한 평화 구축 		\$5,000,000	

[표 3-7] 평화구축사업 국가별 주요사례 - 콜롬비아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운영기관
평화를 위한 소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pira Paz(평화를 호흡하라)' 대중 홍보 캠페인 지원 	2014 ~ 2015	\$2,000,000	UNICEF

나. UNDP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평화구축사업

UNDP는 「2018-2011 전략계획」에서 '충격과 위기에서의 복원력 구축'을 3가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접근방안 중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강화(2번)', '복원력을 갖춘 사회를 위한 예방과 복구역량 향상(3번)'을 선택했다(UNDP 2017). SDG16과 연관된 민주적 거버넌스와 평화구축 사업부문을 보면, 분쟁예방, 포용적 정치절차, 요에 민감하고 책무성 있는 제도화, 법치, 정의, 치안 및 안보, 인권, 청소년 권한 강화, 부패척결,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HIV 및 보건으로 구분된다. 또한 UNDP는 자신탁기금(MPTF)의 행정 관리기구로서 '인도적 지원기금', '개발기금', '전환기 및 평화구축기금'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표 3-8] UNDP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평화구축 사업분야 및 주요내용

사업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1. 분쟁예방	• 평화를 위한 인프라	• 분쟁방지를 위한 국가역량 구축(DPPB와 협력)
	• 대화와 중재	• 분쟁국 국가 및 지역중재자 역량강화(DPPB 및 EU와 협력)
	• 갈등분석 및 심사	• 포괄적 갈등 및 개발분석(CDA)를 지원 • 세계은행 및 EU와 합동 복구 및 평화구축심사 참여
2. 포용적인 정치절차	• 소수 및 취약계층의 정책참여	• 장애인(UNPRPD)과 토착민(UNIPP) 기술사무국 업무 • 시민사회자문위원회 설립
	• 헌법시스템 개편	• UN임무단 및 활동중료국가 대상 헌법제도 개편 지원 • DPPB와 협력
	• 선거절차 지원	• 선거관리기구 지원 • DPPB 및 EU와 협력
	• 의회발전지원	• 60개국 의회발전 지원 • 의회발전포털(Agora)관리
	•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 전반적인 정치활동에 여성참여 증진 • UN기구, 지역기구, INGO와 협력
3. 수요에 민감한 책무성 있는 제도화	• 지역 거버넌스와 개발	
	• 핵심정부기능 역량	• '공공행정 내 법치준수 평가' 틀 제공 • 핵심정부기능관련 UN기구 간 플랫폼 공동의장기구 • 개방정부 파트너십 주관
4. 법치, 정의, 치안 및 안보, 인권	• 공공행정분야의 성 평등	
	• 정치적 환경 조성	
	• 사법 및 안보/치안기구	
	• 법률서비스 접근성	
	• 지역단위 치안안전	• UN소형무기조정행동 • 국제 안보치안영역 자문팀 • 무장폭력과 개발에 대한 제네바 선언 • 폭력방지 연합 등 참여
	• 인권	• 글로벌 국가인권기구 연맹 및 UN인권기구 파트너십
	• 전환기 정의	• 국제전환기정의센터 • 국제형사재판소 등 협력
	• 젠더 정의	• UN 분쟁 성폭력 및 법치 전문가팀 • UN 분쟁성폭력 행동 참여
	• 경찰, 사법, 교정을 위한 글로벌 중점센터	
	• 토착민 보호	
• 장애 포용적 개발		

사업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5. 청소년 권한 강화	• 청소년 중심 및 청소년주도 개발 증진	
6. 부패척결	• 개도국 반부패기구 지원	
7. 폭력적 극단 주의 방지	• '포용적 개발과 관용, 다양성존중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전략 프레임워크 시행	
8. HIV 및 보건	• 불평등 및 배제 경감	
	•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증진	
	• 보건에 대해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	
	• 글로벌기금 파트너십	

○ 사업사례

■ 차드강 분지 통합지역 안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차드강 분지유역 4개국 공동의 지역안정화 개발을 위한 정치적 절차 지원, 지역사회 치안지역 거버넌스 화해를 통한 지역안정화 촉진, 전(前)전투원·통합사령부 군인·자경단 등의 사회적 통합
- 대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
- 사업기간: 2017.09~2018.12
- 공여국: 독일
- 사업비: EUR6,000,579

[표 3-9] 차드강 분지 통합지역 안정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산출	내 용	성과
로드맵과 정책대화	• 지역기반 안정화와 탈 극단화에 대한 로드맵 • 탈 극단화 및 화해를 위한 정부 간 대화	• 로드맵 마련 및 국가 간 합의 하에 시행 • 정부 간 대화 착수
지역치안·거버넌스, 화해	• 안정화 수요조사 • 국경 간 치안, 조기경보, 조기대응체계 • 지역기반의 탈 극단화 및 화해 • 효과성·책임성있는 지역거버넌스	• 수요조사 완료 및 대상지역 채택 • 사업개시 •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 대상국가 별 거버넌스 형태 포착
전 전투원 사회통합	• 법적 체계 및 재활·재통합방안 마련	• 법체계 및 방안 마련

■ 지역 평화구축사업

- 사업목적: 지역사회 간 상호의존감 증진을 통해 평화적 공존, 상호작용 및 교류의 강화
- 대상국: 남수단
- 사업기간: 2017.01~2018.09

- 공여국: 스웨덴
- 사업비: USD3,770,000

[표 3-10] 남수단 지역 평화구축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산출	내 용	성과
사업선정	• 지역사회 간 상호의존도 증진	• 마을공동시장 건립 결정
입지선정	• 지역 평화위원회와 지역사회 참여	• 5개 마을의 교차지 입지 선정
시장건립	• 50개의 판매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회의실, 채소세척실, 6개 화장실, 가축경매장, 태양열시스템, 수도시설 등 건립	• 다목적 시장 및 보조시설 건립

- 평화, 안보, 정의 강화를 위한 국가역량개발사업
 - 사업목적: 2000년대 테러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과 치안불안정 극복을 위한 국가역량개발
 - 대상국: 모리타니아
 - 사업기간: 2013.01~2018.12
 - 공여국: 일본
 - 사업비: US\$3,130,000

[표 3-11] 국가역량개발사업 주요내용 및 성과 - 모리타니아

산출	내 용	성과
무기확산 근절	• 소형무기 및 경화기 확산금지 활동 전개	• 모리타니아 소형무기 및 경화기 확산금지 법체계 마련 • 관련 업무 전산화
사법부문 역량	• 사법부문 역량강화 및 취약그룹의 법 접근성 향상	• 투명성과 인권보호 원칙에 의거, 법원 내 범죄기록 보관 및 발급
지역사회 안정화	• 국경마을의 평화관리 역량강화	• 국경부근 5개 구역 내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 11개 다목적 마을센터(재봉틀, 충전기, TV 등 구비) 센터 구축
지역법률서비스	• 6개 지역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 80명의 치안판사에 대한 법률연수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법적분쟁 지원 및 교도소 내 마약 및 소형무기와 경화기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추적시스템 제공

1-3.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 사업에서의 도전과제

일반적으로 다자성 양자사업을 수행하는 다자기구는 수탁사업의 준비, 교섭, 추진, 강화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거래비용이 소요되고(Lawson 2009) 다양한 목적과 주체의 지정기탁 사업은 다자기구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의무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다자개발기구의 경우, 자발적 기여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간 경쟁을 감수해야 하는데 특히 보건과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분야의 다자신탁기금은 기금사업공모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UN, 2012: 50). 지정 기여금에 대한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입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고 다자기구나 수원국의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짐으로써 비대칭적인 의사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평화구축기금은 출범 시에 비해 규모도 커졌고, 수원채널도 공여국 이외에 기타 비전통 공여자들로부터의 자발적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4년 기준 상위 5개 공여국¹²⁾의 기여금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다 보니 기여금의 등락이 있을 경우 예측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UN 2014, 11-12). 그러나 기금의 수요에 비해 조성규모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여 개국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타 지정기여금 사업에 비해 평화구축사업 사업은 변동성이 크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사업대상국 내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안보적 환경의 변화나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안정한 치안상황으로 사업의 중단위기에 놓일 수 있다(UNDP 2017). 또한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대상국 정부의 참여가 중요한데 평화구축의 특성 상 정부부처 간 조정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종교 및 여성단체 등 다양한 행위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행이 계획대비 지체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기금 공여국 입장에서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자기구의 위기관리 역량이나 대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12) 200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누계액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은 1위 스웨덴(US\$155,347,266), 2위 영국 DFID(US\$154,494,902), 3위 독일(US\$121,644,395), 4위 네덜란드(US\$106,433,067), 5위 노르웨이(US\$80,823,221)인데, 영국의 경우 DFID와 영국정부가 공여한 액수를 합치면 1억 9천만 달러로 1위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16위로 공여액은 US\$8,848,000임.
(<http://mptf.UNdp.org/factsheet/fund/PB000>, 접속일: 2019.05.06)

다자기구들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방어적 입장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KOICA가 평화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계약사항의 검토,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질 제고가 어려울 수 있다.

1-4. 시사점 및 협력가능방안

포르투갈 총리와 UN난민기구 대표를 역임함으로써 양자와 다자관계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UN은 그동안 기능적·명시적 수준의 개발과 평화의 접점(interface)수준에서 최근 양측의 유기적인 결합(nexus)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한 이는 구조적으로 평화관련 사무국 조직의 통폐합과 조정, 신설로 이어졌고 평화구축에서 예방적 성격의 평화의 지속화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테러리즘과 군축의제까지 평화의 지속화 패러다임의 체계에 포함시키는 변혁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16 평화와 관련한 지난 3년간의 이행실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지역 간 이행의 불균형, 특정 폭력(아동)과 특정 계층(여성과 여아)에 대한 신체적·심리적·구조적 폭력의 이행성과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국가의 무력충돌의 영향은 관련 지표들의 개선을 막는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평화구축기금은 다자신탁기금으로서 4가지 중점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위 5개 사업은 ‘화해, 법치, 안보치안영역재편, 정치적 대화, 사회적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 제고’이며 한국의 중점협력국에서 수행된 동 기금사업도 추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UNDP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평화구축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분야 내에서 수행되는 다자성 양자사업의 경우, 보코하람의 테러로 인해 주변국 간 조성된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화를 유도하는 지역접근의 사업(독일)과 분쟁취약국 내 인종적 갈등이 있는 마을 간 상거래를 매개로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경제 활성화 사업(스웨덴), 역시 테러의 피해로 장기간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사법적 접근성 제고와 치안 안정화를 도모하는 국가역량사업(일본)은 공여국이 추구하는 SDG16, 구체적으로 평화이행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KOICA가 SDG16 및 평화구축 관련 ODA 전략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국제기구 협력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역량의 한계로 양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평화구축목적의 다자성 양자사업은 대상측면에서 분쟁취약국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에 있어 한국이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치안안정화(지뢰행동, 치안기관 역량강화, 안보-치안 영역 재편)와 경제활성화(기술교육을 통한 고용촉진) 측면과 함께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전환기 정의 이행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법적 정의 분야의 고려도 요구된다.

2. World Bank의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사업 운영 현황

2-1. World Bank의 SDG16(평화) 이행전략 및 실적

가. World Bank의 SDG16(평화) 이행전략 및 실적

○ 1990년대~2000년대

UN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개발기구로서 세계은행은 그동안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의 주요 주체로 역할 해왔다. 분쟁에 취약한 국가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은행의 관련 운용 구조를 재구성했다. 평화구축 활동 초기에는 물리적·경제적 재건이 세계은행 설립 이래 가장 핵심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활동을 한정적으로 유지해오며 분쟁 후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꺼려왔다.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기조는 1995년 9월 세계은행 총재가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¹³⁾하면서 변화를 꾀한다.

이후 세계은행은 분쟁 후 영역에서 기관의 정책과 전략을 눈에 띄게 발전시켜왔다. 1997년 이사회는 내전에서 벗어나는 국가에 개입하는 것에 관한 프레임워크 문서¹⁴⁾(a framework paper on engagement in countries emerging from civil conflicts)를 승인했는데, 이

13) Stewart Patrick, “The Donor Community and the Challenge of Post conflict Recovery,” in For man and Patrick, eds, Good Intentions: Pledges of Aid for Post conflict Recovery (Boulder, Colo.: 2000).

14) World Bank, Framework for World Bank Involvement i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new reconstruction framework,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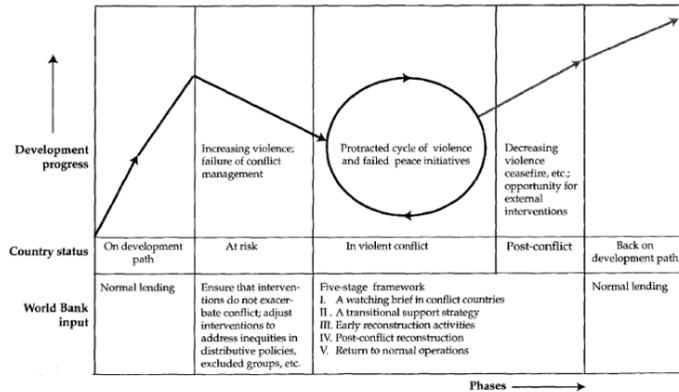
문서는 분쟁 후 재건을 위한 세계은행의 개입에 대한 첫 번째 공식 프레임워크로 분쟁에서 회복하는 국가들에 명백히 맞춘 목표와 지침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재건 범위를 단순히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에서 평화로운 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활성화 조건의 창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이를 위한 5단계¹⁵⁾를 규정했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전환적 지원 전략 TSS(Transitional Support Strategy)가 요구되는 시점을 세계은행 개입의 진입점으로 삼았다.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부에 PCU(Post-Conflict Unit)을 창설하고 기관 내의 교육훈련과 역량강화를 담당했다. PCU는 새롭게 조성된 분쟁 후 기금 PCF(Post-Conflict Fund)의 관리도 맡았다.

[글상자 3-1] 세계은행 분쟁 후 재건을 위한 개입 5단계

- 1단계: Watching brief in conflict countries in which there is no active portfolio
- 2단계: Preparation of a transitional support strategy as soon as resolution is in sight
- 3단계: Transitional early reconstruction activities, proceeding as soon as field conditions allow
- 4단계: Post-conflict reconstruction(under emergency procedures)
- 5단계: Return to normal lending operations.

출처: World Bank, The new reconstruction framework, 1997, 40p

[도표 3-1] 1997년 평화구축 프레임워크의 갈등 주기 해소와 개발의 경로 재개의 연관성



출처: The new reconstruction framework(1997) 발췌

15) World Bank, The new reconstruction framework, 1997, 40p

- 1단계: Watching brief in conflict countries in which there is no active portfolio
- 2단계: Preparation of a transitional support strategy as soon as resolution is in sight
- 3단계: Transitional early reconstruction activities, proceeding as soon as field conditions allow
- 4단계: Post-conflict reconstruction(Under emergency procedures)
- 5단계: Return to normal lending operations.

1998년, 세계은행은 분쟁 후 재건 경험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¹⁶⁾를 발표했는데, 동 보고서는 과거의 프로그램 운용결과를 검토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해온 세계은행의 전통적 입장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과 활동을 제안했다. ‘평화조성과 평화유지는 UN의 의무이며 세계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분쟁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추가적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 정책의 명확화, ▲세계은행의 역할 정의, ▲세계은행의 비교 우위 및 성과 향상, ▲일부 통념적 관습 제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제안을 밝혔다.

이듬해, 세계은행은 분쟁 후 국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내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PCU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분쟁 후 관리 운영 그룹(Post-Conflict Management Steering Group)이 검토를 맡았다. 운영평가부서(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D)는 분쟁 후 국가의 정치 및 경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1월, 세계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갈등에 대응하고 분쟁에 대한 민감성 제고를 위한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nflict”라는 제목의 새로운 운영 정책을 채택했다.(이는 추후 갈등 분석 프레임워크로 발전) 분쟁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분쟁의 영향을 받는 나라와 분쟁에서 벗어나는 나라를 모두 다루면서, ‘국가 내 세계은행 개입을 위한 중단기 계획’으로서의 TSS 개념을 명확히 했다. 지원을 할 시 첫단계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화협정과 재건 계획의 목적과 순서에 근접하게 일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문서는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가 과도기적인 재정 요구를 적시에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세계은행이 예외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은행의 분쟁 예방과 재건 지원 역할의 극적인 확대는 내전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침체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 심화된다. 세계은행은 국가들이 내전을 끝내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것은 이미 심각한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을 심화시켜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마비와 폭력적인 정치갈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간주했다. 2003년에 발간한 정책 연구 보고서 “분쟁의 뗏 깨기: 내전과 개발 정책(Breaking

16) World Bank, The World Bank’s experience with Post-Conflict Reconstruction, 1998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¹⁷⁾이 이를 입증하는데, 동 보고서는 분쟁과 개발의 전 영역에 있어 세계은행과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분쟁의 덫’이란, 한 나라가 내전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평화협정에 도달한 후에도 분쟁의 자생과 재발을 촉진하는 부정적 메커니즘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의 주기를 타개하고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부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계기로 세계은행은 분쟁 후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은행의 임무를 다시 정의하기에 이른다. 즉 경제 재건을 촉진하고 정치적 재건을 도모함으로써 이른바 ‘평화를 위한 재원’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세계은행의 역할로 삼았다. 분쟁 후 재건 활동은 프로젝트와 국가에 따라 초점이 다른 다양한 대출(lending)과 비대출(non-lending)로 구성되며, 이때 세계은행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세계은행은 분쟁 후 즉각적으로 경제 회복의 가속화를 기대하며, 대출 활동은 ‘경기 부양’과 ‘전쟁으로 손상된 인프라의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출활동은 광범위한 복구 및 재건 전략을 정의하고 국제 자원을 동원 및 조정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경제회복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미망인, 아동, 참전용사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적 안정, 인권, 사회 통합,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적절한 생활수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97년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기 까지 세계은행은 분쟁 후 국가의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입장은 세계은행이 분쟁 후 국가들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의 부족 등을 야기해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반면 이 시기 세계은행은 IMF와 더불어 분쟁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의 거시경제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양자 및 다자 공여자들에 비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행사하는 영향은 상당히 컸는데, 고도의 기술협력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 지원과 부채탕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분쟁 후 국가 재건에 대해 점차 적극적인 개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세계은행은 UN, 유럽연합과 함께 분쟁 후 재건을 비롯한 평화구축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2008년 “Joint Declaration on Post-Crisis Assessments and Recovery Planning”을 공동선언한다. 위기 이후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세 기관이 협력할 것을 공식적으로

17) 세계은행과 옥스퍼드 대학 공동발행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Post-Conflict Needs Assessments(PCNA) 실시를 강화했다.

세계은행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PCNA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특히 2016년에는 UN-세계은행 파트너십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8년 공동선언의 실행 결과를 검토하고 분쟁 이후 회복과 복구 과정에 발을 들인 국가들에 대한 지원 결과에 대한 2008-2015 8년간의 협력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업¹⁸⁾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루지야(2008), 레바논(2013), 리비아(2011), 미얀마(2013), 파키스탄(2010), 우크라이나(2014-2015), 예멘 공화국(2012) 및 에볼라 복구 평가(2014-2015) 지원 사례를 평가했다. 그 결과 PCNA는 공동의 다자 평가와 위기 및 위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접근방식으로 간주되나, PCNA가 시작된 이후의 제도적, 운영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기술적 접근과 인식이 상당하며 관리와 조정의 어려움이 확인되었고, 기관간의 제도적 구축 노력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해 관계자들 간 서로 다른 동인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CNA는 이후 Recovery and Peacebuilding Assessments(RPBA)로 발전되었다. RPBA는 분쟁 또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국가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조정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가들에게 분쟁과 위기의 근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가 시간에 따라 복구와 평화구축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표준화되고 국제적으로 허가된 접근법을 제공한다. RPBA는 욕구 평가와 국가 우선순위 결정 및, 욕구 해결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는 성과관리를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는 평가를 위한 접근법과 방법론, 분쟁 동인에 대한 분석, 분쟁 영향에 대한 평가, 복구 우선순위 지정, 정치적 대화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포괄적 프로세스 제공 및 추진 방법의 구현과 자금조달 전략에 합의하는 범위 지정 등이 포함된다. 종종 복구와 평화구축 노력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약속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분쟁이 특히 장기화될 경우 복구 시행에 광범위한 위기와 우려가 발생하는데, 욕구 평가 및 복구계획의 표준화된 과정이 없으면 복구 이니셔티브들 간 혼란을 야기하고 상충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복구를 위한 개별적 개입들이 서로의 지원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이에 영향 받는 집단을 심각하게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복구의 원칙, 우선순위와 계획에 대한 합의를 통해 다양한 개입의 조화와 효과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평가와

18) Review of Experiences with Post-Conflict Needs Assessments

우선순위 결정 과정은 국제 파트너와 국가 당국이 이행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조정, 자금을 조달하는 우선순위 조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017년 세계은행 그룹과 UN, 유럽연합은 PCNA에서 RPBA에 이르기까지 1999-2017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복구 및 평화구축에 대한 접근방식과 자금조달 방식을 재검토한다.¹⁹⁾ 세 기관의 협력이 분쟁에 취약한 나라 및 환경에서 외부의 개입과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염두한다.

○ 2015 - 현재, SDGs 시대 평화구축 전략의 변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논의와 맞물려 세계은행 그룹²⁰⁾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취약성 및 분쟁과 갈등(Fragility, Conflict, Violence, 이하 FCV)의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분쟁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조정과 회복,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에 계속 관여하며 인도주의-개발-평화협력국과의 보다 강력한 협력이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FCV 해결을 위해 참여와 자원 제공을 크게 확장한다. 특히 분쟁 후 재건과 군축, 해체와 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과 연계된 분쟁 및 취약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2011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분쟁, 안보, 개발)를 통해 안보와 정의, 개발 간의 긴밀한 연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당성의 중요성, 민간 안보와 정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통해 폭력 감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CV에 대한 세계은행 그룹의 진취적인 비전은 그룹이 2년마다 개최하는 취약성 포럼(Fragility Forum)에서도 나타난다. 동 포럼은 2년마다 열리며 FCV에 관한 전 세계 관련

19) 2017년 기준,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실시된 PCNA는 이라크(2003), 스리랑카(2003), 아이티(2004), 라이베리아(2004), 수단/다푸르(2006년), 소말리아(2006-07년), 그루지야(2008년), 파키스탄(2009-10년), 키르기스 공화국(2010년), 예멘 공화국(2012년)에서 실시되었다. RPBA로 인정된 평가는 나이지리아(2015년), 우크라이나(2015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2016년), 카메룬(2017년), 총 15회이다.

20)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며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흔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최근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합쳐서 세계은행(World Bank)라고 지칭하고 있다.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모여 취약성, 분쟁,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개발의제 추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2018년 포럼은 ‘평화와 안정의 위기관리(Managing Risks for Peace and Stability)’ 라는 주제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외교, 안보 영역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용 당시 세계은행 총재는 동 포럼의 개최사를 통해 현재 극심해지고 있는 취약성, 갈등, 폭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첫째, 불안정성의 원인을 해결하여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방지하고, 둘째, 취약성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국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안보와 인도주의, 평화 및 개발 공동체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의 IDA18 Replenishment에서 7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공표하며 FCV에 대응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취약성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 개발의 최우선 과제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 그룹은 FCV 해결을 위한 핵심 자원을 140억 달러 이상으로 두 배로 늘리고 FCV 관련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추진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 사회 지원 20억 달러, 민간 자본 동원과 민간 개발 규모 축진을 위한 25억 달러, 취약성에 빠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분쟁 방지,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심각한 분쟁 상황에서의 개입, 분쟁에서 평화 프로세스로의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글상자 3-2] IDA 18 Replenishment 주요 내용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동원 방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제시, G20국가들과 세계은행 그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행요건들의 혁신을 강조.
- IDA18 Replenishment는 IDA의 56년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정책 및 자금 조달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 2016년 12월에 확정되어 2017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프로젝트 자금 조달.
- 3년마다 공여자들은 IDA 기금의 보전과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위해 만남. 1년 동안 4개의 공식회의로 구성. 공여국 정부 외에도 차입국 대표들이 참여하여 IDA 정책 및 자금조달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가 요구사항을 제시.

이러한 진보적 변화를 기반으로 세계은행 그룹은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분쟁과 갈등, 폭력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FCV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해 UN과 공동으로 발간한 “평화를 위한 길(Pathway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이다. 동 보고서는 개발 과정이 안보, 외교 및 기타 접근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갈등이 폭력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은 FCV의 동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s and violence 2020-2025-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 그룹의 FCV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전략이다. 기초 컨셉노트를 기반으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세계은행 그룹 전 지역을 대상으로 30여 개국에서 정부, 시민사회, 개발기구,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11월 중 최종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회의를 실시했다.²¹⁾

동 전략은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FCV 영향 국가의 FCV 동인과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여 세계은행그룹, IFC, MIGA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기관별 자원과 전문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특히 FCV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개발 확대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함을 직시하며, FCV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역할을 조정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금융 인프라 개발,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진, 규제와 투자환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개발이 부패와 불법거래, 폭력 집단의 자금 조달에 연계되어 더 많은 갈등과 취약성을 창출하지 않도록 “Do No Harm”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글상자 3-3] 세계은행그룹 FCV 전략 컨셉노트 주요 내용

- 개발협력 대응 취약/분쟁/폭력 상황 중점 관리 활동
 - 국가 취약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에서 분쟁 및 폭력 사태 발생 예방 활동
 - 현재 분쟁 진행국/지역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 활동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취약성 높은 국가의 취약성 완화 대응 활동
 - 취약/분쟁/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주의 사태로 피해 입는 취약계층 집중 대응

21) 2019.5.29. 서울, 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Consultation Meeting

- 취약/분쟁/폭력 상황 대응 및 예방 주요 정책 과제
 - 거버넌스 제도 강화 및 거시 안정성 증진
 - 포용성장 및 사회통합 촉진 매개체로서의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
 - 생계 증진 및 시장경제 개선을 위한 기업을 비롯한 민간분야 개발 활성화
 -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및 형평성/투명성에 기반한 천연자원 관리
 - 젠더와 청년층에 중점 둔 포용성장/사회통합 촉진
 - 분쟁/취약국에서 개발은행 사업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선 및 취약성 관련 데이터 질적 향상
- FCV 전략 정책 제언
 - 취약/분쟁국 현지 활동을 촉진하는 인사정책
 - 취약/분쟁국에서 UN, 국별 원조 공여기관, 시민사회, 지역개발금융기구, 기업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확장
 - 취약/분쟁국 사업시 세계은행 사업 수행 과정의 효율화 증진
 - 취약성의 근본원인 해결을 중장단기적으로 도모하는 프로그램 실행

상기 전략과 함께 최근 세계은행이 평화구축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추진한 또 다른 방안은 2017년 UN과 함께 체결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New Framework to Build Resilience and Sustain Peace in Conflict Areas 이다. 빈곤 감축, 공동의 번영 촉진, 식량 안보 강화, 위기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의 평화유지 활동 등을 통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복원력 구축에 초점을 맞춘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2018년에 발간한 Pathways for Peace의 핵심 메시지를 일찍이 담고 있는데, 즉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 갈등과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보다 갈등 예방과 감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동 프레임워크에 따라 세계은행과 UN은 위기의 다차원적 위험 감소, 폭력적 충돌 방지,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동 분석과 도구 개발, 강제 이주를 포함한 장기화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는 2008년 공동 서명한 프레임워크(Joint Declaration on Post-Crisis Assessments and Recovery Planning) 이후 약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세계은행과 UN이 서로 다른 비교우위와 의무를 지님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원칙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을 통해 재정적 자원을 조정하고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양 기관의 공동 수행 협력 분야는 ▲위기의 다차원적 위협의 식별과 감소 및 두 기관의 권한 내에서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폭력적 충돌 방지 ▲강제 이주에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조정, 공동 분석 및 평가 ▲지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공동 분석 및 도구 개발 ▲두 기관이 사용하는 운영 정책, 프레임워크 및 툴의 협력 촉진 방안 연구 및 효율성과 상호보완성 증진 방안 연구를 통한 영향 확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전략은 초기 분쟁 후 국가의 경제 재건을 중심으로 대출 활동 위주의 소극적 개입에서 점차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FCV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으로 확장하기에 이른다. UN이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UN의 평화구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토대로 도출한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개념을 중심으로, SDG16을 통해 비단 분쟁 이후의 상황, 즉 분쟁 후 재건과 화해에 머물지 않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고자 한다. PCNA, RBPA를 통해 지원한 경험을 재검토하는 과정과 UN과의 공동연구 실시로 새로운 전략 수립의 근거를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다루고자 노력해왔다.

2-2.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 주요사업 소개

1944년 창설된 이래 세계은행의 분쟁 후 재건 역할은 경제회복 촉진, 사회 부문의 개발 수요 확인, 제도적 역량 구축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자본 회복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옮겨갔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 역시 세계은행의 주요한 사업이 되었으며 빈곤의 심화와 함께 증가한 폭력과 충돌에 대응하고 예방 및 재발을 위한 활동까지 개입의 영역이 다층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관련 사업들의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은 앞서 살펴보았던 개발협력 및 분쟁에 관한 운영정책(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nflict)과 함께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중간전략노트(Interim Strategy Notes),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등을 분쟁 영향 국가들에 대한 세계은행의 전략적 참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분쟁 방지 및 재건 부서(The Conflict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Unit)는 분쟁 대상 국가의 정책과 프로젝트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갈등

분석을 포함해 갈등 민감도를 세계은행 활동에 통합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분쟁에서 벗어나는 전환 초기 단계에 정부 및 협력 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획기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복구 및 재건 우선순위 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기금이 분쟁 후 기금(Post-Conflict Fund)이다. 여기에서는 1997년에 만들어진 PCF와, 이후 세계은행의 정책적 전략적 변화를 반영해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형성 및 평화구축 기금(State and Peacebuilding Fund, SPF)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주요 사업과 특성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가. Post-Conflict Fund(PCF) 사업

PCF는 LICUS TF(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Trust Fund)와 함께 분쟁 영향 국가와 취약국의 경제·사회 성장,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 인간안보 촉진 지원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탁기금이다. 1997년 설립 이후 2007년까지 세계은행 개발 보조금(Development Grant Facility, DGF)에게 7,650만 달러, 다른 공여자에게 87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총 9,46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그 중 7,460만 달러를 지출했다. LICUS 신탁기금은 2004년에 설립되어 세계은행 자금 8,000만 달러, 공여기관에서 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5,920만 달러 상당의 66개 보조금을 승인, 총 2,960만 달러를 지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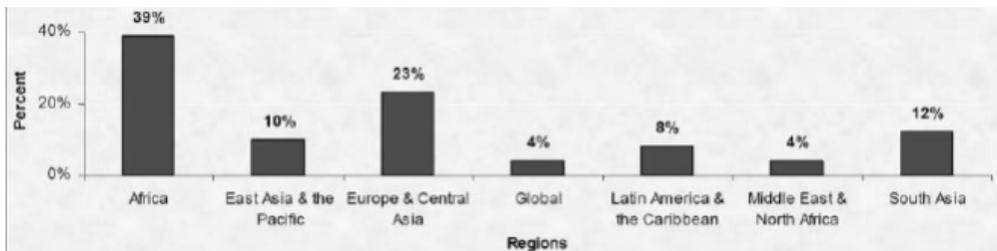
[표 3-12] 연도별 PCF 보조금 승인 현황

(단위 : USD)

연도	1998-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보조금	35,173,165	12,741,150	13,449,945	5,226,400	5,955,212	11,662,789	10,056,563	94,265,224
보조금 건수	81	26	22	16	12	14	17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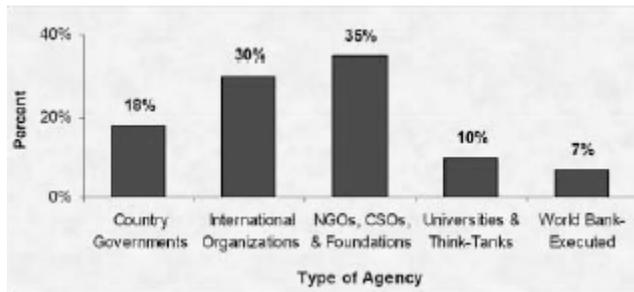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PCF 2007 Annual Report(2007)

[도표 3-2] PCF 보조금 지역별 승인 현황(1998-2007)



출처: 세계은행, PCF 2007 Annual Report(2007)

[도표 3-3] PCF 보조금 실행 기관(1998-2007)



출처: 세계은행, PCF 2007 Annual Report(2007)

[도표 3-4] PCF 공여국 현황(1998-2007)

Donor	Beneficiary	Amount Of Contribution, US\$								GRAND TOTAL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Belgium	Great Lakes Region		1,117,531							1,117,53
Brazil	Haiti						425,000	300,000		725,00
Netherlands	Kosovo		2,000,000							2,000,00
Norway	Multiple countries							732,460	1,032,953	1,765,41
Switzerland	Georgia		207,942							207,94
Switzerland	Global				266,667	333,333	400,000			1,000,00
Switzerland	Kosovo	603,428	647,935							1,251,36
UNDP	Georgia		200,000	300,000						500,00
UNHCR	Georgia		150,000							150,00
		603,428	4,323,408	300,000	266,667	333,333	825,000	1,032,460	1,032,953	8,717,24

출처: 세계은행, PCF 2007 Annual Report(2007)

설립 이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PCF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39%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이어 유럽·중아시아 23%, 남아시아 12%,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0%를 차지했다. 집행기관으로는 시민사회가 35%로 가장 많은 집행을 맡았으며, 국제기구가 30%, 개발도상국 정부가 18%를 차지했다.

PCF는 특정 국가 및 지역 할당 기준이 없어 전반적으로 특수한 위기 상황이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장점으로 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어떤 지역 및 국가는 다소 지원대상으로 간과되었고, 일부 몇 개 국가들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코소보 등이 많은 지원금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기금 지원 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자금조달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PCF 지원 비교우위 분야는 순서대로 아래 표와 같다. PCF의 목표와 전략은 세계은행의 사회개발 부문 전략인 “Social Development in World Bank Operations: Results and

Way Forward”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전략은 분쟁 후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혁신적 작업을 사회 부문 개발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PCF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응집력을 증진시키고자 분쟁 중인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표 3-13] PCF 지원 주요 분야 및 비교우위²²⁾

순위	PCF 지원 우선순위 분야
1	갈등분석 및 갈등의 잠재적 원인 최소화를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2	분쟁 후 국내 실향민, 난민 등 이주 인구의 재정착 및 재통합 지원
3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개발 지원
4	지리제거, 참전병의 동원해제 및 사회재통합 지원
5	경제 분석 및 복구 방안 마련 지원
6	갈등 분석 및 분쟁 후 재건에 대한 세계은행의 전문성 공유, 정책 연구 및 포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구축 지원

PCF는 UN 기관에서 정부, 학계, NGO에 이르는 다양한 실행 파트너 기관에 25,000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비교적 적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1년 이상 지속되는 프로젝트는 총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데, 1998년에서 2005년까지 지출된 50개 보조금의 규모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10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승인되었으며, 22개 프로젝트는 100만 달러 이상, 3분의 2가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지급되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100만 달러 미만 규모로 수혜국의 재건 요구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은 크게 1. 상황관찰요약(Watching Briefs), 2. 과도기지원전략(TSS), 3. 국별지원전략(CAS), 4. 글로벌/지역(Global-Regional) 4개의 섹션 중 하나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1998-2005년 사이 승인된 보조금의 절반 이상(56.92%)이 과도기지원전략에 할당되었으며 상황 관찰이 20.2%, 국가지원전략이 18.5%로 뒤를 이었다. 단 4.4%가 글로벌/지역 보조금을 위해 할당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국가 수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22) Caroline, Bahnson & Jozefina, Cutura, 2004, The Post Conflict FUNd, Addressing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World Bank's Approach to Global Programs, The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World Bank.

[표 3-14] PCF 대표 사업사례

국가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콜롬비아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를 통한 갈등 환경 내 평화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영향구역 내 평화교육 강화 목표 • 평화교육 분야 99개 지역 단체 대상 개인간 /지역사회 내 갈등 관리 역량 증진 훈련 • 18개 단체 재정 지원 • 청년들의 물리적 폭력 및 공격성 감소 성과 • 이주아동들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증가 • 세대간 대화 및 소통 향상, 평화적 갈등 해결 증진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내 갈등 완화 	2005.7 ~ 2007.6	\$250,000
필리핀	민다나오 재건 및 개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다나오섬 분쟁 지역 내 평화 증진, 특정 분쟁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복구 지원 • 지역사회 주도 개발사업, 6개 지역사회 기반 시설 구축, 마을회관 건설, 코코넛 건조기 설치 등 •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구축 및 경제수입 증진 • 지역 개발단체 역량 강화 훈련 	2006.7 ~ 2008.6	\$1,525,000
수단	누바 산간지대 지역사회 자력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P 주관 분쟁 전환 프로그램 '갈등 전환을 위한 누바 산간지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내 마이크로프로젝트 자금 지원 • Community Empowerment Fund 설립 지원 • 기금 관리 및 운용 권한을 지역사회로 이관 	2004.7 ~ 2007.6	\$1,505,160
이라크	분쟁 후 사회적 영향 평가; 이라크 사회개발자식네트워킹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분쟁 상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실시를 위한 이라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07.7 ~ 2008.6	\$264,140
브룬디	지뢰제거, 참전병들의 동원해제 및 사회 재통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전 참전병들의 동원해제 및 사회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2000.7 ~ 2000.6	\$400,000

PCF 운영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CF에 따르면, PCF는 공여기관이나 UN 기구 모두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실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협력해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NHCR의 경우 OECD의 평가 인터뷰에서 PCF 프로그램이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Caroline, Bahnsen & Jozefina, Cutura, 2004) 다시 말해, PCF는 UN 기구나 양자간 공여 기관 어느 누구도 해당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수준에서 파트너로 참여시키려

하지 않았다. UNDP, UNICEF, UNHCR과 같은 UN 기구의 거버넌스 파트너십 참여 시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종합적으로, PCF는 1998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분쟁 후 국가 및 취약국들의 재건을 위한 사회 부문 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며,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분쟁 국가와 지역의 특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체로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었고, 지원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의 규모로 해당국이 겪고 있는 분쟁 후 영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금 운용시 거버넌스 차원의 공여 기관과 실행 기관의 협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했다면 UN 및 다양한 기관들이 보다 조율된 프로그램 실행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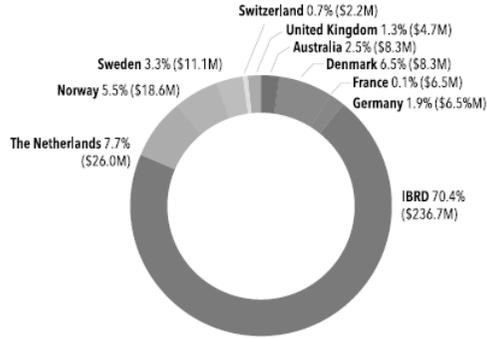
나. State and Peacebuilding Fund(SPF) 사업

2008년에 설립된 국가형성 및 평화구축 기금(State and Peacebuilding FUNd)은 FCV의 영향을 받는 국가 및 평화구축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그룹의 최대 규모의 글로벌 다자 기부 신탁기금이다. FCV에 영향을 받는 국가 거버넌스 및 제도적 성과 향상으로 대내외적인 긴장도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국가형성(statebuilding) 및 평화, 안정, 지속력을 신장하고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향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목표로 한다.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연한 성격을 띠고 있어 FCV에 직면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지정학적, 경제적 수준, 연체 상태에 상관없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CV를 다루기 위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경우 매우 신속하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기술협력, 자문 서비스도 함께 지원 가능하며, 여기에는 혁신 및 파일럿 운영, 데이터 첨단 분석과 증거 수집, 단일 국가 다자 신탁기금(MDTF)에 대한 씨앗기금이 포함된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총 3억 4,210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2008~2018년 사이 총 46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보조금과 8개의 단일 국가에 지원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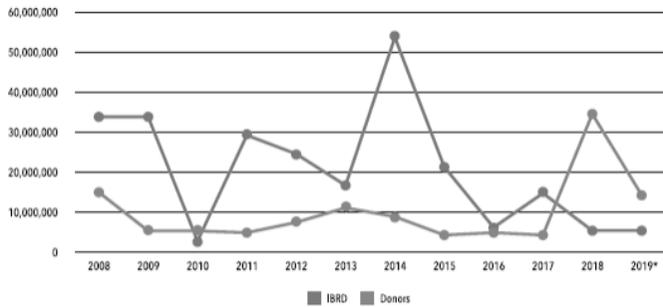
23) SPF Annual Report 2018

[도표 3-5] SPF 공여국 지원 현황(2009-2018)



출처: 세계은행, SPF Annual Report(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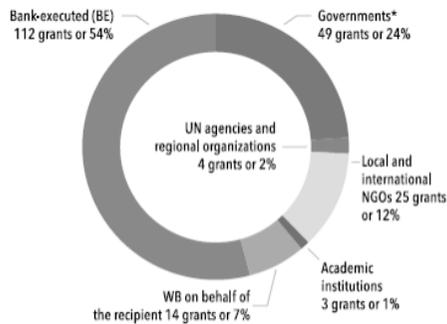
[도표 3-6] SPF 공여 흐름: IBRD vs 양자 공여국(2008-2019)



*Data for 2019 is based on donor pledges as of December 31, 2018 and approved IBRD funding for 2019.

출처: 세계은행, SPF Annual Report(2018)

[도표 3-7] SPF 보조금 수혜기관 현황(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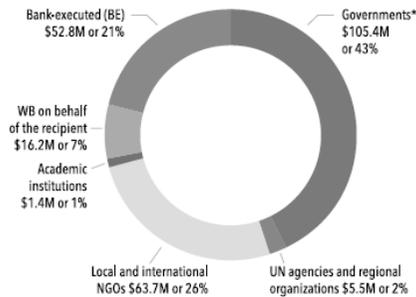


*Including four grants totaling US\$8.5 million where UN Agencies were contracted by recipient governments for implementation.

출처: 세계은행, SPF Annual Report(2018)

2008년 IBRD에서 1억 달러를 약속받아 설립되어 현재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9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IBRD는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지만 2015년 이후 지원 규모가 감소했으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양자 차원의 공여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여러 FCV 펀드가 SDP로 통합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19년까지 이러한 자금은 역사적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3-8] SPF 보조금 수혜기관별 지원 규모(2009-2018)



*Including four grants totaling US\$8.5 million where UN Agencies were contracted by recipient governments for implementation.

출처: 세계은행, SPF Annual Report(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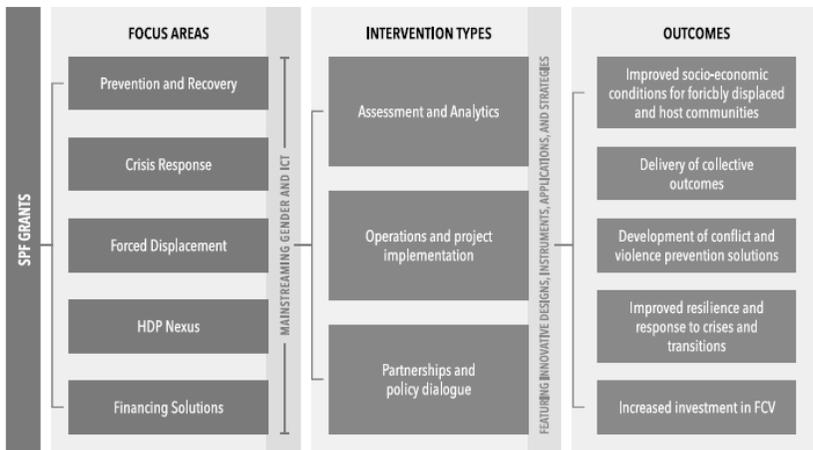
SPF 보조금은 다양한 지역 및 국가적 맥락에서 FCV 과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왔다. 50% 이상이 아프리카에 분배되었으며, 다음으로 17%가 MENA 지역, 10%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집행되었다. 보조금의 대다수는 상당한 난민 유입을 경험하는 나라를 지원한다. 기금은 리비아의 평화구축 평가 지원, 이라크 재건 노력, 지부티의 기술협력 및 난민 욕구 평가 등 4가지 주제로 나뉜다.

[표 3-15] SPF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집중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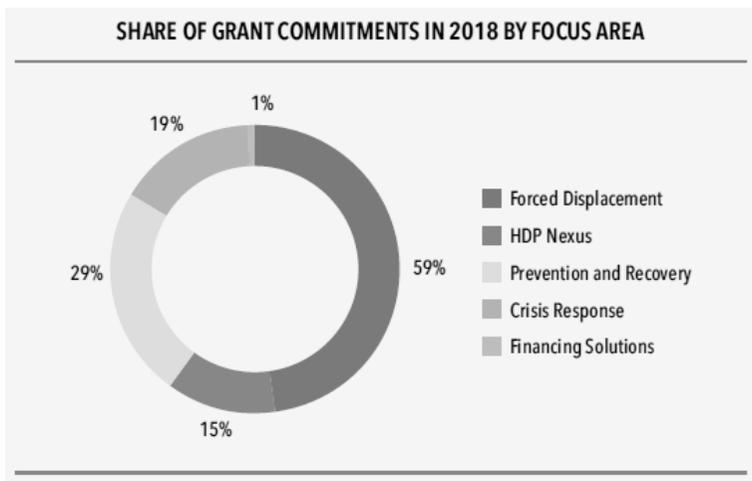
FCV에 대한 위기기반접근방식 (risk-based approach) 실행	• 위기 및 회복력(복원력) 평가 및 기타 실행 가능한 분석 기반 파일럿 금융 정보 제공을 통한 개발 솔루션 제공
위기에 대한 기관 및 커뮤니티의 회복력 창출	• 데이터 공유, 공동 위기 대응, 개발 중심 안정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 행위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개발, 신속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HDP 대응 지원
강제 이주에 대한 개발 대응 촉진	• 난민 및 국내 이주민, 호스트 커뮤니티 및 귀환자의 사회경제적 기회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
HDP Nexus 실행 창출	• RPBA, 안보 및 정의 분야 공공 지출 검토와 같은 새로운 도구 개발 및 실행, FCV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공동 계획과 실행 촉진
FCV에 대한 자금 조달 개선	• 저소득 및 중소득 FCV 국가의 차별화된 요구에 맞는 혁신적 금융상품 설계, 기존 FC국가와는 다른 상황에 맞는 특별 금융 제공

세계은행은 2017년 SPF를 통합하여 세계은행의 FCV 우선 순위 및 안전에 부합하는 5개 중점 분야에 따라 펀드 구조를 재설계했다. 아래에 제시된 프로그램 논리에 따라 SPF 보조금은 평화구축과 국가건설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5개 중점 영역- 예방과 회복, 위기 대응, 강제 이주, HDP 넥서스, 파이낸싱 솔루션-을 설정하고 있다. 개입의 형태는 평가와 분석, 운영과 프로젝트 실행, 파트너십과 정책 대화로 구성되며 5개 중점 영역은 젠더 주류화와 FCV 상황에서의 전문 지식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 증대를 주류화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도표 3-9] SPF 프로그램 논리



[도표 3-10] 2018년 SPF 집중 지원 분야별 보조금 약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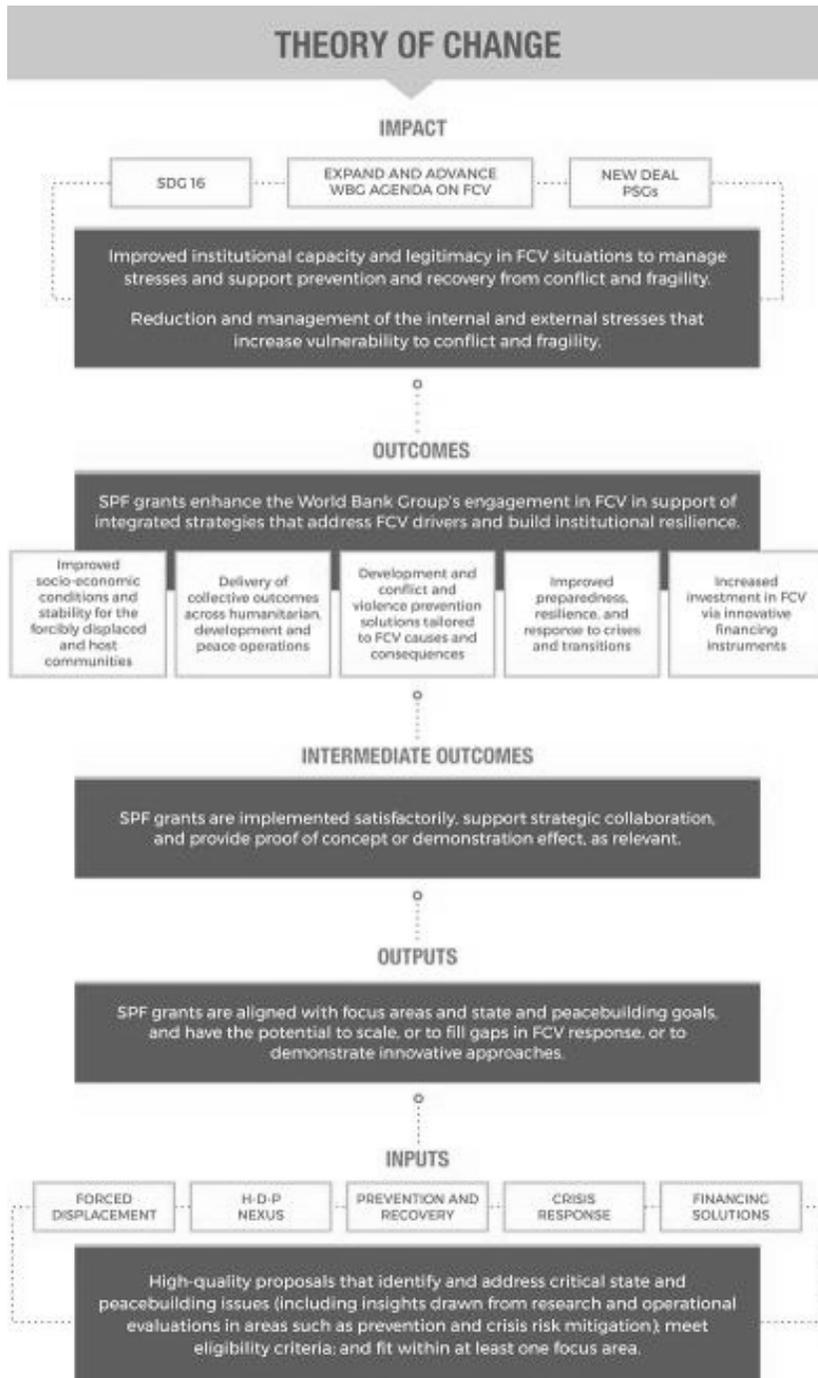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SPF Annual Report(2018)

[표 3-16] SPF 대표 사업 사례

국가	프로젝트명	내용	기간	예산
필리핀	정의와 평화 지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시에 기술협력 지원, 적시 자문 서비스 제공, 평화 및 개발 의제 지원 위해 고안된 글로벌 지식 생산 • 평화구축 기획 및 갈등민감성 개발 지원, 위기 및 회복력 평가 개발, 평화 렌즈의 설계와 실행 • 참전병의 사회 재통합 및 민간인 생활로의 전환을 돕는 제도 구축 	2017.8~	\$1,250,000
우크라이나	분쟁 대응 및 복구 파일럿 및 역량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영향 완화, 안정성 및 복구 지원 • 임시점령지 및 국내 이주민 담당 부처 역량 증진을 통한 평화구축과 복구 향상 • 부처 전략 기획, 코디네이션 임무 역량 강화 지원 	2016.5~	\$3,200,000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강제이주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난민대응프레임워크(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CRRF) 시범국인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정부의 난민 자립 및 기관 지원 향상, 빈곤 감축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난민 대응에 대한 기술적 대화 지원 • 강제 이주에 대한 인도주의와 개발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강화 • CRRF 프로세스 운영 지원 • 난민 및 호스트 국가의 자원의 영향력 극대화 위한 도전과제 완화 	2018.3~	\$2,400,000
말리	청년 취업을 위한 UN-세계은행 공동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리 분쟁지역 안정화 • 청년 일자리 증진 • 말리 중심부 청년들의 경제 상황과 동기에 대한 평가 조사, 포커스 그룹 토론 • 경제적 성과와 안정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효과 보안을 위한 수혜자 정신적 사회적 지원 커리큘럼 개발 • 청년 고용 활동 영향 평가 	2018.6~	\$1,000,000
라이베리아	에볼라 후 마이크로 중소기업 및 농촌금융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볼라 위기 영향 완화를 위한 마이크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마이크로 중소기업에 금융 제공, 국내 민간 금융 기관의 수익성 기반 용자 능력 강화 프레임워크 개발 	2016.8~	\$4,800,000

[도표 3-11] SPF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출처: 세계은행 홈페이지

2-3. 평화구축 다자성 양자 사업에서의 도전과제

UN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 역시 다자기구로서 수원국 및 기관, 공여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사업 준비 과정에 있어 드는 많은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영향 국가의 복합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 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거버넌스 차원의 소극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SPF는 PCF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계은행그룹 내 여러 신탁기금을 2017년에 통합하여 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적용하도록 했다.

SPF는 세계은행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신탁기부 기금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유럽 중심의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UN의 평화구축기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기금 조성의 목표치를 늘리는 데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세계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SPF에는 세계은행에 의해 집행되는 보조금과 수혜자에 의해 집행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에는 정부, UN기관 및 지역기구, 지역 및 국제 NGO, 학술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포함된다. 상당한 수준의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지역 기관의 역량에 심각한 제약이 있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수혜자를 대신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세계은행에 의해 집행된 보조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혜자에 의해 집행되는 보조금 수는 감소했다. IDA18에 따라 강제이주 집중 지역에 대한 지원 강조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앞서 언급한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큰 평화구축사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다. 수원국 정부를 비롯해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의 위기관리 역량을 갖추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4. 시사점 및 협력가능방안

세계은행은 SDG16과 평화구축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분쟁 및 취약성, 폭력을 중점적으로 분쟁취약국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저소득층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30년에 분쟁과 폭력 사태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환경에 살게 될 것이며, 강제이주 및 폭력 상황의 증가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면 개발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과 지역이 겪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회 박탈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은 세계은행이 분쟁,

취약 및 폭력 상황을 빈곤퇴치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게 이끌었다. 2017년 SPF 통합 이후 설정한 5개 중점 영역-예방과 회복, 위기대응, 강제이주, HDP 넥서스, 파이낸싱 솔루션 및 현재 수립 중인 취약성, 분쟁, 폭력 대응 전략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활동의 핵심을 분쟁, 취약,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삼았다. UN과 공동으로 개발한 「Pathways for Peace」 연구 보고서 또한 최근 UN에서 주도하고 있는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의제를 반영하여 평화구축을 통해 전 지구적 빈곤퇴치와 번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세계은행의 역할을 공고히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Pathways for Peace」 보고서는 향후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활동 정책 방향 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고서는 개발 프로세스와 분쟁 예방 노력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UN과 세계은행의 공동 분석 연구로써, UN 평화구축과 평화유지의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분쟁의 근본 원인과 고충의 역할을 검토한다. 배제와 불평등을 강력한 잠재적 갈등 동인으로 인식하고, 안보와 외교 사이의 더 큰 교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와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분쟁 예방에 이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개발원조와 안보적 노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평화를 유지하거나 안정을 가져오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기관리보다는 예방 조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원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세계은행은 현재 「Pathways for Peace」의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 시범 국가를 선정해 권고안이 실제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SPF 기금으로 니제르, 기니, 타지키스탄, 네팔에서 12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국가-시민 간의 협력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동시에 분쟁 예방과 합의 형성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참여 촉진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연구에서 정부와 함께 위험 요소를 더 잘 파악하고 개발 전략을 통해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주로 잠재적 경제적 이득에 의해 유도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잠재적 충동을 피하기 위한 예방적 인센티브를 가진 영역을 투자하면서 예방 조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세계은행은 평화의 지속화 의제를 주목하며 「Pathways for Peace」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분쟁 후 복구와 재건, 회복에서 점차 예방적 측면에 최적화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파트너 기관들 간의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KOICA는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전략의 변천과 변화 요인, 중점 지원 분야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KOICA의 SDG16 및 평화구축 관련 전략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IV. KOICA의 평화 ODA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

1. 국내 주요행위자 분석

본 연구의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와 국내 국제개발협력 및 평화관련 단체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진의 인식을 통해서, 평화이니셔티브 강화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행위자를 특성을 SWOT-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협의체는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나 평화분야 시민단체들의 연례 평화활동가대회와 같은 다수 단체와 개인의 협의 모임 또는 상설조직을 의미한다. 현장 사업 수행단체는 해외 개발 현장에서 사업하는 개발협력 단체나 평화-안보-갈등 이슈의 현장에서 조사, 조직, 교육, 지원 등 대민 사업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애드보커시는 발전대안피다(전 ODA Watch)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같이 정책 감시, 이슈 제기, 캠페인, 정책 압력, 여론화,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단 상당수 단체는 중첩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는 분석을 위해 협의, 사업, 애드보커시, 전문성 제공을 주요 실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협의체 행위자들은 교육/훈련, 광범위한 협의, 의제화, 정책형성, 재정지원, 민관협력 등을 수행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평화의제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접근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평화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면 평화의제와의 통합성, 새 의제 개발, 협력 범위 확대, 새로운 인력 양성 등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새로운 부담 때문에 평화의제 기피, 평화 이슈 단순화, 빈곤문제의 정치화라는 오해 또는 거부, 협력 피곤증 등의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현장 사업 수행단체들은 구체적 현장 경험과 인력, 네트워크, 민관협력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의제 분할, 실천 분열, 자기 사업 중심성, 캠페인 조직화 등에서 통합 실행력의 취약, 국제적 협력 추진상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이니셔티브 참여 시 새로운 실천문화, 새로운 동기, 새로운 인력, 국제성 강화, 국제협력 재의미화, 현지 국가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대화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개발-평화 사이에서의

문화적 괴리, 인력 부족, 조직 이기주의, 훈련 부족, 통합의제 이해부족, 재정 분산 등의 피곤증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애드보커시 행위자들은 개발-평화 의제 공론화, 일국적 세계적 의제설정 경험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업 현지에서의 공론화, 다변적 협력, 이슈 제기 등 분야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이니셔티브에 참여시 협력 담론의 확대, 협력에 대한 호소력 증진, 현재 지구촌의 위기에 대한 재진단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초점 분산과 재정 분산 등의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의제 간 통합성 연구, 국제적 네트워킹, 국제적 의제화, 다중 행위자 간 협력 경험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나라별 사회변동론, 사회운동론, 나라별 주요 의제, 종합 전략 개발 분야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화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면 최신 평화론과 연계, 통합적 전문성 증진, 통합 전력 기회 역량 등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전문분야별 분할성 때문에 새로운 의제를 거부할 가능성 등의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활동 분야에서 협의체 행위자들은 협의, 연대, 의제개발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확장된 협의, 재정 충원, 국제협력 의제 설정, 평화구축론 등 분야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발 분야와 협력하게 되면 의제 통합, 신 의제개발, 협력 범위 확대, 협의기능 강화 등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개발 분야에 비슷하게 인력 분산, 의제 분산, 재정 부족, 연계성 거부 등의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활동 분야에서 사업수행 단체는 분석과 의제별 활동, 교육, 훈련, 조직, 대정부 비판 등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개발 의제 이해, 소규모 단체 규모, 자기 사업 중심성, 평화구축론 취약, 재정 취약, 강성 이미지 등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발분야와 협력하게 되면 신 의제 개발, 새로운 청중 형성, 새로운 담론 형성, 새로운 시민 참여 동기, 사회적 대화, 대중적 이미지 형성 등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인력과 훈련, 의제 이해와 협력 및 재정 여건상 스트레스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활동 분야에서 애드보커시 행위자들은 의제별 전문성과 정보 집중, 저항 행동과 캠페인, 국내외 정책 로비와 민간 외교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의제와 실천이라는 협소함, 개도국 일반에서 개별 또는 국제적 경험이 낮고, 강한 이미지와 종합적 전략화가 취약한 약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발분야와 협력하게 되면 SDGs 의제의 힘을 활용하면서 청중과 평화담론의 확대 및 시대적 위기의 재진단과 민관대화 강화 등의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초점 분산과 단기적 가시적 효과가 낮을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활동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정치, 안보, 외교 분야의 의제와 정책 및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 지역적으로 한반도-동북아에 국한되어 있고 평화구축-갈등전환론이 취약하고, 다층적 협력과 전략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발 분야와 협력하게 되면 국제협력 분야에 협업하면서 통합적 전문성과 국제적 개입 능력이 신장 될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초점의 분산 등의 부담으로 개발 의제를 거부할 우려도 있다.

공여기관의 경우, 대표적으로 KOICA를 들 수 있는데 KOICA의 강점은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체계와 양질의 인력, 해외의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 관련, 사업형성과 확장에 대한 KOICA 리더십의 의지가 강하다. 반면, 평화구축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평화분야의 사업을 공공행정으로 한정하는 최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년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다룬 SDG16의 이행현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난 2년간 참여해온 평화 주제의 국제회의와 포럼으로 도출된 담론은 주요한 기회 요소가 된다. 그러나 기존에 탈정치적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 사업을 추진했던 KOICA의 스탠스가 전환됨에 따라 비민주적 거버넌스 성향이 강한 개도국에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한다.

[표 4-1] 평화구축 관련 국내 주요행위자 특징 SWOT 분석 개요

활동분야와 성격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국제 개발 협력	협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 • 광범위한 협의 • 의제화 • 정책형성 • 재정지원 • 민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제 • 동북아 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제 통합 • 의제 개발 • 협력 범위 확대 • 새로운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제 기피 • 단순화 • 정치화 오해/거부 • 협력 피곤증

활동분야와 성격		강점	약점	기회	위험
국제 개발 협력	현장 사업 수행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현장 경험 인력 네트워크 민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 의제, 실천 자 사업 중심 통합 실행력 캠페인 조직화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동기-인력 충원 국제성 강화 국제협력 재의미화 사회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괴리 인력 부족 조직 이기주의 훈련 부족 의제 이해부족 협력 피곤증 재정 분산
	애드 보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론화 세계적 일국적 의 제설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공론화 다변적 협력 이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 담론 확대 호소력 확대 위기 재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점 분산 재정 분산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 통합성 연구 국제 네트워크 의제화 경험 다층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사회변동론 현지 사회운동론 종합 전략화 현지 비판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평화론 연계 통합적 전문성 전략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성 (신 의제 거부)
평화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과 연대 의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별 협의 재정 국제협력 의제 평화구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의제 통합 의제개발 협력범위 확대 협약가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분산 의제 분리 연계성 거부 재정 편향 불만
	현장 사업 수행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과 의제화 캠페인 교육, 훈련 조직화 대정부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의제 의제 통합 소규모 자 사업 중심 평화구축론 영세 재정 총 인력 제약 강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 개발 새로운 청중 새로운 담론 새로운 동기-인력 확대 사회적 대화 대중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부족 훈련 부족 조직 이기주의 의제 이해부족 협력 피곤증 포럼 피곤증 재정 부담
	애드 보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정보 집중 저항 실천 지속성 국제 로비,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중심 낮은 국제성 일부 의제 부각 강한 이미지 종합 전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효과성 청중의 확대 평화담론 확대 위기 재진단 민관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점 분산 단기 효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안보 의제 정책 호소 연구 여론화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중심 동북아 중심 신 평화구축론 갈등전환론 국제-다층 협력론 종합 전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론 연계 통합적 전문성 국제평화협력 개척 전략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성 (신 의제 거부)
공공기관 (KO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체계 양질의 인력 해외정보 수집력 리더십의 의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분야 통합적 지식과 경험 부족 평화사업의 최소주의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HLPF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의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민주적 개도국의 반발 	

2. 평화논의와 정책개념

제1-2장에서는 국내 평화의제와 국제적인 평화논의의 주요 주제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파악된 평화의제와 정책 개념들에는 이행전략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3장에서 UN과 세계은행의 평화구축 전략과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그 안에서 이행 전략적 요소를 취합할 수 있다.

여기에 공여기관으로서 평화구축 이행전략을 보다 분명히 한 모범 사례로써, 해외 공여기관인 독일 BMZ와 영국 DFID의 평화구축 전략문서(BMZ,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Conflict, Fragility and Violence, 2013, DFID & UKAid, Building Peaceful States and Societies: A DFID Practice Paper, 2010.)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 국내외 평화의제 이행전략 관련 정책 키워드

구 분	이행전략 관련 정책 키워드
국내 포럼의 평화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평화-민주-인권-위기대응 넥서스, 한반도 평화-민주 연계 부각, 인권기반 협력, 평화적 공존 지향, 다양성과 포용의 거버넌스, 갈등 예방 우선, 폭력/갈등 파급효과 주시, 기후변화 임팩트 주시, 시민 기본권(평화권, 자결권 등)에 기초한 변화, 군비축소 의제 부각, 평화 의제 입체화, 여성-청년 등 시민역량-교육 중심, 실천과 의제설정 병행, 거시적 정책 조정 필요
최근 국제 평화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조성-유지-구축, 평화구축, 지속적 평화, 빈곤퇴치 전략 변화, 위기대응 전략 변화, 국가형성-사회형성 병행, 개발원조 영향 감소, SDG+, 평화 거버넌스, 인도주의적 군축, 포용적 예방, 갈등 폭력의 구조 변화, 평화문화 형성,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둔 평화구축, 평화권 수립과 증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구축, 시민사회의 역할, 포용적 갈등 분석과 예방, 안보 패러다임 전환, 민관 평화 역량 형성, 평화구축에서 젠더 주류화와 청년 역할, 평화역량 교육 주류화, 지역별 평화의제 설정, 다분야 평화구축 전략
UN 평화구축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 증진(그 국가역량 구축 및 강화),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평화 배당,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예방, 포용적 정치절차, 수요에 민감하고 책무성 있는 제도화, 법치, 정의, 치안 및 안보, 인권, 청소년 권한 강화, 부패척결,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HIV 및 보건
세계은행 SDG16-갈등예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로의 경로, 경로 의존성, 포용적(다자) 비폭력적 대응, 포용적 리스크 공유(광범위 파트너십에 근거한 고충 식별), 리스크 심층 평가(불평등, 국가로부터의 배제, 집단화된 고충 인식), 경로 의존적 시스템 전환, 행위자-제도-구조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전환, 지속적 상호작용, 지속적 경로 변화
세계은행 갈등이후기금(P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분석, 갈등의 잠재적 원인 최소화를 위한 개발, 분쟁 후 재정착, 기본 서비스, 사회 재통합, 경제복구, 정책 연구 포럼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구축

구 분	이행전략 관련 정책 키워드
세계은행국가형성 및 평화구축기금(SPF)	• 위기기반 접근, 회복력 평가, 행위자별 회복력, 위기대응 역량, HDP 넥서스 접근, 강제이주에 대한 개발접근, 인권기반 접근, 안보사법분야 개혁, 공동 계획과 실행, 수요기반 금융 설계
독일 BMZ	• 현지파트너 협력(신중한 선택, 민관의 다양한 다수의 파트너십), 다자기구 협력(주제-지역 특성에 따른 다수의 다자기구 협력), 양자 협력(전략적 협력 국가 선정), 부처 간 협력(부처 간 협의와 부처 간 협력 가이드라인 제정), 독일 시민사회 협력(독일평화개발 실무 그룹 WG 구성)
영국 DFID	• 갈등과 취약성의 원인 및 효과에 대한 대응, 갈등 해결 메커니즘 도입, 포용적 정치적 해결 절차의 도입, 핵심 국가 기능 개발, 사회 수요에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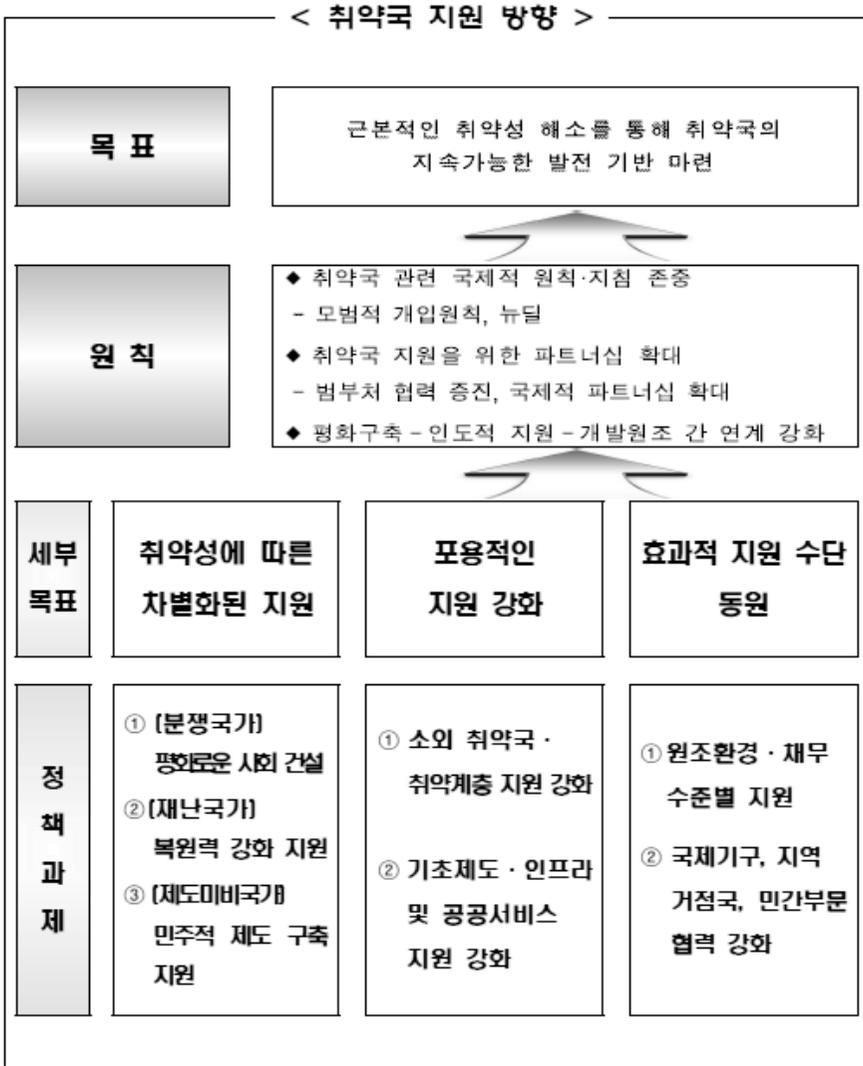
3. 평화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3-1. 부처 간 협력

평화구축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현행 정책의 틀에서 개발협력과 평화분야의 유관정부 부처 간 협력 파트너십을 설계해 볼 수 있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SDG16 및 평화구축 관련 상위 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무상원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포용적 개발 실현을 위해 취약국 및 원조 소외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2015년에는 무상원조 예산 중 취약성 해소 목적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부처 차원에서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했는데 취약국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에 있어 범부처 협력증진을 강조하였다. 동 전략은 근본적인 취약성 해소를 통해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국 관련 국제적 원칙과 지침을 존중하고, 취약국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평화구축과 인도적 지원, 개발원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표 4-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취약국 지원 기본 방향



출처: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9-3호, 취약국 지원 전략, 기획재정부·외교부

이를 근거로 우선 부처 단위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국을 통해 UN평화활동과 평화구축위원회 참여 등 유엔 내 평화 의제를 다루고 있고 개발협력국에서 제반 무상개발원조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화활동과 개발원조 등의 예산심의와 책정, 특히 세계은행의 취약성 및 평화구축 분야 신탁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정책관실을 통해 유엔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공동으로 평화활동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을 포함한 거버넌스 정책의 전문성과 함께 UN경찰의 파견에 관한 정책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평화, 안보의 유기적 연계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주무 부처이다.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구축활동에 있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기관 단위에서 KOICA가 기관 간 조정과 이행 전반을 담당하고 부처별로 국방부 산하 UN평화활동의 작전계획과 개인 및 부대파병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제평화 활동센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과 UN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경찰대학 등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효과적인 평화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2. 다자기구 협력

다자기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현재 KOICA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SDG16과 평화와 관련해서는 UNDP, UNMAS, UNHCR, IOM, WFP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3] KOICA 4P 가치에 따른 국제기구 협력 현황 맵핑

구분	SDGs 연계	주요사업	주요 국제기구명
사람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퇴치 • 기아종식 • 건강과 웰빙 • 양질의 교육 • 성 평등 • 깨끗한 물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사람 중심 개발협력 • 파트너 대상국과 수혜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개발, 성평등 증진, 역량배양 중심의 개발협력 	UNFPA, WHO, UNICEF, WFP, FAO, ILO
평화 Pe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 국가 내, 지역 내 분쟁과 안정을 예방·감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배가시키는 개발협력 	UNDP, UNMAS, UNHCR, IOM
번영 Prospe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 불평등 감소 •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촌의 상생 공동체 • 파트너 대상국과 수혜자들의 소득증진,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의 경제적 복원력을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포용 성장·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개발협력 	UNIDO, UNDP, ITC

구분	SDGs 연계	주요사업	주요 국제기구명
환경 Pl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p>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감소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파트너 대상국과 수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개발협력 	GCF, GGGI, UNISDR

출처: KOICA 국제기구 협력사업 현황,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작성(2019.6.18.)

평화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중점협력국과 더불어 분쟁취약국 및 평화 관련 특정 이슈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다자성 양자 사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평화구축 관련 KOICA 국제기구협력사업

사업분야	사업명	수행 기구	사업비	기간
정치적 거버넌스와 민주화	• 튀니지 민주적 거버넌스 및 공공책임성 강화사업	UNDP	400만 불	'16-'19
	• 남수단 평화구축 강화 및 공동체 통합 지원사업	UNDP	300만 불	'18-'21
	• DR공공 북키부주 여성 및 청소년의 거버넌스 활동참여 지원사업	UNDP	300만 불	'18-'21
	• 아랍국가 공공행정 효율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사업	UNDP	934만 불	'19-'23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외 공동체 복원력 증진 사업	IOM	465만 불	'19-'22
	• 동아프리카 지역 국내 이산민 복원력 증진 사업	IOM	500만 불	'19-'21
법치와 사법정의	• 브룬디-탄자니아 국경 지역 난민 관련 충돌 방지 및 권리 강화 사업(/)	UNDP	269만불	'19-'22
경제재건 및 안정화	• 콜롬비아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권익 증진 사업	WFP	450만 불	'19-'22
	• 스리랑카 5개군 기후변화적응 기반 지역개발 사업	WFP	600만 불	'19-'21
	• 우간다 난민 정착촌 여성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사업	UNDP	700만 불	'19-'22

사업분야	사업명	수행 기구	사업비	기간
시민안전	•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	UNDP	300만 불	'14-'18
	• DR공고 폭발물 및 무기 제거를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	UNMAS	261만 불	'18-'19
기타 (공공서비스 등)	• 인도네시아 통합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사업	UNDP	500만 불	'19-'22
	• 케냐 투르카나주 기후변화대응력 강화를 위한 식수위생개선사업	UNICEF	550만 불	'19-'22
	• 아프리카 난민의 식량 안보 모니터링 시스템(mVAM) 구축사업	WFP	600만 불	'16-'18
범분야	• 콜롬비아 내전 피해 국내 난민 정착지원 및 지속 가능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평화 구축사업	UNHCR	500만 불	'18-'20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외 공동체 복원력 증진 사업	IOM	465만 불	'19-'22
	• 동아프리카 지역 국내 이산민 복원력 증진 사업	IOM	500만 불	'19-'21

출처: www.oda.go.kr 활용, 국제기구협력사업 정보 조회 저자 정리

다자성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 ODA의 중점 협력국뿐만 아니라 SDG-평화구축 집중 협력대상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다자기구의 사업과 KOICA의 평화구축 사업이 일치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장기간 집중 지원 및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선정, 기획(수정기획),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하단에서 설명할 평화구축 워킹그룹과 현재 KOICA 파트너들이 참여적 논의, 평가,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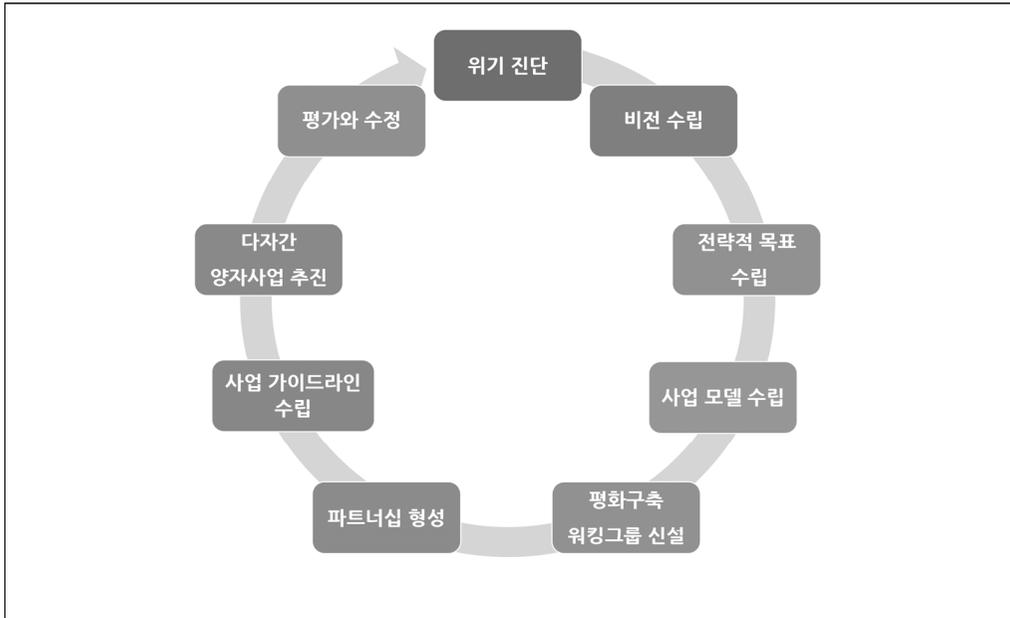
3-3. 현지파트너 협력

면밀한 조사에 기초하여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양측에서 다수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논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로 전략적 협력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나라별로 전문성이 높은 KOICA 담당자가 존재해야 한다.

4. 이행플랫폼 구축방안

이와 같은 검토에 기초하여, SDG-평화구축 전략의 이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순서는 [위기 진단] → [비전 수립] → [전략적 목표 수립] → [사업 모델 수립] → [전략적 행위자(전문그룹) 수립] → [파트너십 형성] →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 [다자간 양자사업 추진] → [평가와 수정]이다.

[도표 4-2] KOICA SDG16 평화구축 전략 이행 플랫폼 단계별 구축 방안



4-1. 위기의 진단과 비전 및 전략적 목표의 수립

포용적이고 다원적이며 전략적인 이행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KOICA가 전략적 목표를 명료하게 세우고 공론화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21세기 전반부에 개발과 평화의 위기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KOICA의 비전이 전문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언어로 수립되어야 한다.

위기 진단에는 전후 질서의 근본적 변화,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가속화되는 분열, 무력갈등 증대, 군비경쟁, 기후변화, 전통적 빈곤퇴치의 한계, 경제 인센티브의 한계 등 SDG 수립의

배경 인식을 포괄하되, SDG 논의의 한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평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패권 경쟁, 군비경쟁(자본의 독점 강화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조절 실패, 국가 조절력의 붕괴, 기후 관리 실패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진단에 대응하는 KOICA의 개혁 의지를 SDG-평화의 비전과 전략으로 담아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안을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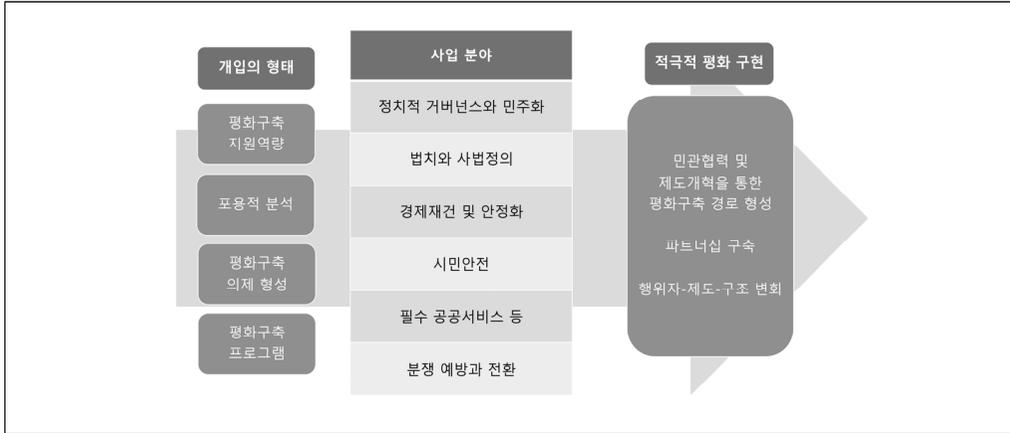
4-2. 사업분야 모델(정책개념)의 설정

본 연구에서 파악된 SDG16-평화 분야의 주요 사업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포용적 정치절차, 수요기반 책무성 있는 제도화, 부패척결,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 도입,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 증진, 국가역량 구축 및 강화, 법치, 사법정의, 인권, 청소년 권한 강화,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평화 배당, 치안 및 인간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보건 등 필수 서비스 증진, 지역 수요기반 평화 의제별 사업, 분쟁 후 회복과 통합, 지역별 의제화와 역량 구축 등이다.

또한 개입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포용적 분석, 리스크 심층 평가(불평등, 국가로 부터의 배제, 집단화된 고충 인식), 정책대화 및 연구, 평화구축의제 형성, 민주적 포용성, 층위별(Local-National-Regional) 정합 의제, 평화구축 공문화, 평화구축 지원 역량 강화, 갈등조정 정치적 대화 등 개입역량,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역량, 교육훈련역량, 평화구축 프로그램 지원, 민관협력과 제도개혁을 통한 평화구축 경로 형성, 행위자-제도-구조 변화 전략화 등이다.

이러한 사업 분야와 개입의 형태는 KOICA 평화 ODA의 최상위 목표인 평화의 지속화(적극적 평화 구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전략화할 수 있다.

[도표 4-3] KOICA 평화구축 사업 모델 수립 전략방안



이를 상위 사업개념과 하위 사업개념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및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표 4-5] KOICA 평화구축 사업분야 제안

사업분야		개입의 형태
정치 거버넌스와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정치절차 • 수요기반 책무성 있는 제도화, 부패척결,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 도입,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 증진 국가역량 구축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분석 • 리스크 심층 평가(불평등, 국가로부터의 배제, 집단화된 고충 인식) • 정책대화 및 연구
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사법정의, 인권, 청소년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구축의제 형성 • 민주적 포용성 • 층위별(Local-National-Regional) • 정합성 • 공론화
경제재건 및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평화 배당 	
시민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 및 인간안보 •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필수 공공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등 필수 서비스 증진 • 기타 평화 의제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구축 지원 역량강화
평화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후 회복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리스크 분석 • 갈등조정, 정치적 대화 등 개입역량 •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역량 • 교육훈련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의제화와 역량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구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과 제도개혁을 통한 평화구축 경로 형성 • 행위자-제도-구조 변화

4-3. 평화구축 워킹그룹 신설

KOICA의 위기진단과 비전 및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의 설정에 따라 평화구축 워킹그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평화구축 워킹그룹은 진단-비전-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이행을 돕기 위한 의지가 강한 장기적 행위자이자 우선적인 파트너십이다.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SWOT 분석을 보면, 기존의 풀에서 개별 사업 파트너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행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변동, 분쟁과 폭력화의 위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집단 동학에 취약성을 보이는 반면, 평화 분야 행위자들은 국제협력 전반에 취약성을 보이고, 또 일정하게 구분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 KOICA의 제도와 네트워크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구축의 전문성과 경험 및 세부적인 정책화가 취약하다. 또 평화 ODA 정책은 새로운 도전과 위험 요소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 ODA 사업 플랫폼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새로운 전략적 행위자를 갖추는 것이 초기의 사업 토대 형성에 중요할 것이다.

평화구축 워킹그룹은 의제의 통합적 전문성을 가지면서 전략의 기획과 자문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룹이어야 한다. 기존의 행위자 풀에는 이러한 역량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질 이 그룹에는 KOICA의 전략기획담당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와 실천가, 평화분야 전문가와 실천가, 민주주의-인권 분야 전문가와 실천가, 그리고 지역/국가 전문가들이 공통의 비전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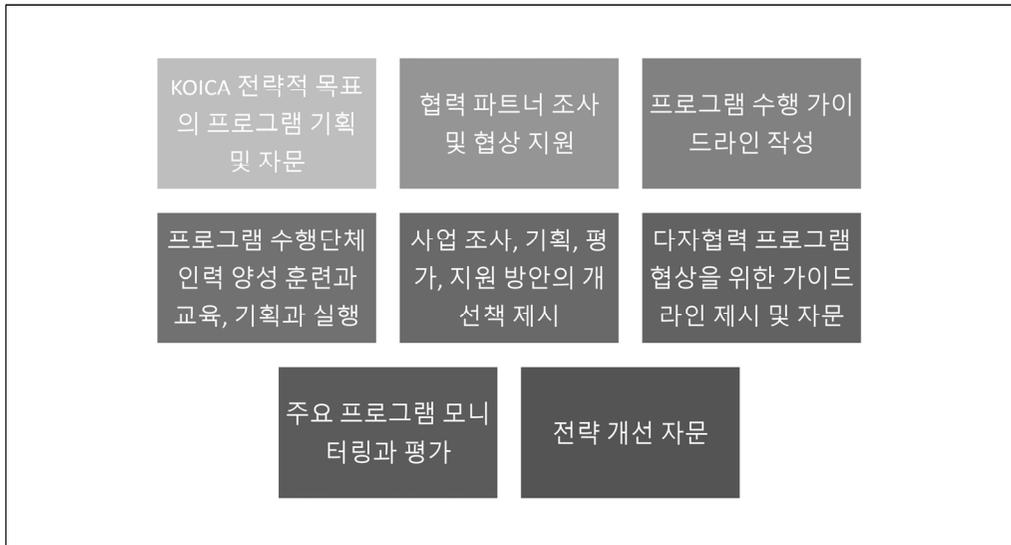
평화구축 워킹그룹은 위 사업모델 표에 적시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단계별, 주제별, 기능별 전문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평화구축 워킹그룹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이 종합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및 집단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도표 4-4] KOICA 평화구축 워킹그룹 전문성 주요 내용

통합의제성	거버넌스 (다양성, 포용성, 민주적, 인권기반)	평화구축역량	폭력과 갈등	평화활동 이해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평화-민주주의-인권-위기 대응 넥서스 ● 한반도 평화-민주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기반 협력 ● 시민 기본권 (평화권, 자결권 등)에 기초한 변화 ● 평화적 공존 ● 국가형성-사회 형성 병행 ● 포용적 예방 ● 평화문화 형성 ● 평화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년 등 시민 역량 강화 ● 의제설정 역량 ● 민간 평화 역량형 ● 교육 훈련 역량 ● 기획 및 전략구축 역량 ● 포용적 갈등 분석과 예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갈등 파급효과 ● 기후변화 임팩트 ● 군비축소의 제 및 인도주의적 군축 ● 갈등예방 및 조정 ● 안보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외교 ● 평화조성 ● 평화유지 ● 분쟁 후 평화구축

이러한 전문성을 갖는 평화구축 워킹그룹의 역할은 KOICA의 ODA 평화사업에 일관성, 전문성, 파급력, 개혁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일차적 파트너로서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표 4-5] KOICA 평화구축 워킹그룹 역할 제안



5. 도전 과제

SDG16 이행 관련 선행연구(SDG16 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연구, 2018)는 주요 해외 사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106-107쪽)

[표 4-6] 주요 공여기관별 SDG16 대응 전략 비교

	원칙과 활동	사업의 예
영국 DF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국 문제해결을 위해 SDG16이 추구하는 법적 제도 구축을 지원 • 연간 원조 총액의 10%를 취약지역/국가의 안정성 확보 및 부패방지를 위해 지원 •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 및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1개국 3,260만 파운드를 투자
스웨덴 Si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거버넌스와 인권 개선은 개발협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 • 2000년대 초반부터 협력국의 공공행정, 민주주의, 인권 개선 분야에 원조 총액의 약 20%를 배정 • 2016년 12월 외국정책 전략문서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SDGs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지원 •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 (V-Dem)
독일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사업은 물론, 인권전략에 대한 주류화를 시행(법적의무화) • 2011년 BMZ는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아프리카를 위한 마셜 플랜’은 신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이며 총 3개의 영역(pillar)으로 지원하며, 이 중 2개 영역이 SDG16에 해당
미국 USA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QDDR(중장기외교개발보고서)에 인권 포함 • 2013년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DRG)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사법부 개혁 프로젝트로서 지역 내 58개 법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목표로 케이스 처리 시간을 최소 60%에서 최대 78%까지 절감
일본 J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인간안보’를 국제개발협력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인권기반접근(RBA)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 • 2015년 ‘개발협력대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간다 북부, 필리핀 인디나오 등에서 평화 정착과 민주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덴마크 DANI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덴마크 외교부는 ‘세계2030: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전략’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동일한 문서에서 SDG16과 SDG17(파트너십)이 기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됨을 명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ish Neighborhood Program’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Danish-Arab Partnership Program’은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집중

이 연구는 선진공여국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동 자료, 110쪽).

- 가. 법적, 정책적 기반 강화: 정치적, 외교적 문제 발생 시 원조기관이 지녀야 할 대응전략 명확화 및 정치적 부담 완화 중요
- 나. PHD를 중심으로 다층위적 협력 강화: 외교부의 경우 정책대화에 참여해 SDG16 논의 확대, KOICA의 경우 PHD 프로그래밍 전략 및 이행에 집중
- 다. 인권 정책프로그램의 단계적 도입: 전략적으로 주류화 차원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도입, 특히 분야별 체크리스트 검토
- 라. 지역 전문성: 해외 국가 동향 분석, 국가별 협력전략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적 PHD 분석 필요
- 마. 지지그룹 및 주축그룹 양성: 관련 정책 수립 TF 구축,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연구, 실천적 국제공동연수 실시

이중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KOICA의 도전과제로 간주될 수 있다(동 자료, 111쪽).

- 가. PHD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법적, 정책적 기반 중요
- 나. 스웨덴과 독일 모두 부처-원조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층위적 협력을 강조
- 다. 스웨덴과 독일이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 독일의 BMZ 및 스웨덴 정부의 인권주류화 도구(Instruments), 분야/섹터 인권위기 예방 도구 참고.
- 라. 스웨덴과 독일이 강조하고 있는 해외국가동향분석 혹은 국가별 협력전략에 인권상황, 평화 및 분쟁 상황,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 필요
- 마.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지지그룹과 이를 국제개발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실천할 주축그룹(Like-Minded Groups)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

이러한 선행 검토와 이로부터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설정할 때, KOICA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아래와 같은 정책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표 4-7] KOICA 평화구축 이행 시 예상 도전과제

정부 부처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층위적 협력을 보장하는 상위 정책 • 법적, 정책적 기반 형성: 리스크 공동대응 포함 • SDG16의 외교 정책화
KOICA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공여국으로부터 참조할 PHD분야 우선 정책목록 설정 • 지역 전문성, 전문가 풀 형성 • SDG16 분야에 관한 각국 국가 동향 및 위기 분석 능력 • 인권주류화, 민주역량, 갈등감수성 프로그램 도구 적극 도입과 개발 • SDG16 국내, 국외 시민사회 파트너십 및 주축그룹 형성 • 관련 정책 수립 TF 구축 •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구 증진 • SDG16 역량 연구 개혁 및 증대: 분석과 프로그램 도구 활용 및 인적 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SDG16 신정책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국제협력의 환경과 조건 면밀 진단 • SDG16 분야의 중기적 전략 목표 설정 • 신정책을 명료하고 쉬운 언어로 사회 및 파트너들과 소통, 협의 •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의 영역과 단계 설정 • 광범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형성 • 광범위한 파트너십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과 지도력 형성
프로그래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민주, 갈등 등 취약 분야 프로그램 도구 적극 도입과 개발 • (1)갈등예방, (2)PHD, (3)평화세우기의 통합적 전략의 프로그램화 • 신 프로그램 도구를 중심으로 파견 그룹 사전 연수 강화 • 취약국 시민평화 역량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인권과 젠더 정책 등 문화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의 접근법 수립 • 전문적 국가분석과 각 행위자 프로그래밍 연계 • 국가별 국제협력 행위자 간 프로그램 분배와 협력 강화
예산과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Local Ownership 및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예산과 회계 혁신

6. 평화 ODA 전략 및 실행방안

6-1. 21세기 평화의 의제와 위기 진단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지구촌의 갈등과 폭력에 대한 연구와 성찰 및 실천으로부터의 교훈과 평화 의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거버넌스 구축 분야에서는 포용적 정치절차와 수요기반 책무성 있는 제도화, 부패척결,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

도입, 배제의 축소,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 증진, 국가역량 구축 및 강화 등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치 분야에서는 사법제도의 신뢰 구축과 사법 정의, 인권의 보장, 여성과 청소년 및 취약집단의 권한 강화와 사법정의 제공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회복과 안정화 분야에서는 경제재건과 갈등조정을 통한 평화 배당 증대,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치안과 공공서비스, 폭력화와 극단주의의 예방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 집단적 고충을 미리 분석, 판단하면서 집단적 불만을 예방하는 필수 서비스의 제공과 분쟁지역 집중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분쟁 후 회복과 통합을 위한 교육적 문화적 서비스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평화구축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21세기 평화 의제의 형성에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파트너들의 개입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평화구축 역량 지원, 포용적 분석, 평화구축 의제설정, 평화구축 프로그램화이다. 세부적으로는, 리스크 심층 평가(불평등, 국가로부터의 배제, 집단화된 고충 인식)에 기초한 포용적 위기/위험 분석, 연구 지원, 사회적 대화 및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 대응 역량 지원, 갈등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지원, 평화분야 교육훈련 지원, 제도개혁 지원 및 사회적 대화, 평화구축 행위자 형성 지원 등 이다.

모든 과제 중에서도 중장기적 분쟁 예방전략의 수립은 21세기 평화지향 국제개발협력에서 핵심이며 관건이다. 21세기 분쟁과 갈등의 추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폭력화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게 지니고 있다: 분쟁 시 폭력 발생의 증대, 무장집단의 증가, 분쟁 비용의 증가, 민간인 피해의 증가, 여성 등 취약집단의 피해 증가, 장기화되는 갈등으로 국가 역량의 취약화, 갈등/분쟁 간 빠른 상호작용, 생태적 리스크 증대, 빈곤 지역 청년 상황 악화. 이 때문에 갈등을 완화하는데 경제적 인센티브의 역할이 약화 되고 통상적인 국제협력의 효과가 저하된다.

증대되는 분쟁 및 갈등 현상은 폭력 리스크를 높인다. 폭력 리스크는 불평등, 배제, 불의(고충)에 대한 집단적 인식의 조직화될 때 높아진다. 불평등-배제-집단화된 고충의 삼각형은 종종 국가의 억압에 의한 배제, 취약한 청년 배당/참여, 성별 불평등, 기후-인구변화, 도시화로 인한 서비스 저하, 사법-법치의 취약성에 따른 국가 정통성 저하로부터 발생한다.

KOICA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폭력적 분쟁 감소에 예방이 가장 효과 및 비용 효율성이 있다는 점, 분쟁의 급증과 범위 및 성격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 분쟁 예방이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개발 성과에 기여한다는 점, 예방 조치의 혜택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KOICA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협력전략이 무엇보다도 민주적 참여적 리스크 평가와 공유, 포용적(다자) 비폭력적 대응, 시스템적 전환, 행위자와 제도의 동시 변화 및 지속적 상호관계라는 원칙에 입각할 때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평화-개발 연계, 역량-자원의 동시 지원과 조정, 고충 처리, 다자행위자 플랫폼, 사람 중심 정책과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KOICA는 특히 평화 ODA 사업을 추구하는데 기존의 타 공여기관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상위 정책 조정, 리스크 공동대응 능력, 전문가 풀 형성, 국가별 위기 분석 능력, 다양한 프로그램 도구, 포용적 파트너십, 평화구축 전략, 중장기 Local Ownership 존중 예산계획 등이다.

KOICA는 아울러 폭력화되는 갈등/분쟁 추세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폭력적 분쟁 재증가, 초국경적 위협도와 복잡성 증대에 대응, 종합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한 대응 필요
- 분쟁 비용 급증 - 관련자 모두의 대응 필요. SDG가 핵심적 접근법, 개발 노력에 통합된 예방이 가장 효율적
- 포용적이고 지속적 개발을 통한 회복력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 불평등과 소외 해소 및 포용적 제도화 그리고 리스크 감안 개발 전략이 예방의 핵심
- 예방 조치는 국가 책임. 국가 책임은 국가 정책과 다자시스템의 거버넌스를 통해 성취됨. 일국 대응보다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
- 폭력적 분쟁으로의 비화는 권력, 기회, 서비스, 안전에 대한 접근성에서 소외가 발생하여 집단의 불만으로 될 때 발생함. 국가역량 또는 정통성 약화와 인권 유린이 더욱 그렇게 함. 포용적 정책 노력을 통한 방지의 방법 가능.
- 성장과 빈곤 완화는 평화유지에 충분치 않음. 폭력 예방에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낮춰야 함. 해결책을 대화, 거시경제의 조정, 국가 중심 제도의 개혁, 재분배 정책에서 확인.

- 포용적 의사결정이 평화 유지(합의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기본적 요소,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와 대표, 조직, 운동, 네트워크화 필수.
- 폭력 발생 시 제도적 억제 역량과 더불어 평화-협력적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더 효율적인 예방이 됨. 특히 외교, 중재, 안보, 개발 문제에서 다양한 예방 도구와 수단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

6-2. 전략적 목표

본 연구는 KOICA의 평화구축 사업의 전략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사람 중심 개발협력,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전 지구촌의 상생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ODA 평화사업의 초기 단계 전략적 목표는 다부문 협력을 토대로 한 갈등/분쟁 예방과 갈등 전환 및 평화구축이 될 것이다. 부문 간의 협력은 위기관리, 빈곤퇴치, 인권, 민주주의, 젠더, 지속 가능 발전을 주요 부문으로 하며 이러한 부문의 행위자들의 참여적 과정을 의미한다.

갈등 예방과 갈등 전환에 기초한 평화구축은 KOICA 평화정책의 핵심전략이며, 이 전략은 4가지 프로그램 부문으로 구성된다.

- 갈등의 근본 원인과 추동 요인에 대응
- 갈등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축과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하고 사회 집단 간의 신뢰를 구축
- 정부에 대한 신뢰(국가-사회관계)와 정당성을 수립

이 전략은 행위자의 역량 형성을 초기의 초점으로 설정한다. 평화구축 역량은 인적 생태적 맥락에 변화를 야기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평화 살기(평화의 삶)의 역량과 맥락 변화 역량으로 구성된다. 맥락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참여, 다양성, 상호의존성이다. 평화구축 전략의 출발점은 평화구축을 실행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역량 구비이다. 예시로서, 평화구축 역량의 세부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4-8] 평화역량의 구성요소

주제	역량
비폭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폭력 대화 2. '평화 감수성': 해침과 해치지 않음에 대한 관찰과 인지 3. 비폭력적 라이프스타일 4. 긍정적 사고 5. '관계의 감수성': 관계 속에서 폭력 알아차리기 6. 폭력 자기조절 능력
일상적 갈등 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과 친구 되기(갈등 속에서 희망/낙관 유지) 2. 갈등에서 당사자의 요구와 이슈 알아차리기 3. 자신과 타 존재와의 공감 empathy 4. 갈등 전환의 구조와 과정 이해 5. 갈등 전환 일상에서 실제 적용
평화프로세스 세부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갈등-맥락 분석 2. 변화촉진 능력 진단 3. 평화로운 변화 경로 기획 4. 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기획력, 평가역량 5. 평가와 계획의 선순환 프로세스 기획
사회적 갈등 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체적 갈등의 평화적 전환 구상 2. 불의와 억압에 관한 인식 3. 포용적 참여적 상생적 모임의 기획과 운영 4.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
평화의지속화 제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 현상에서 폭력의 수준 모니터링 2. 폭력에 대한 조기경보와 대응 방법 3. 지속적 평화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시도를 지원, 강화 4.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공식/비공식 제도 만들기 5. 평화시민성: 평화의 가치에 관한 공공 인식 증진

출처: Designing Learning for Peace: Peace Education Competence Framework and Educational Guidelines, Max Fras and Sebastian Schweitzer eds., Erasmus+ (European Commission), 2016, 저자 재구성)

6-3. SDG 평화사업 영역

KOICA는 평화-발전 국제협력에서 다부문 협력을 토대로 한 갈등 예방과 갈등 전환 및 평화구축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해당 사업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및 사업 영역은 (1)평화구축 워킹그룹의 역할, (2)국내외 평화 ODA 사업 파트너십 구축, (3)KOICA의 기존 거버넌스, 시민안전, 공공행정, 법치 분야 사업과의 연계성, (4)본 연구의 사업형태와 개입형태의 조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추출하였다.

- 리스크 대응 역량 증진: 집단적 고충 리스크 및 발현의 참여적 평가와 전략 수립
- 개발협력에서 갈등 예방적 접근의 토대화
- 정치와 거버넌스의 정당성과 포용성
- 시민 안전 증진
- 사법 정의 증진
- 평화를 위한 경제 증진
- 평화구축 역량과 파트너십 형성

이러한 상위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분류로 구분되며, 각 프로그램 범주는 KOICA의 전략과 분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가. 리스크 대응 역량 증진: 집단적 고충 리스크 및 발현의 참여적 평가와 전략 수립

- 참여적 포용적 리스크 평가, 평가 공유
- 예방적 포용적 장기전략 수립

나. 개발협력에서 갈등 예방적 접근의 토대화

- 예방적 접근의 의제화 프로그램화
- 평화-발전 프레임 적용, 프로그램 개혁
- 행위자 간 인식 증대와 파트너십 지원

다. 정치와 거버넌스의 정당성과 포용성

- 프로그램별 정부-정당-민간 의사소통과 합의 프로세스 도입
- 부문별 다자 행위자 + 배제집단 간 의사소통과 합의 프로세스 도입, 지원
- 거버넌스 형성 협의 지원

라. 시민 안전 증진

- 시민 안전 의제설정, 취약성 진단과 인식 공유
- 시민 안전 사회서비스 제고, 인센티브 제도화
- 위기 상황 대응 능력 형성

마. 사법 정의 증진

- ‘사법 정의와 평화’ 의제화
- 고충 집단의 사법 접근성 증진, 지원

바. 평화를 위한 경제 증진

- 고충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를 위한 경제 의제화
- 갈등 예방과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모델 학습 지원
- 평화 경제활동 추진 지원

사. 평화구축 역량과 파트너십 형성

- 시민 평화구축 역량 형성
- 정치, 경제, 시민, 국제 부문 평화구축 파트너십 형성: 평가의 공유

6-4. 이행의 단계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KOICA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기 도표 [4-2]에서 제시한 이행단계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

6-5. 프로그램 구성의 원칙

평화구축, 포용적 협력, 다양성, 상호의존성, 갈등 예방, 장기성, 소통, 고충 집단 우선성을 키워드로 아래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핵심 규범: 참여(포용적 접근), 다양성, 상호의존성, 예방적 효과
- 다자간 소통과 포용적 프로세스
- 다부문 협력과 중장기 평화구축 프레임 추진
- 불평등-배제-집단적 고충 영역 우선
- 초기 단계에는 시민 역량 중심 행위자별 역량 형성에 초점

6-6. 종합: 평화 ODA 사업의 추진과정

이상의 추진과정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평화 ODA 전략 및 실행방안: 평화 ODA 추진과정

순서	사업	추진주체	협력	사항
1	• 평화 ODA 전략(문서) 채택	KOICA	관련 단체, 전문가 협의	위기 진단, 비전, 정책개념, 목표, 역량, 원리, 방식, 방법론 모델, 권고 사항
2	• 상위 정책협의	KOICA	관련 부처	국내
3	• 평화구축 워킹그룹(PBWG)신설	KOICA	시민사회	
4	• 목표-사업 구체화 (조사, 대상국-지역-우선순위 선정)	PBWG KOICA	시민사회	
5	• 파트너십 형성 1차 (우선순위별)	PBWG KOICA	현지 관련 단체	우선 사업 조사와 협의
6	•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	PBWG KOICA	현지 관련 단체	시간표, 예산, 인적 역량, 준비사항
7	• 국제기관과 협의, 약정	KOICA		
8	• 사업추진과 참여	PBWG KOICA	현지 관련 단체	파견, 현장 모니터링
9	• 평가	PBWG KOICA	현지 관련 단체	참여적 변화지향적 평가

V. 결론

본 연구는 SDG16의 평화분야 ODA의 논의와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한국적 맥락에서 해방 후 국가형성과 한국 전후 평화구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2018년 이후, KOICA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평화분야 국제회의와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을 정리하여 향후 논의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평화분야의 의제형성과 이행을 담당하는 주요 다자기구인 UN과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평화구축전략을 고찰하고 분쟁취약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사례 및 이행실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평화구축(평화 ODA)의 통합적 접근, 평화구축 관련 정책 및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현장기반 평화구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다층적인 파트너십 형성, 평화구축 워킹그룹의 조직화와 적극적인 활용, 갈등 분석 및 평화역량을 갖춘 분야별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평화구축은 협력대상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요소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는 소위 통합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구축의 분야의 범주화도 학계와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안정을 위한 민주화와 거버넌스, 정의와 법치, 시민안전과 안보,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하고 필수 공공서비스의 제공, 심리·사회적 접근에 기반한 화해와 재통합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국가형성과 전후 평화구축의 사례를 보면, 통합적 접근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정치 및 법치의 절차적 제도화, 사회-경제 분야의 성과’와 ‘정치와 법치의 포용성, 접근성, 실체성의 결여’ 간 비대칭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가주의에 의해 민주화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분쟁취약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UN의 평화구축기금 사업 분야를 보면, 평화협약과 정치적 대화 지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및 공존 증진, 경제 활성화 및 즉각적 평화 배당 창출,

필수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우선순위 분야로 설정했고 화해, 법치, 안보-치안 영역재편, 정치적 대화, 사회적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 제고 등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분쟁 후 기금사업의 경우,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실향민과 난민 등 이주인구의 재정착과 통합지원, 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지뢰 제거와 전(前) 전투원 비무장-소개-재통합 지원, 경제복구 지원을 주요 분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KOICA의 평화구축사업 분야도 첫째 정치 거버넌스와 민주화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증진하도록 포용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법치로 인권에 기초한 사법정의의 실체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조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재건 및 안정화로 전쟁 혹은 분쟁경제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하여 평화 배당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민안전으로 법 집행기관 혹은 무장그룹에 의한 폭력적 극단주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안전 및 안보영역 재편(Security Sector Reform)에 관심을 갖고 치안 및 인간안보를 실현하도록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구축과 교육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분야로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의 지원체계 구축과 분쟁 후 회복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려가 요구된다.

2. 평화구축 관련 정책 및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A Whole-of-government Approach)

평화구축사업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부처나 수행기관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제2차 무상원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취약국과 원조 소외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명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인도적 지원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했지만, 이를 수립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평화구축정책을 다룰 수 있는 범정부적 접근이 부재하고 따라서 KOICA가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구축의 사업 분야를 감안했을 때, 거의 전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4장 제3-1절에서 제안했듯이 평화구축의 외교와 안보, 개발 분야에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UN평화회의제와 무상원조정책을 주관하는 외교부가 주무 부처가 되고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평화 ODA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현장기반의 평화구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다층적인 파트너십 형성 (Multi-layer Partnership Approach)

평화구축 프로그램은 갈등과 분쟁지역 현장의 정부, 무장그룹, 지역사회, 종교, 시민사회, 여성과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양성의 존중, 상호의존성의 인식을 통해 폭력적 분쟁으로의 회귀를 차단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핵심 규범으로 한다. 따라서 현장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역학관계의 심도 있는 이해의 틀 하에서 다자 간 소통과 포용적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여러 사업부문의 시너지효과를 증진시켜 중장기적인 평화구축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평화이니셔티브를 위한 파트너십에는 진술한 범정부적 체계 이외에도 분쟁취약국과 평화분야의 이슈화가 있는 특정 국가의 중점적 지원을 위한 다자기구 혹은 평화구축분야 국제비정부기구와의 파트너십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성이 강하지만 평화구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협력분야 민간단체와 평화역량을 갖췄지만, 국내적 이슈에 집중하거나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현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민사회단체 간 접점을 형성하고 분야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의 유연한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례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개최된 개발협력단체와 평화시민단체 간 연석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강·약점을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인 역량의 결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화구축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가 현장의 이해관계자이니만큼, 현지의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 및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과 갈등의 온상이 되는 불평등과 배제, 집단적 고충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평화구축워킹그룹의 조직화와 적극적인 활용

평화 ODA의 정책과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그리고 평화분야를 포괄하는 이론적·실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화구축 워킹그룹(PBWG)의 조직화가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PBWG은 정책 단위에서도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평화구축분야의 사업경험이 다소 부족한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상위전략과 정책의 틀 하에서 목표와 사업을 구현하는 데 보다 주요하게 기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PBWG은 대상국의 지역조사와 우선순위 선정 등 평화구축 사업형성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쟁취약국 내에서 갈등 관계에 민감한 프로그램(conflict-sensitive program)을 형성하는 데 있어 현장의 갈등 분석을 통해 다자, 다자성 양자, 양자, 시민사회 협력 등 사업기획 단계부터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파트너십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PBWG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업의 기획뿐만 아니라 추진단계에서도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제시하여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참여하여 성과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PBWG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5. 갈등 분석 및 평화역량을 갖춘 분야별 인력 양성

이미 선행연구(곽재성 외 2018)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지만, 외교와 안보, 개발 분야 행위자들의 갈등 분석 및 평화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KOICA의 경우, 최근까지 평화구축 연계사업은 주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자성 양자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제한적이지만, 평화구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맥락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평화구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평화구축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 평화구축의 내-외부 주요행위자, 유엔의 평화구축 시스템, 현장 프로그램별 접근방법, 갈등의 분석-해결-전환, 갈등민감형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 모니터링과 평가, 현장 활동의 통합안전대책,

민군협력,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내에 평화구축 연수의 전문가가 부족한 만큼, 미국의 국제평화연구소(IPI),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구축 인재육성센터(HPC), 평화구축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CSP)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초급에서 고급과정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KOICA가 평화구축역량을 갖추고 PBWG가 활성화됨으로써 민-관-군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면 다자성 양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자체적인 정황적 분석과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양자사업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폭력성과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제기구 수준의 인력 보호와 안전 기제를 갖춘다면 양자 형태의 사업수행도 가능할 수 있다.

전술한 5가지의 제안이 적절하게 수용되고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갈등 상황 하에 있는 대표적인 이해당사국의 무상원조기관으로서 KOICA가 평화역량의 구축과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적 평화 의제를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환류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면, 첫째 제3차 무상원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의 수립과 관련, 평화구축 주류화를 위한 이행전략 연구가 요구되고 둘째, KOICA를 비롯하여 국내 시민단체들이 분쟁취약국에서 평화구축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인적, 물적 자원의 소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셋째, 평화구축 인적역량강화 방안의 연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 편 1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곽재성·김수진·송수진·윤지영·이성훈·홍문숙. 2018. 『SDG16 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수용. 2018.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정신”. 『내일을 여는 역사』. 73권: 서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민족문제연구소. pp.18-38.
- 문준용.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서울: 역사비평사.
- 박도. 2017. 『미군정 3년사』. 서울: 눈빛출판사.
- 서남원. 1963. “한국에 대한 외국원조의 관리”. 『아세아연구』 통권 12호: pp.29-63.
- 서복경. 2013.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의정연구』. 제19권, 제1호: pp. 311-318.
- 신협중앙회. 2011. 『한국신협운동 50년사 : 스스로 일어서고 더불어 나아가다 : 1960-2010』. 대전: 신협중앙회.
- 안진. 2004.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판에 관한 연구: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5권: pp.454-480.
- 이강수. 2013.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군사』 제88권: pp.33-60.
- 이경구. 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규모와 분야 효과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이국운. 2005.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판과정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9권: pp.135-175.
- 차상철. 2015. 『미군정시대 이야기』. 서울: 살림.
- 카바(KAVA) 40년사 편찬위원회. 1995. 『외원사회 사업기관활동사 : 외국인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 40년사』. 서울: 弘益齋.
- 한국국제협력단. 2016. KOICA 취약국 지원 중기이행전략(2017-2019).

〈국외문헌〉

- Alberto Cutillo. 2006. "International Assistance to Countries Emerging From Conflict: A Review of Fifteen Years of Interventions and the Future of Peacebuilding", International Peace Academy.
- Alcira Kreimer, John Eriksson, Robert Muscat, Margaret Arnold, Colin Scott. 1998. "The World Bank's Experience with Post-Conflict Reconstruction",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Bellany, I. 2006. "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security". *Political Studies*, Vol. 29, No. 1, 100-105.
- Berdal, M. 2009. "Building peace after war". *Adelphi Papers* 49, London: Routledge.
- Bergenas, J. Knight, A. 2014. ISN Development's New Best Friend: the Global Security Complex 12 Dec, 2014, available at <http://www.css.ethz.ch/content/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en/services/digital-library/articles/article.html/186396>. (접속일: 2019.05.08.).
- Betty Bigombe, Paul Collier, Nicholas Sambanis. 2000. "Policies for Building Post-Conflict Pea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Brady, L.M. 2018. "Sowing war, reaping peace: United Nations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7, No. 2, 351-63.
- Caldwell, D. and Robert E. Williams, R.E. 2006. "Seeking Security in an Insecure World". OX: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Cho, SJ. 1969. "Korean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reforms since her independence", *Korea Journal of Public Studies*, Vol. 7, No. 2, 287-300.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0. "Building Peaceful States and Societies: A DFID Practice Paper," available at <http://www.gsdrc.org/docs/open/con75.pdf>. (접속일: 2019.05.08.).
- Donata Garrasi and Ross Allen. 2016. "Review of Experiences with Post-Conflict Needs Assessments 2008-2015". World Bank Group, European Union, United Nation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Fareed M.A,Hassan. 2004. “Lessons Learned from World Bank Experience i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OED Conference Not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 BMZ Strategy Paper 4/2013e, available at <http://www.steps-for-peace.org/wp-content/uploads/2013/07/BMZ-Strategy-Paper-2013.pdf>. (접속일: 2019.05.08.).
- Fras Max and Schweitzer ed., 2016. “Designing Learning for Peace: Peace Education Competence Framework and Educational Guidelines,” Erasmus+, available at <https://mainstreamingpeaceeducation.files.wordpress.com/2016/11/peace-education-competence-framework-ebook.pdf>.(접속일: 2019.05.08.)
- Gowan, R. 2018. “Political Gap in Reform Agenda Leaves Questions on A4P Mechanisms,” IPI Global Observatory, July 19, 2018, available at <https://theglobalobservatory.org/2018/07/political-gap-reform-agenda-questions-a4p-mechanisms/>. (접속일: 2019.05.08.).
- Holsti, K.J. 1996.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an D.Quick and Spyros Demetriou, 2017. “Learning from experiences with implementation and financing of recovery and peacebuilding assessments 1999–201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McNamara R. 1968. “The Essence of Securit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Miall, H. 2007. “Emergent conflict and peaceful change”. London: Palgrave Mcmillian.
- Murthy, C.S.R. 2007.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 operations for troop–contributing countries from South Asia”. Chiyuki Aoi, Cedric de Coning and Ramesh Thakur (eds.)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Tokyo: UNU: 156–170.
- Musoni, P. 2003. “Reconstructing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s for Effective, Conflict–Sensitive Rule of Law (United Nations Network in Public Administration "Ad Hoc Expert Group Meeting),” held in Yaound, Cameroon on July.

- Lawson, A. 2009. "Evaluating the transaction costs of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xford: Fiscus.
- Lombourne, W. and Herro, A. 2008. "Peacebuilding theory and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implications for non-UN interventions". *Global Change, Peace and Security*. Vol. 20, No. 3, 275-289.
- Lyons, G.M. 1958. "American Policy and the United Nations' Program for Korean Reconstru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12, No.2, 180-192.
- Ohiorhenuan, J.F.E. and Kumar, C. 2005. "Sustaining Post-conflict Economic Recovery: Lessons and Challenges," BCPR Occasional Paper 1 (October 2005).
- Paul Collier, V.L.Elliott, Havard Hegre, Anke Hoeffler, Marta Reynal-Querol, Nicholas Sambanis. 2003. "Breaking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Pouligny, B. 2003. "UN peace operations, INGOs, NGOs, and promoting the rule of law: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and local norms in different postwar contexts". *Journal of Human Rights*. Vol. 3, No. 2, 359-377.
- Ponzio, R. 2018. "The UN's new "Sustaining Peace" Agenda: A Policy Breakthrough in the Making." Posted on Stimson Center website on 23 February, 2018. Available at <https://www.stimson.org/content/un-new-sustaining-peace-agenda-policy-breakthrough-making> (접속일: 2018.11.15.).
- Ryan, S. 2013. "The Evolution of peacebuilding", in R.M. Ginty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OX: Routledge, 25-35.
- Sara Batmanglich, Monica Stephen. 2011. "Peacebuilding, the World Bank and the United Nations; Debates and Practice in Burundi, Liberia and Nepal", *International Alert*.
- Thomas Edward Flores, Irfan Nooruddin. 2008. "Financing the peace: Evaluating World Bank Post-Conflict Assistance Programs", Springer Science.
- UN. 1995.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NY: UN.
- __. 2000.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NY: UN.

- ___ 2010.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NY: UN.
- ___ 2012. “Policy Review of Operation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NY: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___ 2014. Financing Integrated Peace Consolidation Reports NY: UN.
- ___ 2015a.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on uniting our strengths for peace: politics, partnership and people”. NY: UN.
- ___ 2015b. “Report of Secretary General: The future of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NY: UN.
- ___ 2018a. “Report of Secretary General: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NY: UN.
- ___ 2018b. “Securing our common future: an agenda for disarmament”, NY: UN.
- ___ 2018c. “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 on peacekeeping operations”. NY: UN.
- UNDP. 2005. “The Constitu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Legislature”. NY: UNDP.
- _____. 2017. “UNDP strategic plan, 2018–2021”. NY: UNDP.
- World Bank. 1998.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_____. 1999. “Post-Conflict Fund Guidelines & Procedure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 _____. 2003. “The Role of the World Bank in Conflict and Development; An Evolving Agenda”, Conflict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Uni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4. “Post-Conflict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4”,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5. “Post-Conflict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6. “Post–Conflict Fund and LICUS TRUST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7. “Post–Conflict Fund and LICUS TRUST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7”,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9. “The State and Peace–Building Fund Annual Report FY 09–Monthly Report June 200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16. “World Bank Group Engagement in Situations of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17. “Korea Trust Fund Annual Report 2017”,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18. “State and Peace–Building Fund 2017 Annual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 _____. 2019. “State and Peace–Building Fund 2018 Annual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 _____. 2019. “World Bank Group Strategy for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2020–202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http://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4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속일: 2019.06.03.).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research-reports/the-peacebuilding-commission-and-the-security-coUNcil-from-cynicism-to-synergy.php?print=true>,
(접속일: 2019.06.03.).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e2f4.html?pageId=1836>,
(접속일: 2019.06.03.).

부 록

부록 1. SDG16 및 평화구축 관련 약식 질문지 결과정리

- 일 시 2019. 4.24-25
- 참여단체 개발 NGO(더프라미스, 월드투게더, 지구촌나눔운동, 한국월드비전), 평화관련 시민사회단체(피스모모, 한국희망재단, 전쟁없는세상), 협회(KCOC), 총 8단체

SDGs 16+ 및 평화구축 관련 약식 질문지 결과정리				
다음 중 여러분의 소속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표기해 주세요.				
번호	질문	수행하지 않는다	사업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하게 수행한다.
1	인권, 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 가능 개발 기여를 공감하기 위한 교육		4	4
2	아동, 장애, 성 인지적 교육시설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		5	3
3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사적 영역에서의 폭력 근절 활동	2	4	2
4	조혼, 강제결혼, 여성 할례와 같은 유해한 관습 근절 활동	5	1	2
5	아동노동이나 현대적 노예제와 같은 착취 근절 활동	3	3	2
6	이주근로자 및 불안전 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	6	2	
7	안전하면서 기초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주거시설 건립 혹은 개선	5	1	2
8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건립 혹은 개선	4	1	3
9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제반 활동	2	3	3
10	아동 대상의 폭력에 대한 보호 활동	2	3	3
11	취약계층 대상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활동	6	1	
12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요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해결을 위한 활동	2	1	5
13	불법자금 및 불법무기거래, 조직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	6		2
14	다양한 형태의 부패방지 활동	4	3	1
15	가정, 마을, 공동체 단위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3	5
16	각종 필요한 정보에 접근을 촉진하는 활동	3	1	4

다음은 일련의 평화구축활동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 주세요.							
번호	질 문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많다.		
민주 화 / 거버 넌스	1	제한(constitution)지원	5	1	1		
	2	선거 및 정당제도화 지원	5	2			
	3	공공행정개선,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증진	1	3	3		
	4	시민사회 형성 및 역량 강화			7		
	5	언론과 미디어 개발	2	3	2		
경제 재건	6	난민 및 실향민의 재정착 지원		3	4		
	7	고용촉진과 노동자 권한 강화	2	3	5		
	8	천연자원관리	4		3		
	9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기업 육성지원	3	3	1		
법치	10	사법정의 및 법 체제 개편	4	2	1		
	11	법정의의 접근성 제고	4	1	1		
	12	인권 보호와 촉진	1	2	4		
	13	진실규명 등 전환기 정의	4		3		
	14	관습법 및 비공식적 법치 시스템의 개선	3	4			
심리 사회 적 복구	15	갈등세력 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1	2	4		
	16	역사사료관 설치 및 역사교육	3	2	2		
	17	트라우마, 정신보건 및 심리 사회적 서비스	1	3	3		
	18	소수 및 소외그룹의 권한 강화		2	5		
치안 및 공공 질서	19	전(前) 무장전투원 대상 비무장화-소개-사회 재통합	4	1	2		
	20	치안영역재편	3	2	2		
	21	소형무기 및 경화기 사용근절 활동	3	2	2		
	22	지뢰 활동	4	2	1		
	23	지역 기반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지원	4	2	1		
다음은 KOICA의 평화 관련 OD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 주세요							
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시 각종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1		1	4
2	사업의 발굴과 이행 시 SDG16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략, 지침 등을 수립한다.			1		2	3

3	평화구축과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ODA 사업을 확대한다.		1	2		3
4	KOICA의 사업 전반에 평화와 인권, 거버넌스 부문을 범분야 이슈로 정의한다.		1		2	3
5	평화와 갈등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OICA의 사업시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툴도 도입한다.		1		2	3
6	ODA 사업을 형성 시 수원국 이해관계자들과 SDG16 이행을 반영하는 논의를 체계화한다.		1	1	2	2
7	평화 ODA의 사업수행은 정부 간 사업 방식보다는 다자협력, 민간협력, 연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1		1	4
8	평화 ODA를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시킨다.		1		1	4
9	KOICA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위원회 조직 등 내부인력기반을 강화한다.		1	1		4
10	평화구축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		5
11	국내·외 파트너기관 및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내외 SDG16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1	4
12	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여국, 국제기구, INGO 등 파트너 기관과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1	1		4

부록 2. 평화목표의 세부적 정책, 전략화를 위한 평화관련 의제 개념정리

평화	
소극적 평화	전통적 평화관: 전쟁, 불안, 폭력이 부재한 상태. 즉 폭력의 부재 상태에 대한 언술. 보편적 정의 어려움. 전통적 '평화' 언술은 '우리(만)의 평화'의 언어로 소통되고 인식됨. 이 경우 평화와 폭력은 엄밀히 구분되기 어려움.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평화적으로 축소되는 과정. 정의와 비폭력이 구현된 상태. 타인의 평화도 포함하는 상태. 폭력 예방적 상태를 포함.
요한 갈등의 평화관	평화는 모든 종류 폭력의 부재 상태/축소과정이다. 평화는 갈등의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변형이다. 평화의 실천은 평화로운 수단으로 폭력을 줄이는 실천이다. 평화에 대한 관심은 평화 실천의 조건에 대한 관심이다.
안전/편안	현대 평화 개념과 등치하지 않음. 오히려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평화관의 핵심 가치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쉽게 인식되는 상태.
정체성	정체성(우리는 누구인가)은 차별, 폭력, 갈등, 평화의 발생에 항상 작용하는 중요한 사회적 집단적 인식 요소. '우리만의 평화'는 '우리'라는 정체성에 기반함. 정체성은 한 집단에 공통적이고 불변하는 동질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방법.
평화운동	폭력 일반과 전쟁, 그 준비 체제(예: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체제와 문화)에 대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성찰이 행동으로 표현된 모습.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대체적인 공통성으로 폭력, 갈등, 전쟁, 군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천적 대응을 의미함.
평화주의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적 평화운동의 가치와 지향을 총칭하는 말로 20세기 초반부터 대두되고 사용됨. 전쟁과 폭력을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거부함. 폭력의 수단화에 대한 거부 사상과 태도를 일컫음. 그러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도 있음. 대체로 국가주의-현실주의 이념이 강할 때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또는 '비과학적'인 이념이나 주장으로 격하됨.
현실주의와 평화관	국가주의, 국가 생존을 위해 전쟁과 전쟁 준비의 불가피성,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 이것을 국가의 '현실'로 규정. 권력갈등과 배타적 경쟁을 중요시함. 권력, 갈등, 안보, 동맹, (힘의)질서, 국가, 패권 등이 주요 가치. 비관주의: 평화 불가능, 최선의 평화는 힘의 질서.
자유주의와 평화관	국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 시장경제, 공동안보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해 합의와 협력, 국제제도를 이룰 수 있고 갈등과 군비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협력, 경제교류, 외교, 국제제도 등이 주요 가치. 낙관주의: 협력과 가치 공유로 평화 가능.
(범)비판 이론과 평화관	현실주의, 자유주의 모두 문제/한계: 보편적 가치와 시장 역시 패권적, 서구중심. 차별과 억압의 중층적 구조와 힘없는 사람들의 힘 찾기 empowerment에 주목. 현실주의-자유주의가 보장하는 복합적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변환과 구조적 폭력의 축소과정인 평화. 즉 평화적 정의 추구하고 구조 변혁의 길로서 평화.
여성주의와 평화관	국가-전쟁-폭력이 작동하는데 가부장제 등 젠더관계가 갖는 역할에 주목. 폭력적 구조와 남성성의 관계, 일상에서의 폭력 형성, 모든 구조와 현상에서의 젠더적 특성 등에 탁월한 분석을 제공. 매우 혁신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제기됨.

시민사회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대체로 다수의 '공공' 이익을 위한 비영리(기업 외), 비정부(정부 외) 활동의 전체 그리고 그 공간을 지칭. '공공성', 인권, 민주성, 참여, 자발성, 독립성 등이 주요한 가치 척도.
인권과 평화	인권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유엔의 합의구조를 통해 형성된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권리들. 대체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됨(1948년 세계인권선언 후). 이로부터 평화의 권리, 평화권이 태동하는 과정에 있음.
비폭력 행동	비폭력 저항, 직접 행동, 시민 불복종 등으로도 표현되고 이해됨. 폭력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평화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소극적 비폭력(비저항)과 적극적 비폭력으로 구분되기도 함.
평화 만들기	peacemaking. 당면한 갈등을 협상, 조사, 화해, 중재, 사법처리, 국제기구/법 의거,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중단시키려는 노력. 개념상으로는 평화 만들기, 평화유지, 평화세우기의 순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중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제기됨.
평화유지	peacekeeping. 무력갈등이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국제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결정과 개입으로 진행됨.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식량 배분, 선거 지원, 난민귀환, 민간인 보호, 집단 성폭력 예방, 교통시설 복구 등의 사회회복 프로그램을 포함. 한국에서는 평화유지군/군사 활동으로 협소하게 여론화되는 경향이 존재.
평화세우기	peace building. 갈등 이후 재건과 화해를 위한 활동. 최근 인도적 구호, 인권 보호, 시민안전 보장, 비폭력적 갈등 해결 절차, 트라우마 치유, 경제회복, 인권평화교육, 시민사회 강화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됨. 한국에서 논의나 준비가 매우 취약한 분야. 한국의 해외 원조나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서 매우 취약함.
평화 배당	군비축소, 군대축소를 통해 한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 배당이라는 개념은 이 여유 자원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 한국에서는 평화 배당 보다는 '통일 분담/부담'이라는 담론에서처럼 '부담금' 측면만 과도하게 여론화되는 경향이 존재.
안보	국제정치와 정권-정치에서 평화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됨. 보통 국가의 영토, 정체성, 국가이념에 위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로 설명됨. 실제 용법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으로서, 권력자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임. 적과 적개심, 멸절의 공포를 주재료로 삼는 문제적 개념이자 수단.
인간안보	안보론이 '국가안보'라는 횡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안보로 명명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이해하고자 함.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국제적 여론과 도전의 일환으로 90년대 이후 영향력.
폭력	
폭력	전통적 폭력관: 직접적이고 직접 인지되는 가해 행위 또는 그러한 힘. 가해 행위는 위협, 상해, 파괴, 인적 물질적 남용 등으로 이해됨. 구조적 폭력 개념 이후 전통적 폭력관은 직접적 폭력에 해당됨.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불평등한, 구조화된 권력 관계: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군사적 권력, 사법적 권력, 문화적 권력 등.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장치와 이념, 가치, 담론들. 어떠한 폭력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작용과 무관할 수 없음.
구조	행위자들이 만들어낸 고정된 권력 제도: 제도, 법, 정책, 법, 기구, 이념, 계급 등. 단기간에 잘 변하지 않고 형식을 갖춘 제도화된 권력을 의미함.

행위자-구조	행위자는 구조의 영향 아래 제약되어 있으나, 구조를 변형시키기도 함.
문화	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 특성, 태도, 행위, 생산, 소비, 관습, 언어, 기타 정신적 작용의 총합.
차별	차이에 우열관계를 부여한 구별. 차이와 폭력 사이를 매개함.
테러리즘	매우 논쟁적인 개념. 대부분 편협한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 이론가들은 테러리즘을 대체로 정치적 목적으로 다수의 민간인에게 폭력을 가해 공포감과 선전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많은 국가 역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특정 '테러 집단' 유형만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참조: 국가 테러리즘.
갈등	
갈등	의견, 이익 등이 다른 두 행위자 간에 그 차이(이슈)가 조정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벌어지는 긴장된 관계나 행동.
폭력적 갈등	비폭력적 갈등과 구분되는 것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갈등.
무력 갈등	무기를 동원하는 갈등, 무장집단이 개입된 갈등.
풀기 어려운 갈등	intractable conflict. 장기간 지속되면서 개입이나 조정이 어려운 갈등. 주로 근본 가치의 차이, 중요한 분배 격차, 지배와 피지배, 기본 생활 필수요소 needs의 결핍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
갈등의 원인	의견과 이익의 차이 자체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 그러한 차이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 행위자의 기대치와 실제 권력의 격차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
권력	어떤 결과가 자신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능력이나 영향력. 다양한 권력관 존재. 위협과 압박의 권력, 유도하는 권력, 수용하는 권력이 존재. 하드파워는 물리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 소프트파워는 가치, 정책 등으로 상대를 회유하고 수용하려 하며, 스마트파워는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응용하는 권력을 지칭. 한글 '힘'도 power/force이지만 다른 의미도 지님.
자력화	또는 권한 부여 empowerment. 힘이 적은 사람이 더 큰 힘을 갖도록 하는 것. 권력과 연관된 개념. 긍정적 힘의 개념에 더 가까움.
갈등감수성/갈등인지력	행위자가 자신의 실천 맥락을 파악하고, 해당 현장에 대한 자신의 개입과 현장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일과 능력
위기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하나의 상태가 급격하게 다른 상태 또는 미지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변동가능성의 상황. 보통 부정적 가치를 내포함.
갈등 분석	갈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 맥락, 이슈, 원인, 행위자, 역학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이해와 개입/조정 방법을 파악함
갈등 관리	갈등 특히 폭력적 갈등을 예방, 제약, 통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 방법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 사용.
갈등 예방	낮은 수준의 장기적 갈등이 폭력화되거나 하나의 폭력 현상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 방법으로 경고 체제, 신뢰 구축 조치, 예방적 외교, 제재 등 사용. 예방 외교라고도 부름.

갈등 해결	당사자들의 공통 이익과 공동 목표를 찾아서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려는 노력. 긍정적 태도 형성, 화해 과정을 통한 신뢰 형성, 평화적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와 과정의 강화 등을 포함.
갈등 변환	갈등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여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비폭력적 문화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방식. 개인-관계-구조-문화의 면 모두에서 큰 변화 만들기과 평화 세우기의 접근을 통합하는 시도.
입장과 이익	입장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말한 것. 이익은 당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논자에 따라 이익의 근거에 정체성과 안전 등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하여 입장-이익-욕구 (PIN: position, interest, needs)로 나누기도 함.
협상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거래하는 과정. 양보와 타협이 주로 발생. 사전 협상은 협상의 형식, 절차, 시간표, 참여자, 의제 등을 합의하는 과정. 완료 과정은 협상 후 세부적 또는 합의된 내용과 언어를 합의하는 과정.
중재 mediation	인정된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일. 중재자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재판관이나 조정자 arbitrator처럼 결정권을 갖지는 않음. 보통 중립적이고 편들지 않는 위치지만 적극적 전략을 가질 수 있음. 소통과 협상 촉진, 대안 제시, 동기 부여, 설득의 방법을 사용.
화해	폭력적 갈등의 당사자들 간에 신뢰, 협력적 공생, 안정적 공간을 세우려는 장기적 노력. 방법으로 대화, 잘못 인정, 사법 절차, 진실규명, 용서/회복 의식 등을 사용.
조정 arbitration	갈등사건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구성된 임시 재판기구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식. 조정에 상정할 이슈, 조정자의 선택, 재판 절차에 대해 합의. 북아일랜드, 보스니아 내전 해결 과정 등 국제분쟁에 종종 사용됨.
다중트랙 외교	갈등 해결에서 공식, 비공식, 정부와 민간 외교 방식, 정치-경제-문화-과학 영역에서의 교류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일. 1트랙(궤도) 외교(정부 고위층 외교, 협정 체결 등), 2트랙 (1트랙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 그룹들의 비공식활동: 대화, 대안 모색 등), 3트랙(민간 대 민간 외교)을 복합적으로 사용함. 1.5트랙은 정부 인사의 2트랙 방식.
평화외교	평화 의제를 위해 전개하는 다중트랙 외교, 그중 시민주도의 평화외교를 시민평화외교라 함.
전쟁	전통적: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 권력체 간의 무력 갈등.
군축 (군비축소)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대적 세력 간에 합의, 신뢰 구축, 무기통제, 군비축소, 군사정책 조정 등을 추진하는 일.
정의로운 전쟁론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군사력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믿음: 정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올바른 의도, 최후 수단, 비례적 수단 사용, 합리적 수준의 성공 가능성 존재 등.

부록 3. UN평화구축기금 수원국별 현황

Peacebuilding Fund - Projects by Country

Data as of 15 Jul 2019 2:00 PM GMT

All amounts in US\$

Covering from Jan 2007 to Dec 2019

	Approved budget
Peacebuilding Fund	1070343134
Countries	
Albania	2187080
Projects	
00112939 PBF/IRF-250: Supporting the W	2187080
Bosnia and Herzegovina	5933294.22
Projects	
00108015 PBF/IRF-190: A More Equitable	2000000.8
00113873 PBF/IRF-295: Fostering Dialogu	1933293.42
00091334 PBF/IRF-92: Dialogue for the fu	2000000
Burkina Faso	13350725
Projects	
00113590 PBF/BFA/A-1: Appui a la Gestio	2200134
00115098 PBF/BFA/B-1: Projet d'Appui à	2700000
00115126 PBF/BFA/D-1: Promotion de la c	3100465
00104792 PBF/IRF-153: Appui au processu	1000126
00105283 PBF/IRF-164: Projet d'appui co	2000000
00106947 PBF/IRF-180: Promotion de la s	1000000
00113701 PBF/IRF-292: Jeunes et paix: "	1350000
Burundi	83213043.68
Projects	
00073672 PBF DCB Burundi	681764.7
00066648 PBF/BDI/B-1 Désarmement lutte	500000
00066641 PBF/BDI/A-1 renforçer mécanism	1500000
00091554 PBF/BDI/A-10: Appui a la promo	3335663
00093147 PBF/BDI/A-11: Promotion du rol	1800000
00093148 PBF/BDI/A-12: Renforcement de l	500000
00094613 PBF/BDI/A-13: Appui a la promo	1240000
00100897 PBF/BDI/A-14: Fonds de soutien	984400
00112622 PBF/BDI/A-15 Appui a la Resili	1776186
00112731 PBF/BDI/A-16: Renforcement des	3448894.5
00066642 PBF/BDI/A-2	3148000
00066643 PBF/BDI/A-3 Rôle de la femme d	3105193
00066644 PBF/BDI/A-4	4200005
00066645 PBF/BDI/A-5 Réinsertion social	212447
00066646 PBF/BDI/A-6 Ptes et micro-entr	500000
00066647 PBF/BDI/A-7 Amélioration quali	3000000
00071035 PBF/BDI/A-8 Appui à la réintég	1787553
00079938 PBF/BDI/A-9 Réintégration	10194103.88
00066649 PBF/BDI/B-2 Casernement	4812150
00066650 PBF/BDI/B-3 Service renseignem	500000
00066651 PBF/BDI/B-4 Police Nationale	6900000
00066652 PBF/BDI/B-5 Moralisation du co	400000
00066653 PBF/BDI/C-1 Commiss° Nationale	400000
00066654 PBF/BDI/C-2 Réduct° violence re	1158520
00066655 PBF/BDI/C-3 Réhabilitat° systèm	800000
00066656 PBF/BDI/C-4 Consultat° national	1000000

00100207	PBF/BDI/D-1: Consolidation des	1000000
00100847	PBF/BDI/D-2:Appui a la securit	2975079
00066657	PBF/BDI/F-1 Appui au règlement	700000
00092133	PBF/BDI/H-1: Appui a la coordi	2059680.2
00066700	PBF/EMER/5 Dialogue betw. BDI	1000000
00070987	PBF/EMER/8 Support to DDR in	1000000
00093122	PBF/IRF-100: OHCHR Monitoring	888725
00098478	PBF/IRF-135: Renforcement du m	1036967.24
00100241	PBF/IRF-139: African Union Hum	2259816.76
00075000	PBF/IRF-18 Support Election	3000000
00108194	PBF/IRF-197: Preventing confli	1054399.4
00108359	PBF/IRF-225: Peacebuilding for	3420000
00108391	PBF/IRF-235: Soutenir les femm	1758399
00109327	PBF/IRF-241: Youth LAB (Leader	1757510
00113451	PBF/IRF-278: Investir dans la	817587
00113468	PBF/IRF-279: Youth leading the	600000
Cameroon		2768382.8
	Projects	
00108017	PBF/IRF-192: Soutenir les mec	1719782.8
00112785	PBF/IRF-247: Strengthening cap	1048600
Central African Republic		78773516.01
	Projects	
00073675	PBF DCB Central African Rep	292656
00066658	PBF/CAF/A-1 Autonomisat°Fem af	1192567
00066659	PBF/CAF/A-2Format°fem dts huma	368090
00066660	PBF/CAF/A-3 Promot° protect° d	390000
00074937	PBF/CAF/A-4 Elections (PACE)	1500000
00076270	PBF/CAF/A-5 Renforcement justi	2200000
00076271	PBF/CAF/A-6 Protection enfants	666913
00076275	PBF/CAF/A-7 Deux Prisons	1700000
00076693	PBF/CAF/A-8 Projet d'appui à l	554653
00066661	PBF/CAF/B-2 Prévention de recr	2000000
00070635	PBF/CAF/B-3 Projet d'Appui DDR	3955710
00076416	PBF/CAF/B-4 Casernes militaire	5000000
00073765	PBF/CAF/E-1 PBF Secretariat	800000
00116456	PBF/CAF/H-1 Comm et sensibilis	1773953
00066662	PBF/CAF/K-1 Activités agro-pas	300000
00076420	PBF/CAF/K-10 Activités Agro-Pa	1800000
00076436	PBF/CAF/K-11 Redynamisation fe	504261
00076276	PBF/CAF/K-12 Reintegration soc	1500000
00076790	PBF/CAF/K-13 Culture de la Pai	1500000
00066663	PBF/CAF/K-2 Relance socio-écon	300000
00066664	PBF/CAF/K-3 Format° profession	450000
00066665	PBF/CAF/K-4 Radio communautair	641806
00066666	PBF/CAF/K-5 Redynamisa°Centres	355000
00066667	PBF/CAF/K-6 Expression et Reco	371000
00066668	PBF/CAF/K-7 Format°socioprofes	500000
00076036	PBF/CAF/K-8 Acces des communa	800000
00076269	PBF/CAF/K-9 Jeunesse Pionnière	650000
00066697	PBF/EMER/2 Inclusive Political	1001975
00093169	PBF/IRF-103: Appui au processu	3595477.97
00097200	PBF/IRF-128 Community Violence	4750000

	00097202	PBF/IRF-129 Appui au Redéploiement	3000000
	00097289	PBF/IRF-130 Project d'Appui au	1027200
	00106972	PBF/IRF-183: Promotion de la p	2931670.01
	00106973	PBF/IRF-184: Projet d'appui a	2000000
	00106974	PBF/IRF-185: Community Violenc	3000000
	00106975	PBF/IRF-186: Appui au renouvel	3831010.51
	00106981	PBF/IRF-187: Appui a la mediat	2417451
	00108356	PBF/IRF-223: Appui a la coordi	837099.52
	00113224	PBF/IRF-251: Femmes, arbres de	1500000
	00113333	PBF/IRF-269: Projet de restaur	1500000
	00113450	PBF/IRF-276: Alternatives to V	1248911
	00081833	PBF/IRF-48 Réinsertion/Réintég	2397345
	00088587	PBF/IRF-78:Strengthening of th	906933
	00088836	PBF/IRF-79:Restoration d'urgen	2496718
	00090519	PBF/IRF-88 Appui au paiement	5762600
	00090891	PBF/IRF-90:Appui au retour des	2502516
Chad			16767521.87
		Projects	
	00108016	PBF/IRF-191: Soutenir les mec	1499605
	00076851	PBF/IRF-24 Support to Detachem	2728500
	00113169	PBF/IRF-263: Renforcement de l	1500000
	00113269	PBF/IRF-268: Projet de restaur	1500000
	00113491	PBF/IRF-284: Appui 3 la pa liic	3491000
	00113582	PBF/IRF-286: Prevenir Jes conf	1500000
	00083835	PBF/IRF-59 Conflict Prevention	2059511
	00113268	PBF/TCDA-1: Projet de consoli	2488905.87
Colombia			26757367
		Projects	
	00108369	PBF/COL/A-1: Generacion de ins	1633713
	00108370	PBF/COL/A-2: Apoyo a la salida	1000000
	00108373	PBF/COL/A-3: Apoyo al peoceso	2825954
	00114098	PBF/COL/A-4: De la financiacio	3000000
	00108372	PBF/COL/D-1: Reincorporacion d	2415891
	00108371	PBF/COL/E-1: Programma de cons	4124442
	00114100	PBF/COL/H-1: Estrategia de rei	3000000
	00101562	PBF/IRF-142: Apoyo al Programa	3000000
	00113215	PBF/IRF-266: Territorial model	1500000
	00113454	PBF/IRF-280: Young women terri	403234
	00113833	PBF/IRF-293: Fortalecimiento d	1854133
	00089169	PBF/IRF-81:Communication for P	2000000
Comoros			12462226.5
		Projects	
	00073677	PBF DCB Comoros	130000
	00073653	PBF/COM/A-1 Role de la femme	500000
	00074501	PBF/COM/A-2 Cohésion Social	300000
	00074510	PBF/COM/A-3 Appui renforcement	500000
	00087269	PBF/COM/A-4:Rehabilitation du	400000
	00073336	PBF/COM/B-1 Réforme secteur sé	1900000
	00073338	PBF/COM/B-2 Renforcement capac	900000
	00074502	PBF/COM/B-3 Plan National DDR	500000
	00087301	PBF/COM/B-4: Projet de Reforme	1200000
	00074154	PBF/COM/D-1 Emploi des jeunes	1000000

	00074504	PBF/COM/D-2 Education jeunes	350000
	00074556	PBF/COM/D-3 DDR Femmes	700000
	00074550	PBF/COM/D-4 Réinsertion jeunes	300000
	00074688	PBF/COM/D-5 Appui socio-économ	1100000
	00087247	PBF/COM/D-6: Appui a la perenn	650000
	00071625	PBF/COM/E-1 Développement ca	950000
	00087300	PBF/COM/E-2: Projet de renforç	250000
	00097459	PBF/IRF-134: Renforcement de l	432226.5
	00077533	PBF/IRF-27 Revision of Elector	400000
Congo			2880047.65
	Projects		
	00110558	PBF/IRF-243: Consolidation de	2880047.65
Congo, The Democratic Republic			49495753.98
	Projects		
	00079268	PBF/COD/A-1 Bio-économie intég	770000
	00106218	PBF/COD/A-2: PAMOJA KWA AMAN	4565160
	00106220	PBF/COD/A-3: Gouvernance fonci	4157182
	00111025	PBF/COD/A-4: Ensemble pour Ben	1500000
	00074026	PBF/COD/B-1Réintégration&Relèv	4405342
	00074616	PBF/COD/B-2 Appui blessés de g	228962
	00075966	PBF/COD/B-3 Dialogue Intercomm	2650000
	00077464	PBF/COD/B-4 DDR au Nord, Sud K	636650
	00092171	PBF/COD/B-5: Appui logistique	517452
	00103078	PBF/COD/B-6: Nija za Makubalia	2000000
	00113129	PBF/COD/C-1: Paix, Justice, Ré	3500000
	00074615	PBF/COD/E-1 Coordination STARE	1130456
	00074614	PBF/COD/E-2 Centres Négoce Est	500000
	00075962	PBF/COD/E-3 Rést. Autorité de	1500000
	00075964	PBF/COD/E-4 Planification et A	1300879
	00075882	PBF/COD/E-5 Soutien à la Polic	2190000
	00078234	PBF/COD/E-6 Appui justice mili	961145
	00078973	PBF/COD/E-7 Appui aux instit	2431073.28
	00081724	PBF/COD/E-8 Renforcement capat	1405249
	00098453	PBF/COD/H-1: Appui au Secretar	999893.6
	00113168	PBF/IRF-262: Renforcer la part	1396343.1
	00113421	PBF/IRF-275: strengthening you	1500000
	00113458	PBF/IRF-281: "Vijana wenye ngu	1250000
	00092283	PBF/IRF-96: AMANI NI NJIA YA M	4375981
	00092287	PBF/IRF-97: Projet integre de	3623986
Cote D'Ivoire			52120504.81
	Projects		
	00083061	PBF/CIV/A-1 Projet d'appui act	1506876
	00083062	PBF/CIV/A-2 Etude dynamiques	100000
	00095619	PBF/CIV/A-3 Appui a la prevent	3850000
	00112179	PBF/CIV/A-4 Appui au processus	1200000
	00066669	PBF/CIV/B-1 Micro-projets pr r	5000000
	00083060	PBF/CIV/B-2 Appui à ordre publ	3000000
	00095602	PBF/CIV/B-3 Appui au renforçem	5000000
	00083058	PBF/CIV/C-1 Enregistrement nai	3000000
	00112718	PBF/CIV/C-2 Promouvoir l'Etat	2600000.43
	00083059	PBF/CIV/E-1 Renforcement Secrè	550000
	00095622	PBF/CIV/E-2 Appui a l'enregist	2000000

	00066670	PBF/CIV/H-1 Soutien au Dialogu	1000000
	00095624	PBF/CIV/H-2 Appui à la planifi	2250036.38
	00066696	PBF/EMER/1 Soutien au Dialogue	2527750
	00104796	PBF/IRF-156: Projet d'appui a	1000000
	00104897	PBF/IRF-162: Cross-border betw	1500000
	00105570	PBF/IRF-168: Les femmes et les	1000000
	00108189	PBF/IRF-196: Renforcement de l	3750000
	00108200	PBF/IRF-199: Appui a la perenn	1000000
	00108201	PBF/IRF-200: Appui a la consol	2250000
	00113058	PBF/IRF-259: Participation de	1500000
	00113420	PBF/IRF-274: Mobilisation des	1100000
	00113453	PBF/IRF-283: Supporting Youth	385842
	00080052	PBF/IRF-44 rétablissement sécu	3000000
	00083867	PBF/IRF-60 Strategy for SSR	550000
	00091433	PBF/IRF-91: Projet d'appui aux	1500000
Ecuador			3000000
	Projects		
	00113834	PBF/IRF-294: Fortalecimiento d	3000000
El Salvador			6941837.32
	Projects		
	00106608	PBF/IRF-179: Programa Conjunto	2272181.31
	00108345	PBF/IRF-220: Proyecto trinacio	727818.71
	00113617	PBF/SLV/A-1: Programa conjunto	3941837.3
Ethiopia			2840341.48
	Projects		
	00113418	PBF/IRF-271: Inclusive Govern	2840341.48
Gambia			10100000
	Projects		
	00113472	PBF/GMB/A-1: Strengthening sus	1300000
	00113367	PBF/GMB/B-1: Addressing Confl	1400000
	00113368	PBF/GMB/D-1: Women and Youth p	1300000
	00105727	PBF/IRF-172: Support the capac	4200000
	00105728	PBF/IRF-173: Strategic advice	1400000
	00108786	PBF/IRF-237: Support to establ	500000
Guatemala			28295850.34
	Projects		
	00080403	PBF/GTM/B-1 Criminal Investiga	2379231
	00084039	PBF/GTM/B-2: Support victims	980000
	00085330	PBF/GTM/B-3 Institutional Stre	5660768.37
	00083915	PBF/GTM/H-1: Consolidation of	980000
	00102015	PBF/IRF-144: Empoderamiento In	1331723.23
	00103073	PBF/IRF-145: 1325 - Empowering	1000000
	00104797	PBF/IRF-157: Peace, Opportunit	1000000
	00105571	PBF/IRF-169: Transformando rel	3190912.78
	00105724	PBF/IRF-171: Consolidacion y d	3325001.34
	00106318	PBF/IRF-177: Ampliando el acce	1413937
	00106414	PBF/IRF-178: Secretarido PBF e	1148631.3
	00107551	PBF/IRF-189: Promoviendo la in	1893000
	00108092	PBF/IRF-194: Realizing the th	2000000.37
	00108346	PBF/IRF-221: Proyecto trinacio	992644.95
	00089115	PBF/IRF-80: 1385 Asserting the	1000000
Guinea			74239586.74

Projects

00073679	PBF DCB Guinea	21400
00066698	PBF/EMER/3 Support to National	963284
00074673	PBF/GIN/A-1 Appui au mouvement	650000
00092437	PBF/GIN/A-10: Projet d'Appui a	999968.5
00096143	PBF/GIN/A-11: Appui Conseil St	1130509
00074798	PBF/GIN/A-2 Appui à la jeunesse	1650000
00080579	PBF/GIN/A-3 Projet d'appui a l	3423465
00085993	PBF/GIN/A-4 Renforcement de la	900000
00087081	PBF/GIN/A-5: Appui Complémenta	836632
00087599	PBF/GIN/A-6: Soutien d'urgence	2275305
00087600	PBF/GIN/A-7: Projet d'appui au	1052110.67
00087604	PBF/GIN/A-8: Appui aux Consulta	2492108.03
00092396	PBF/GIN/A-9: Programme priorit	3383875
00074100	PBF/GIN/B-1 Projet appui justi	1708801
00074674	PBF/GIN/B-2 Education Civique	349922
00080574	PBF/GIN/B-3 Projet de renforce	1353015
00080575	PBF/GIN/B-4 Projet d'appui au	3035483.29
00080577	PBF/GIN/B-5 Projet d'appui de	4219224
00080580	PBF/GIN/B-6 Victimes Tortures	249140
00088735	PBF/GIN/B-7: Projet d'appui	1448780
00092397	PBF/GIN/B-8: Projet d'appui	899870
00080576	PBF/GIN/D-1 Insertion économiq	2100000
00085994	PBF/GIN/D-2 Projet d'appui à l	433350
00087116	PBF/GIN/D-3: Phase 2 - Reinteg	893562
00088736	PBF/GIN/D-4: Programme nationa	2549725
00090249	PBF/GIN/D-5: Programme d'appui	2000000
00092395	PBF/GIN/D-6: Programme nationa	1000000
00072413	PBF/GIN/E-1 Strengthening capa	441210
00081878	PBF/GIN/E-2 Renforcement des c	1679700.23
00096110	PBF/GIN/E-3: Renforcement des	945076
00072590	PBF/GIN/H-1 Support Inclusive	1200067
00093212	PBF/IRF-104: Appui a l'institu	999999
00096640	PBF/IRF-123 Projet d'Appui aux	900000
00096641	PBF/IRF-124 Projet de Renforce	598413.35
00096881	PBF/IRF-127: Renforcement de l	899870
00097435	PBF/IRF-133 CONARGUI II Appui	876442.18
00103671	PBF/IRF-149: Projet d'autonomi	1000000
00105539	PBF/IRF-166: Appui Conseil Str	1500000
00105553	PBF/IRF-167: Projet de Transit	2032552.74
00075358	PBF/IRF-19 Support Mediation	634935
00075556	PBF/IRF-20 Security Forces (Gu	1808300
00108207	PBF/IRF-201: Appui au renforce	1700000.13
00108357	PBF/IRF-224: Prevention de la	1531063
00108381	PBF/IRF-232: Appui au dialogue	826789
00108388	PBF/IRF-233: Projet d'appui au	850000
00077020	PBF/IRF-26 Réintégration enfan	2995045
00113205	PBF/IRF-264: Projet d'appui à	1442360
00077854	PBF/IRF-28 Postélectoral en Gu	449265
00113599	PBF/IRF-289: Appui a l'amélior	1200000
00113698	PBF/IRF-290: Appui a la gestio	1500568
00081961	PBF/IRF-49 Establishment	1617033.62

	00082823	PBF/IRF-52 Programme conjoint	1299777
	00087158	PBF/IRF-69: Appui a la facilit	1291591
Guinea-Bissau			41683087.02
	Projects		
	00073674	PBF DCB Guinea Bissau	261665
	00066671	PBF/GNB/A-1 Support Guinea-Bis	1381889
	00080185	PBF/GNB/A-2 Support for Reconc	1000000
	00100299	PBF/GNB/A-3 Strenghtening Publ	687850
	00066672	PBF/GNB/B-1 Rehabilitation of	900000
	00066673	PBF/GNB/B-2 Rehabilitation of	1905000
	00075670	PBF/GNB/B-3 Feasibility Study	49755
	00077439	PBF/GNB/B-4 Support for Confer	101047
	00080454	PBF/GNB/B-5 Military SSR	5000000
	00080477	PBF/GNB/B-6 Civilian	5000000
	00100289	PBF/GNB/B-7 Support to dialogu	496000
	00066674	PBF/GNB/D-1 Youth Professional	1500000
	00080725	PBF/GNB/D-2 Appui à la créatio	5000000
	00100142	PBF/GNB/D-3 Promote Access to	1000000
	00072056	PBF/GNB/E-1 Guinea Bissau - Na	962309
	00103258	PBF/GNB/H-1: Support to PBF Se	999701
	00104809	PBF/IRF-159: Vers un nouvel eq	961898
	00108244	PBF/IRF-208: Support to politi	807327.51
	00108245	PBF/IRF-209: Boosting the medi	801877
	00108256	PBF/IRF-210: Mobilizing rural	1564821
	00108258	PBF/IRF-211: Supporting Women'	1775782
	00108261	PBF/IRF-212: Supporting politi	1406900
	00108262	PBF/IRF-213: Support, Coordina	944356
	00113214	PBF/IRF-265: Placing Women at	1000000
	00082143	PBF/IRF-50 Quick Impact on Wom	1000000
	00087798	PBF/IRF-70:National Commission	470265
	00088453	PBF/IRF-76:Labor-intensive emp	1885120
	00089351	PBF/IRF-82: Support to the Ele	796080
	00089352	PBF/IRF-83: Short-term Emergen	891341
	00089713	PBF/IRF-85:Strengthening elect	240502.88
	00089877	PBF/IRF-86: Strenghtening the	177600.63
	00089930	PBF/IRF-87: Strengthening Wome	214000
	00091570	PBF/IRF-93: Strengthening secu	500000
Haiti			6800000
	Projects		
	00066701	PBF/EMER/6 Renforcet sécuritép	800000
	00074422	PBF/IRF-17 Recovery Employment	3000000
	00108363	PBF/IRF-227: Appui a la resolu	3000000
Honduras			2999999.53
	Projects		
	00108347	PBF/IRF-222: Proyecto trinacio	1275310.53
	00112732	PBF/IRF-246: Support for the	1724689
Kenya			1500000
	Projects		
	00066702	PBF/EMER/7 Emergency Vol (KEN)	1000000
	00104072	PBF/IRF-151: Kenya - refugees	500000
Kosovo (As per UNSCR 1244)			2772780
	Projects		

	00113581	PBF/IRF-285: Empowering Youth	2772780
Kyrgyzstan			44935916.02
	Projects		
	00076527	PBF DCB Kyrgyzstan	54800
	00093224	PBF/IRF-109: Women as Peaceful	985000
	00094616	PBF/IRF-115 Building the evide	630001
	00097384	PBF/IRF-131 Cross-border Coope	2400000
	00103672	PBF/IRF-150: Women and Girls a	1000000
	00104795	PBF/IRF-155: Youth as Agents o	1945538
	00108093	PBF/IRF-195: Addressing Social	1993410
	00076632	PBF/IRF-22 Peacebuilding (KGZ)	2999948.3
	00109241	PBF/IRF-239: Cameras in hand:	599005.72
	00113043	PBF/IRF-258: Kyrgyzstan's yout	1500000
	00113459	PBF/IRF-282: Strengthening cap	536013
	00079516	PBF/IRF-36 Infrastructure(KGZ)	3000000
	00079518	PBF/IRF-37 Peace (KGZ)	400000
	00079519	PBF/IRF-38 Justice (KGZ)	1799997
	00079520	PBF/IRF-39 Youth (KGZ)	910003
	00079521	PBF/IRF-40 Women (KGZ)	559892
	00079523	PBF/IRF-41 MediaCapacity (KGZ)	330108
	00089342	PBF/KGZ-B-3:Peace and Trust: E	1460700
	00088475	PBF/KGZ/A-1: Strengthening cap	1728877
	00088479	PBF/KGZ/A-2: Building a Consti	1602130
	00088540	PBF/KGZ/A-3:Outcome 2 - Buildi	1073287
	00089350	PBF/KGZ/A-4: Multisectorial Co	822140
	00089448	PBF/KGZ/A-5: Outcome 2 - Youth	605825
	00108334	PBF/KGZ/A-6: Inclusive governa	3089265
	00108337	PBF/KGZ/A-7: Communities resil	2601082
	00088477	PBF/KGZ/B-1:Outcome 1 - Buildi	350959
	00089325	PBF/KGZ/B-2:Improving the rule	1027000
	00089348	PBF/KGZ/B-4: Peace and Reconci	1065753
	00095139	PBF/KGZ/B-5: Media for Peace	309268
	00108336	PBF/KGZ/B-6: Support to the pr	1758000
	00088478	PBF/KGZ/D-1: Unity in Diversit	3376535
	00089449	PBF/KGZ/D-2: Outcome 3 - Youth	919526
	00086831	PBF/KGZ/E-1: PBF Secretariat	950200
	00108374	PBF/KGZ/H-1: PBF Secretariat S	551653
Lebanon			6008100
	Projects		
	00108310	PBF/IRF-214: Employment and Pe	2999628
	00080345	PBF/IRF-45 Youth (Lebanon)	2002719
	00084141	PBF/IRF-61: Addressing urban	1005753
Lesotho			2000000
	Projects		
	00111047	PBF/IRF-244: National Dialogue	2000000
Liberia			65953942.31
	Projects		
	00073676	PBF DCB Liberia	135676
	00072107	PBF/EMER-12 Liberia Rule of La	930826
	00066699	PBF/EMER/4 Support Recon. in N	788644
	00104810	PBF/IRF-160: Strengthening Wom	449888
	00104898	PBF/IRF-163: Cross-Border Cote	1500000

00105669	PBF/IRF-170: Enhancing Youth P	2477861.06
00108312	PBF/IRF-216: Inclusive Securit	2000000.01
00108366	PBF/IRF-228: Liberia - Support	2000000
00108367	PBF/IRF-229: Liberia - Strength	2680000
00108368	PBF/IRF-230: Strenghtening Con	2761070
00109098	PBF/IRF-238: Reel Peace: Using	606381.58
00066675	PBF/LBR/A-1 Comm Empowerment:	932400
00088031	PBF/LBR/A-10: Community-based	1000000
00088032	PBF/LBR/A-11: Community-based	1000000
00088041	PBF/LBR/A-12: Support to Const	2000000
00088042	PBF/LBR/A-13: Women's Economic	2000000
00088956	PBF/LBR/A-14: Enhancing Access	500000
00099192	PBF/LBR/A-15: Support to the L	399976.7
00113699	PBF/LBR/A-16: Support to LMPTF	500000
00066676	PBF/LBR/A-2 Peace,HR & Citizen	900000
00070667	PBF/LBR/A-3 Volunteers for Pea	450000
00070665	PBF/LBR/A-4 Platform for Dialo	1000000
00070700	PBF/LBR/A-5 TRC Final Reconcil	350000
00070702	PBF/LBR/A-6 Strengthening Libe	600000
00070703	PBF/LBR/A-7 YES PEACE	1000000
00081529	PBF/LBR/A-8 Liberia PBF Office	1577506
00088029	PBF/LBR/A-9: Support to the es	2000000
00076699	PBF/LBR/B-1 Justice & Security	7766494.05
00088191	PBF/LBR/B-2:Enhancing Access t	3062405
00113658	PBF/LBR/B-3: Advancing Reconci	1600000.23
00066677	PBF/LBR/D-1 Rule of Law Asst.	48150
00072813	PBF/LBR/D-10 Small Grants	462606
00080551	PBF/LBR/D-11 Youth Service	1000000
00088059	PBF/LBR/D-12 Strengthening loc	1500000
00088063	PBF/LBR/D-13 National Youth Se	1500000
00113990	PBF/LBR/D-14: Sustaining Peace	1500000
00114725	PBF/LBR/D-15: Socio-Economic E	1400000.96
00066678	PBF/LBR/D-2 Rule of Law Asst.	48150
00066679	PBF/LBR/D-3 Tumutu Agricultura	1123500
00073628	PBF/LBR/D-4 Psychosocial and C	889902
00070899	PBF/LBR/D-5 High Risk Youth	250000
00072005	PBF/LBR/D-7 Monrovia Prison	50000
00072006	PBF/LBR/D-8 Inter-Ethnic Recon	50000
00072007	PBF/LBR/D-9 Inter-County Recon	50000
00066680	PBF/LBR/E-1 Strength Rule of L	1167610
00066681	PBF/LBR/E-2 Govt of Liberia Pe	902759
00073629	PBF/LBR/E-3 Improving Prosecut	1082000
00073631	PBF/LBR/E-4 Strenghtening Publ	750066
00073632	PBF/LBR/E-5 Land Commission	750000
00073633	PBF/LBR/E-6 Prosecution of SGB	792857
00070887	PBF/LBR/E-7 Enhancing Rel betw	750000
00070666	PBF/LBR/E-8 Anti-Corruption	500000
00072488	PBF/LBR/E-9 M&E of Liberia PBF	100000
00080550	PBF/LBR/F-1 Land Dispute	2000000
00088471	PBF/LBR/H-1: Support to the Li	1695542.72
00096937	PBF/LBR/H-2: Peacebuilding Fu	621670
		5400410

Libya

	Projects	
	00103669 PBF/IRF-147: Towards national	2973102
	00081770 PBF/IRF-47 Libya	1923860
	00086617 PBF/IRF-66: Libya Civilian Cap	503448
Madagascar		14599975
	Projects	
	00094088 PBF/IRF-112: PBSO Surge to Mad	507180
	00113010 PBF/IRF-254: RADIO SIFAKA - Tr	1496884
	00101787 PBF/MDG/A-1: Institutions dém	2600000
	00101786 PBF/MDG/B-1: Appui à la RSS à	3000000
	00107894 PBF/MDG/E-1: Renforcement de	2000000
	00107988 PBF/MDG/E-2: Appui aux mecanis	3000000
	00101727 PBF/MDG/H-1:Appui au Secretari	1995911
Mali		35964623
	Projects	
	00093159 PBF/IRF-101: Projet de l'educa	2499519
	00093161 PBF/IRF-102: Solutions pour la	2500000
	00093213 PBF/IRF-105: Programme d'ameli	1498310
	00093214 PBF/IRF-106:Appui au renforcem	2611119
	00103090 PBF/IRF-146 De victimes a actr	1000000
	00104808 PBF/IRF-158: Femmes, Defense e	1319337
	00104895 PBF/IRF-161: Jeunesse Alafia:	800000
	00105537 PBF/IRF-165: Appui aux Autorit	1000022
	00106949 PBF/IRF-182: Promotion de la s	1000000
	00108342 PBF/IRF-217: Peers for Peace b	2747500
	00108343 PBF/IRF-218: Projet de renforc	3090646
	00108344 PBF/IRF-219: Les jeunes acteur	2626790
	00108375 PBF/IRF-231: Cellule d'appui a	418511
	00108389 PBF/IRF-234: Engaging Youth to	1700000
	00113044 PBF/IRF-260: DEUXIEME DECENNI	1500000
	00113700 PBF/IRF-291: Jeunes et paix: "	1650000
	00114134 PBF/IRF-299: Appui aux initiat	1746253
	00089451 PBF/IRF-84: Confidence-buildin	2997414
	00092370 PBF/IRF-98: Soutien a la cellu	325815
	00112018 PBF/MAL/D-1: Emplois et jeunes	2933387
Mauritania		896898
	Projects	
	00112871 PBF/IRF-249: Renforcement des	896898
Montenegro		946335.27
	Projects	
	00113874 PBF/IRF-296: Fostering Dialogu	946335.27
Myanmar		14163923.64
	Projects	
	00094323 PBF-IRF-114: Establishment of	2538122
	00096776 PBF/IRF-125 Prevent the recrui	1526890
	00103670 PBF/IRF-148: Support to JMC Su	2363641
	00108362 PBF/IRF-226: Empowering young	2000000
	00109888 PBF/IRF-242: Overcoming barrie	2083078
	00083475 PBF/IRF-53 Responsible BUS	16587.64
	00084739 PBF/IRF-62 Myanmar Impl1612 Ac	1536179
	00085918 PBF/IRF-64 Start-up of the Mya	477426
	00088269 PBF/IRF-75: Contribution Myanm	1622000

Nepal		22724436
	Projects	
	00093221 PBF/IRF-107: Empowering Women	1000000
	00093222 PBF/IRF-108: Localizing Women	576602
	00083648 PBF/IRF-54 Gender Responsive R	898800
	00085965 PBF/NPL/A-1 Catalytic Support	1224662
	00085964 PBF/NPL/A-2 Rule of Law and	2477455
	00085992 PBF/NPL/A-3 Increasing the	566526
	00071691 PBF/NPL/B-1 Children Formerly	1100000
	00072057 PBF/NPL/B-2 Female Discharge	1000000
	00072059 PBF/NPL/B-3 Transition Justice	1999830
	00075378 PBF/NPL/B-4 Sexual Violence	2100000
	00072058 PBF/NPL/D-1 Jobs for Peace	2656000
	00085967 PBF/NPL/D-2 Reintegration and	1500000
	00085963 PBF/NPL/D-3 Building Peace in	2558368
	00074645 PBF/NPL/E-1 Reparations	1017583
	00074749 PBF/NPL/E-2 Child Rights Viola	1379004
	00094222 PBF/NPL/H-1: Safeguarding Peac	669606
Niger		33508483.72
	Projects	
	00098287 PBF-NER-D-1: Autonomisation de	2500000
	00094301 PBF/IRF-113: Appui au Secretar	1469000
	00106948 PBF/IRF-181: Promotion de la s	1000000
	00108212 PBF/IRF-206: Reintegration soc	3000000
	00113223 PBF/IRF-267: Promotion de la c	1500001
	00113457 PBF/IRF-277: Youth Action for	1500000
	00113583 PBF/IRF-287: Prevenir Jes conf	1500000
	00114127 PBF/IRF-298: Les jeunes filles	1500000
	00114135 PBF/IRF-300: Appui aux initiat	1267911
	00086267 PBF/IRF-65 Jeunes, Paix et Dev	2999650
	00098054 PBF/NER/A-1:Promotion du dialo	500000
	00098291 PBF/NER/A-2: Appui a la gestio	1500000
	00113488 PBF/NER/A-3: Creation d'nn env	2500000
	00098292 PBF/NER/B-1: Renforcement de l	3000000
	00113489 PBF/NER/B-2: Appui au renforce	2700000
	00113490 PBF/NER/B-3: L 'implication de	2500000
	00098290 PBF/NER/D-2: Mise en oeuvre de	1500000
	00116455 PBF/NER/H-01:Appui au pilotage	1071921.72
Nigeria		3000000
	Projects	
	00113473 PBF/IRF-273: Integrated Approa	3000000
Papua New Guinea		16590836.13
	Projects	
	00093973 PBF/IRF-111: Planim Save, Kama	999499
	00095473 PBF/IRF-117 Bougainville Women	438700
	00108210 PBF/IRF-204: Empower women and	2000000
	00113028 PBF/IRF-255: Strengthening the	1500000
	00088005 PBF/IRF-74: PBSO Surge Support	352637.13
	00096350 PBF/PNG/A-1 Support knowledge-	2500000
	00111260 PBF/PNG/A-2: Sustaining Peace	4000000
	00096333 PBF/PNG/B-1 Stregthening partn	2500000
	00096369 PBF/PNG/D-1 Promoting security	1500000

	00096370	PBF/PNG/E-1 Support to PBF coo	800000
Philippines			5996570
	Projects		
	00093225	PBF/IRF-110: Increasing Public	2996570
	00107354	PBF/IRF-188: Building Capaciti	3000000
Serbia			1304363.81
	Projects		
	00114184	PBF/IRF-297: Fostering Dialogu	1304363.81
Sierra Leone			59086859
	Projects		
	00073673	PBF DCB Sierra Leone	229957
	00071303	PBF/EMER-10 Political Reconcil	946950
	00071304	PBF/EMER-11 Sierra Leone Polic	999870
	00105794	PBF/IRF-175: Conflict Preventi	2999798
	00108243	PBF/IRF-207: Improving Women's	2187368
	00075810	PBF/IRF-21 Support SLE Police	961350
	00076881	PBF/IRF-25 Amputees SLE	100000
	00113030	PBF/IRF-253: Creating Peaceful	1500000
	00083757	PBF/IRF-57 Women participation	331648
	00087954	PBF/IRF-72: UNIPSIL Support to	298061
	00088454	PBF/IRF-77: UNIPSIL & UNDP Pro	2780000
	00092065	PBF/IRF-95: Support efforts to	525000
	00091756	PBF/IRF/94:Developing national	1515100
	00066682	PBF/SLE/A-1 National Elections	1598727.36
	00066683	PBF/SLE/A-2 Capacity Building	349034
	00066684	PBF/SLE/A-3 Gender Capacity,	802640
	00066685	PBF/SLE/A-4 Impl of the Repara	3000000
	00071609	PBF/SLE/A-5 Parliament	700000
	00071610	PBF/SLE/A-6 Attitudinal and Be	140000
	00071608	PBF/SLE/A-7 INPBS	1650000
	00077292	PBF/SLE/A-8 Non-State Actors	5011757
	00066686	PBF/SLE/B-1 Improved Public Or	1042564.91
	00077001	PBF/SLE/B-10 Peace Museum	195000
	00066687	PBF/SLE/B-2 Capacity Developme	1522055.7
	00066688	PBF/SLE/B-3 Emergency Support	1822823.94
	00066689	PBF/SLE/B-4 Capacity Developme	3959772.54
	00066690	PBF/SLE/B-6 Rehab. of WatSan F	1955706
	00066691	PBF/SLE/B-7 Support to the Off	1582436.48
	00066692	PBF/SLE/B-8 Impr. Reform./Just	1610933.15
	00071611	PBF/SLE/B-9 Regional Cooperati	130000
	00077293	PBF/SLE/C-1 PBF Coordination O	100000
	00077294	PBF/SLE/C-2 Reparations Progra	1550000
	00077295	PBF/SLE/C-3 Human Rights Cultu	800000
	00077296	PBF/SLE/C-4 Gender-based viole	450000
	00066693	PBF/SLE/D-1 Youth Enterprise D	4080906.92
	00066694	PBF/SLE/E-1 Gov't's Capacity En	348125
	00071612	PBF/SLE/E-2 Strengthening CSOs	140000
	00066695	PBF/SLE/I-1 Emergency Support	9000000
	00071605	PBF/SLE/J-1 Independent Invest	29463
	00071613	PBF/SLE/J-2 Women's Participat	45261
	00071607	PBF/SLE/J-3 Refurbishment of S	69550
	00073335	PBF/SLE/J-4 Independent Review	25000

Solomon Islands		7297749.01
	Projects	
	00101193 PBF/IRF-140: Supporting peacef	2500000
	00108055 PBF/IRF-193: Consolidating Pe	2999266.01
	00113271 PBF/SLB/H-1: Empowering Youth	1798483
Somalia		46917329.23
	Projects	
	00072789 PBF/EMER/13 Somalia Police & S	999915
	00095276 PBF/IRF-116 Support to the Fed	4123420
	00096145 PBF/IRF-119 Strengthening wome	1000000
	00096372 PBF/IRF-120 Risk Management Su	586974
	00096491 PBF/IRF-121 Somalia Joint Rule	2143821
	00096601 PBF/IRF-122 Support for Somali	2232061
	00096842 PBF/IRF-126 Rehabilitation Pil	331789
	00100610 PBF/IRF-141 Pilot Project to S	2062083
	00102014 PBF/IRF-143: Coordination Supp	952889
	00104073 PBF/IRF-152: Somalia refugees	3250000
	00108211 PBF/IRF-205: Youth Political E	1999899
	00113082 PBF/IRF-261: Leveraging the St	1500000
	00078251 PBF/IRF-31 Somalia: Shelter	1111715
	00078252 PBF/IRF-32 Somalia: Peaceful C	302411
	00078253 PBF/IRF-33 Somalia: Capacity B	115000
	00078254 PBF/IRF-34 Somalia: Urban Soli	470959
	00083667 PBF/IRF-55 Ending transition	995100
	00113011 PBF/SOM/A-1: Secretariat suppo	739390
	00113621 PBF/SOM/A-2: Supporting Reconc	2598173
	00113980 PBF/SOM/A-3: Midnimo II (Unity	2700000
	00114230 PBF/SOM/A-4: Dhulka Nabaada (T	2573090.23
	00113565 PBF/SOM/B-1: Support to Stabil	3328640
	00103708 PBF/SOM/D-1: Midnimo (Unity) -	4500000
	00103709 PBF/SOM/D-2: Daldhis (Build Yo	6300000
South Sudan		23021947.32
	Projects	
	00105733 PBF/IRF-174: Strengthening dia	3000000
	00108209 PBF/IRF-203: Beyond Bentiu Pro	2000000
	00113057 PBF/IRF-257: Enhancing Women's	1500000
	00079491 PBF/IRF-42 Reintegration	4000000
	00079635 PBF/IRF-43 Strategic Grain Res	1990200
	00082725 PBF/IRF-51 Support Women Peace	531790
	00086157 PBF/SSD/D-1 South Jonglei Yout	768260
	00086513 PBF/SSD/D-2 Peacebuilding Secr	1200000
	00087878 PBF/SSD/D-3: Skills and Employ	1553886
	00088285 PBF/SSD/D-4: Assesment of wate	557459
	00086502 PBF/SSD/E-1 Conflict Preventio	5920352.32
Sri Lanka		20957948.48
	Projects	
	00095915 PBF/IRF-118 Support for Sri La	1470000
	00098786 PBF/IRF-136: Support to the Sr	1660842
	00098906 PBF/IRF-137: Support to Sri La	1150000
	00099958 PBF/IRF-138: Support for Sri L	1000000
	00073919 PBF/IRF-14 Mine Act Sri Lanka	3000000
	00104794 PBF/IRF-154: Empowering women	1125000

	00108311	PBF/IRF-215: EMPOWER: Building	2000000
	00109242	PBF/IRF-240: Youth Engagement	454148.48
	00113000	PBF/IRF-252: Hidden Challenges	1500000
	00105729	PBF/LKA/A-1: Support to streng	4411874
	00105730	PBF/LKA/A-2: Promoting Reconci	1600000
	00105731	PBF/LKA/A-3:Participation of Y	1586084
Sudan			22074513
		Projects	
	00074366	PBF/IRF-15 Sudan DDR (Abyei)	6680010
	00074367	PBF/IRF-16 Sudan DDR (Eastern)	1728050
	00076780	PBF/IRF-23 OCRV South Sudan	1622441
	00111503	PBF/IRF-245: Sustainable Retur	3000000
	00077920	PBF/IRF-29 Consolidating Peace	4680010
	00077922	PBF/IRF-30 Reinsertion/Reinteg	2000900
	00078561	PBF/IRF-35 Protection/Peacebui	2014817
	00083818	PBF/IRF-58 Empowering Women	348285
Tajikistan			2600000
		Projects	
	00097385	PBF/IRF-132 Cross-border Coope	2600000
Tanzania			945581.47
		Projects	
	00108195	PBF/IRF-198: Preventing confli	945581.47
Timor-Leste			993625
		Projects	
	00071164	PBF/EMER/9 IDPs in Timor-Leste	993625
Togo			2701111.42
		Projects	
	00112867	PBF/IRF-248: Renforcement des	2701111.42
Tunisia			2998889
		Projects	
	00113584	PBF/IRF-288: Pérenniser la pai	2998889
Uganda			15460918
		Projects	
	00085102	PBF/IRF-63 Peacebuilding and E	1461162
	00076968	PBF/UGA/A-1 Justice for All an	5899756
	00076965	PBF/UGA/A-2 Peacebuilding & En	2500000
	00076967	PBF/UGA/D-1 Livelihoods and Lo	5000000
	00076966	PBF/UGA/E-1 M&E of PBF Project	600000
United Nations			30661489.43
		Projects	
	00073589	PBF Direct Cost Budget	24524703.43
	00086901	PBF/IRF-67:PBF Review	294464
	00092393	PBF/IRF-99 Country support for	5842322
Yemen			29603554
		Projects	
	00106143	PBF/IRF-176: Peace Support Pro	900000
	00108208	PBF/IRF-202: Strenghtening the	2000000
	00108511	PBF/IRF-236: Responding to pro	3000000
	00113031	PBF/IRF-256: Water for peace i	1500000
	00113346	PBF/IRF-270: Furthering the Yo	1500000
	00081460	PBF/IRF-46 Elections (Yemen)	1000000
	00083753	PBF/IRF-56 National Dialogue	2000000

	00086955	PBF/IRF-68: Support to the imp	499862
	00087896	PBF/IRF-71: Addressing grievanc	1089709
	00087974	PBF/IRF-73:Women and Youth eng	1000781
	00090605	PBF/IRF-89: Technical Assistan	2013202
	00093329	PBF/YEM/A-1: Social Welfare Fu	1000000
	00091371	PBF/YEM/B-1: Enhance trust bet	1000000
	00091374	PBF/YEM/B-2: Support to the Im	1000000
	00091370	PBF/YEM/D-1: Joint Emergency C	1000000
	00091373	PBF/YEM/D-2: Peace and Transit	2000000
	00091651	PBF/YEM/D-3: Livelihood and ec	4800000
	00093326	PBF/YEM/D-4: Supporting the Ye	1200000
	00091194	PBF/YEM/H-1: Peacebuilding Fun	1100000
Zimbabwe			3143861
		Projects	
	00114706	PBF/IRF-301: Building trust an	3143861

Net Funded Amount	Expenditure
920490399.7	727128742
1588629	0
1588629	0
5352467.91	2982748.64
2000000.8	983586.92
1353305.4	0
1999161.71	1999161.72
6980837	2793495.91
764671	30219.44
945000	47359.92
1098540	0
1000126	916362.43
1700000	1189552.54
1000000	610001.58
472500	0
74591230.13	66929363.75
681764.7	698047.95
499169.91	499169.91
1410147.4	1410147.4
1225325.71	1225325.71
1800000	1758907.88
500000	500000
1209958.86	1209958.86
984400	370205.82
1776186	19015.35
2414225.52	128555.2
3063774.08	3063774.08
3009243.31	3009243.31
3782003.12	3782003.12
211798.78	211798.78
403994.23	403994.23
3000000	2996484.92
1319233.47	1319233.47
9898138.54	10076468.21
4790814.14	4790814.14
489859.16	489859.16
6727525.07	6727525.07
398928.19	398928.19
372839.82	372839.82
1153694.06	1103438.67
795790.53	795790.53
995000.72	995000.72

1000000	999737.37
2975079	2911002.1
678584	678584
1741932.2	1049445.33
1000000	989597.85
915354.08	915354.08
883694.63	883694.63
1036967.24	1035729.35
2259816.76	2259816.76
2788266.48	2788266.48
1054399.4	835195.36
3000000.02	1754498.92
1230879	715775.13
615128	596574
287314	156203.3
210000	3358.59
2548562	1134703.29
1499962	968498.44
1048600	166204.85
70855152.18	60931790.38
292656	274321.23
1192567	1192567
368090	368090
390000	376417.95
1404630	1404630
2200000	2199651.94
664673.31	664673.31
1344270.81	1344270.81
554653	554653
1993858.3	1993858.3
3946688	3952585.79
2568693.3	2568693.3
800000	802224.94
1773953	0
300000	300034.82
1749782.02	1749782.02
504233.44	504233.44
1490041.32	1490041.32
1462776.5	1462776.5
300000	299999.44
450000	449999.77
627187.52	627187.52
351812.56	351812.56
367399.67	367399.67
500000	500000
800000	805745.67
644745.38	644745.38
1001975	1001975
3595477.97	3644940.61
4750000	4750000

2960970.53	2907470.07
1027200	863728.85
2548383.8	1442799.74
2000000	1086775.39
2099999	1933638.76
2946931.16	1838654.74
2417451	1568775.52
585969.66	434059.26
1050000	93707
1050000	0
437119	260982
1732801.86	1726941.43
869333.07	869333.07
2473713	2255097.26
5762600	4500000
2502516	2502516
13465366.3	5446992.93
1499605	749153.93
2570090.08	2570090.08
1050000	0
1050000	0
2464039	149.32
1050000	0
2059511	2059511
1722121.22	68088.6
21260401	13355563.66
1633713	1633713
1000000	590866.03
2825954	2298678.99
193082	0
2415891	2415891
4124442	1454896.75
2067900	21275.48
3000000	2836176.08
1034704	59816.71
143029	23747.63
821686	20501.99
2000000	2000000
12376086.32	12234314.64
130000	129842.54
493614	493614
299238.94	299170.93
500000	500000
393792.36	393792.36
1895807.29	1895146.37
896806.63	897408.46
500000	498985.95
1166811.02	1166607.1
997445.44	997445.44

349411.54	349411.54
694216.37	694216.37
281028.23	281028.23
1100000	1053453.18
645688	645688
950000	949623.32
250000	242615.5
432226.5	432472.82
400000	313792.53
2000884.91	1076061.85
2000884.91	1076061.85
44083054.4	35310245.09
770000	770000
4565160	2726995.83
2998816	1784778.45
1500000	435272.28
4396770.09	4396770.09
227970.53	227970.53
2650000	2650000
109390.03	109390.03
517452	215712
2000000	1898036.07
2450001.15	70276.03
1121846.49	1121846.49
500000	500000
1349482.07	1349482.07
1295689.72	1295689.72
2183015.33	2183015.33
857131	857131
2384468.52	2384468.52
1403423.12	1403423.12
999893.6	994639.8
977532.68	0
525000	39522.35
437502	30903.39
4367125.25	4367125.25
3495384.82	3497796.74
46688548.81	39561071.51
1486190	1486190
100000	100000
3850000	3810879.25
1200000	696811.64
3996692.18	3996692.18
2956499	2956499
4999348.52	4997957.74
2994666.96	2994666.96
1540297	105277.76
506479.92	506479.92
2000000	1980606.88

1000000	1000000
2250036.38	1539487.1
2527750	2527750
900000	909244.84
1500000	1432593.77
1000000	964542.79
2850000	1516315.43
1000000	505392.02
1575000	751502.78
1050000	6475.41
385000	47405.56
135045	12577.82
2844335.06	2844335.06
550000	387930.14
1491208.79	1483457.46
1199999	37339.74
1199999	37339.74
5759286.82	2691717.31
2272181.31	2122251.87
727818.71	464455.69
2759286.8	105009.75
1704204.89	25025.93
1704204.89	25025.93
7970000	1953988.88
890000	0
970000	0
910000	15317.05
3300000	1076642.39
1400000	774424.06
500000	87605.38
25755713.47	18947960.59
2378971.04	2378971.04
974459.38	974459.38
5281869.81	4874396.69
980000	980000
1331723.23	1330831.28
1000000	836100.84
1000000	997110.23
2036842.09	697908.56
3325000.97	1421788.77
952381	344520.03
1148631.3	810728.08
1893000	1746864.49
1473439.34	151171.15
992644.95	416359.69
986750.36	986750.36
70344462.62	63676125.72

0	0
905728.25	905728.27
627718.09	627718.09
960093.23	960017.61
1024497.81	1069150.16
1569441.25	1569441.25
3417468.94	3417468.94
871823.16	899999.99
836632	836632
2275282.4	2275282.4
1016958.61	1016958.61
2489903.65	2112285.35
3212294.31	3212291.91
1690261.88	1690261.88
347442.77	347442.77
1204317.79	1199865.51
2946139.36	2946139.36
4219224	4219224
225998.77	225998.77
1395824.98	1395824.98
878658.42	879156.4
1919896.34	1919896.34
433350	433350
893562	893562
2428032.75	2428032.75
2000000	2000000
938347.75	938347.75
392259.43	392258.42
1649637.23	1653197.02
872136.12	872140.49
1148286.64	1148286.64
988950.23	988950.23
886404.32	886404.32
598413.35	594161.43
899339.82	899339.82
829455.25	829455.25
1000000	646945.93
1500000	1401624.05
2032552.74	1104167.54
595018.3	595018.3
1806982	1806982
1019434.57	729067.41
1531063	629140.11
826789	209605.88
850000	516101.88
2941135.38	2941135.38
980698	12416.15
449265	449265
840000	21535.16
1050399	1505.49
1617033.62	1617033.62

1114032.92	1114032.92
1196278.19	1196278.19
24785451.56	19733790.41
161680	150373.55
1381889	1381889
2109.66	2109.66
687850	553559.94
812834	812834
1904515.78	1904515.78
47615	47615
101047	101047
1282144.93	1282144.93
103959.48	103959.48
496000	487334.37
1500000	1500000
544314.95	544314.95
1000000	878615.92
862324	862324
498179.36	498208.34
748040.6	534183.6
807327.51	570193.51
801877	352906.23
1564821	622755.01
1242837	186154.41
984830	333961.23
944356	535675.35
700000	0
988032.21	874327.09
123698.28	123698.28
1869122.51	1869122.51
796080	796080
891341	891329.14
95128.83	95128.83
127496.46	127496.46
214000	214000
500000	495932.84
5840527.08	4351672.63
740527.08	740527.08
3000000	3000000.01
2100000	611145.54
2482592.53	715493.3
1275310.53	491667.82
1207282	223825.48
1493255.61	1493255.62
993255.61	993255.61
500000	500000.01
1427892.4	47179.71

1427892.4	47179.71
41216208.44	33822920.6
54800	54800
984627.4	984627.4
624339.98	624339.98
2399711.52	1668799.87
1000000	997043.01
1470269	1027050.17
1993410	966802.33
2927870.01	2927870.01
599005.72	485737.68
1050004	14500.77
187605	35449.63
2993214.61	2993214.61
360369.02	360369.02
1699712.16	1699712.16
907154.74	907154.74
554608.58	554608.58
321016.22	321016.22
1460700	1460700
1719553.7	1719553.7
1513800.87	1513800.87
1073287	1073287
819522.36	819522.36
602713.66	602713.66
2162485	814106.58
1820491	572472.49
350959	350959
1018073.27	1018073.27
1010123.42	1010123.42
309268	309268
1758000	538982.18
3312636.66	3312636.66
918122.35	918122.33
852597.19	852597.19
386157	312905.71
5984558.79	4188736.69
2999628	1203805.9
1979177.79	1979177.79
1005753	1005753
1400000	777281.03
1400000	777281.03
62455024.21	53827322.57
126843.49	126883.51
897855.39	897855.39
788644	788644
449888	449857
1500000	1439926.73

2477861.06	2152001.29
2000000.01	1059144.75
2000000	1000757.67
2680000	1813151.39
2761070	1191758.76
433129.7	217205.7
932400	932400
1000000	1000000
938849.73	935237.76
1667175.9	1674897.38
1976337.09	1976337.09
479098.32	458278.29
390177.91	390177.91
350000	0
786184.01	786184.01
437359.34	437359.34
1000000	1000000
345953.3	345953.3
540941.08	540941.08
1000000	1000000
1535341.23	1598524.73
2000000	1940761.4
7618038.21	7551689.86
2527799.05	2527876.28
1120000.15	0
23858.86	23858.86
462606	462606
1000000	1000000
1473006.01	1453862.67
1500000	1500000
1050000	0
980000.66	0
48150	48150
1098855.86	1098855.86
880201.69	880201.69
207722.62	207722.62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167610	1167610
901872.58	538789.93
1072702.04	1072702.04
725025.55	725025.58
750000	750000
714026.2	714026.2
732782.38	749667.26
488012.83	488012.83
84904.64	422540.08
2000000	1944815.01
1635706.67	1648038.67
547032.65	547032.65
5176977.01	5097275.39

2973102	2893400.39
1909852.5	1909852.49
294022.51	294022.51
14193953.26	8824147.01
462692.26	462692.26
1135350	23787.7
2600000	1937099.08
3000000	2181292.95
2000000	1143600.83
3000000	1800820.98
1995911	1274853.21
29702505.33	20343328.59
2499519	2498722.76
2500000	2500000
1478752.93	1436900.44
2611119	2551453.67
1000000	764490.65
929726.4	683805.2
800000	799851.28
1000022	390686.45
1000000	695934.51
2500000	1333391.2
2340643	1495330.94
2626790	968837.84
292958	131129.27
595000	636301.26
1050000	0
577500	0
523876	39319.37
2997414	2982546.98
325815	331202.37
2053370	103424.4
896898	71132.16
896898	71132.16
662434.69	6219.58
662434.69	6219.58
13284949.13	11022095.36
2134646.25	2134646.25
1456405	1428766.37
2363641	2115172.16
2000000	1123335.32
1865408	756146.58
16587.64	15767.43
1470938	1470938
375934.24	375934.24
1601389	1601389.01

20017897.94	19715443.83
988500.98	979441.04
545330.09	437558.19
894006.14	832237.37
1188819.67	1175129.37
2100928.1	2088501.61
479717.91	479717.91
622009.49	622009.49
224613.97	224613.97
1593507.96	1593507.96
2009637.41	2009637.41
2528716.43	2528716.43
1470741.07	1470741.07
2445791.98	2348055.27
959760.78	959760.78
1371270.2	1371270.2
594545.76	594545.76
21648001.38	14383466.37
2500000	2498588.65
1469000	1485654.85
1000000	555467.73
940000	662002.81
525000	23780.51
525000	102811.65
1050000	0
530713	0
380374	26461.22
2969117.18	2969121
73061	73061
1500000	1457378.15
875000	28207.08
3000000	3002141.54
1185391	3345.44
875000	0
1500000	1495444.74
750345.2	0
2287147.82	24557.19
2287147.82	24557.19
14656801.54	11291983.89
934796.41	934796.41
438700	438698.62
2000000	1089711.74
1030668	37803.21
352637.13	352635.2
2500000	2499758.18
2600000	1142590.93
2500000	2499957.06
1500000	1496236.89

800000	799795.65
5748904.93	4594297.93
2748904.93	2748904.93
3000000	1845393
913054.57	0
913054.57	0
57354176.95	54652575.71
229957	229363.3
918368.04	918368.04
912015.65	912015.65
2999798	2188784.24
2000000	1107854.18
950523.5	950523.5
100000	100000
1050000	273.65
319294.91	280105.62
251372.46	251372.46
2780000	2780117.81
525000	525000
1507620.83	1513944.03
1598727.36	1598727.36
346821.61	346821.61
737724.93	737724.93
2960229	2960229
625931	625931
140000	140000
1607458.93	1607458.93
4558717.83	4643344.5
1018654.75	1018654.75
195000	195000
1506867.26	1506867.26
1821622.69	1821622.69
3953434.48	3953434.48
1943053.66	1943053.66
1576853.53	1576853.53
1606751	1606751
130000	130000
88242.99	88242.99
1550000	1550000
765906	765906
449632.28	449632.28
4062854.16	4062854.16
276953.01	276953.01
140000	140000
8981816.4	8981816.4
28514.08	28514.08
45261	45261
69550	69550
23648.61	23648.61

6752855.01	4738919
2500000	2540560.07
2999266.01	2190280.94
1253589	8077.99
39825440.02	26401012.83
998537.31	998537.3
4123420	3782001.16
1000000	981246.51
586974	557422.24
2143821	1906778.03
2232061	2231758.81
331567.43	331567.43
2062083	1926121.4
952889	956422.89
2500000	2400822.89
1400293	922645.01
1050000	0
1111715	1111715
302411	302411
115000	115000
470959	470959
616773.12	616773.12
517559	90943.51
1818721	0
1890000	3455.14
1802064.16	0
998592	33822.4
4500000	2923876.21
6300000	3736733.78
19131741.05	14361898.88
3000000	1036721.15
2000000	1079702.12
1050000	0
1797701	1797701
1990200	1990200
531790	497886.79
768260	768260
462348.99	462348.99
1077514.85	1077514.85
533573.89	533573.89
5920352.32	5117990.09
18238186.64	12516130.39
1462246.25	1462246.25
1660842	1640756.69
1150000	1128871.61
1000000	924576.49
2985949.91	2980433.88
675000	480489

1400000	310005.97
454148.48	352227.04
450000	23722.8
4190000	1913380.13
1600000	645226.55
1210000	654193.98
14523836.26	12423648.71
98313	98313
1664290.26	1664146.88
1621176	1621176
2100000	0
4680010	4679965.83
2000900	2000900
2014817	2014817
344330	344330
2600000	1938015.21
2600000	1938015.21
945581.47	790421.95
945581.47	790421.95
993625	993612.52
993625	993612.52
1147501.87	2485.15
1147501.87	2485.15
899666	11804.82
899666	11804.82
15326135.17	15284607.53
1460809.18	1460809.18
5847036.42	5854589.01
2490908	2490908
4927381.57	4926940.57
600000	551360.77
30578739.94	24398916.66
24475708.94	21418510.49
260709	260709
5842322	2719697.17
20428115.31	15182203.64
799493.34	799493.34
2000000	438592.78
3000000	822096.11
1048930	0
473268	31325.05
991308	991308
1853029.6	1849540.96

487374.95	487374.95
992290.7	992290.7
899156.99	899156.99
1873862.36	1873862.36
39476.86	39476.86
704212.54	704212.54
133217.72	133217.32
1000000	1000000
629279.09	627872.75
1751888.5	1741056.27
1123755.64	1123755.64
627571.02	627571.02
944876	12379.33
944876	12379.33

연구정보 2019-17-355

SDG16(평화) 논의 및 이행현황 분석:
한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 행 2019년 7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 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535-7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정보 2019-17-355

ISBN : 978-89-6469-535-7 93320



SDG16(평화) 논의 및 이행현황 분석:
한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www.koic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